



2015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BNK 금융지주

2015년 BNK금융지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BNK Financial Group**

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되었습니다.

2016년 3월 4일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 장 성 세 환

성 세 환

1. 지배구조 일반	1
2. 이사회.....	7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7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66
5. 회장후보추천위원회	71
6.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75
7. 감사위원회	79
8. 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90
9. 리스크관리위원회	111
10. 이사회운영위원회	119
11. 그룹경영관리협의회	122
12. 리스크관리협의회	126
13.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130
14. 주주총회	151
15.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167
16.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168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당사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 업무처리기준,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공개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정기 및 수시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2015년말 현재 이사회의 63%가 사외이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2015년말 현재 금융분야 2명, 경제분야 1명, 경영분야 1명, 재무·회계분야 2명, 법률분야 2명)하여 특정 배경이나 직업군에 이사회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간의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정관, 이사회 규정 등 주요 내규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 포함)의 활동내역 등 주요 업무처리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의 재선임 검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개내용 확인 사이트 주소 : BNK금융지주 www.bnkfg.com)

당사는 이러한 지배구조 원칙에 따라 매년 지배구조정책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점검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후 환경 및 제도 변화 등을 감안하여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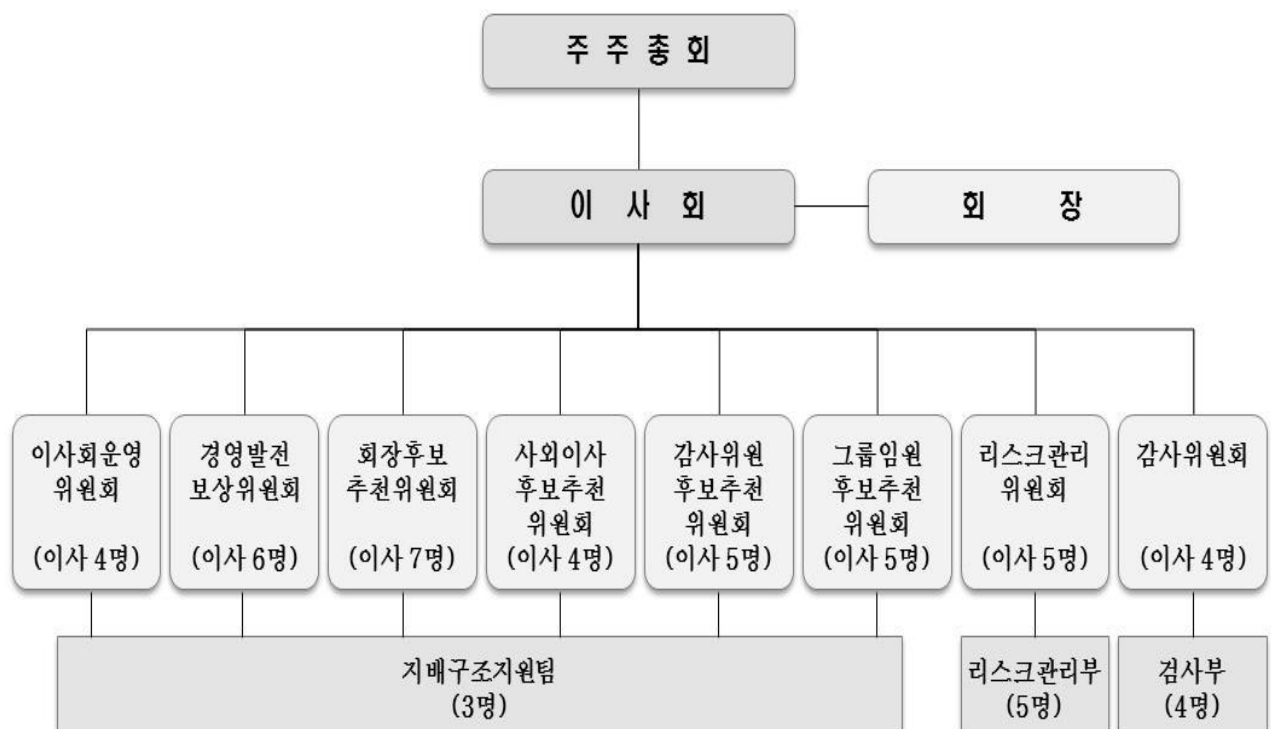
이러한 당사의 지배구조 관련 활동과 노력들은 객관적인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매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의 기업지배구조 평가등급 결과(www.cgs.or.kr)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배구조	-	A+	A+	A+	A+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2015. 12월말 현재)



(2) 지배구조의 특징

이사회는 당사의 최고 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2015년 말 기준 총 이사 수는 8명이며, 이 중 사외이사는 5명으로 총 이사 수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며, 사외이사 선임 시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이해관계인이나 영향력으로부터 배제할 것을 내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함에 따라 이사회에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사회 규정 제7조)

- ①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회의의 소집 및 주재
- ②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③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제고에 필요한 업무

이사회는 분기마다 1회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와 일정 기준 충족 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임시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위원회 및 대표이사 회장의 요구와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내 위원회는 과반수의 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운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는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

사로 구성되어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에 따라, 2015년 2월에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회장 후보군 발굴 및 관리, 후보자 자격요건 검증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는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변경하여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자회사의 CEO 뿐만 아니라 그룹의 임원후보 추천과 관련된 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고 있으며, 당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되는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군을 발굴·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외이사와는 별도로 당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상법 제382조의 제3항 제3호(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비상임이사의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대주주의 관계자로 당사에 대한 경영감시 및 상임이사 견제기능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요약)

내부기관	주요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 (이름/상임·사외· 비상임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 법령, 정관에 정한 사항, 주주총회 위임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	5/8	성세환(상임)	정관 § 42, 이사회규정

내부기관	주요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 (이름/상임·사외 ·비상임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운영 위원회	·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책 결정 ·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결의	3/4	김우석(사외)	정관 § 47, 이사회운영위원회 규정
리스크관리 위원회	· 회사 및 계열회사의 각종 리스크에 대한 정책 승인 및 이의 준수 여부를 감시 감독	4/5	김우석(사외)	정관 § 47,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경영발전보상 위원회	· 회사 발전을 위한 경영성과 제고 방안 수립 · 경영진의 성과목표 설정, 평가, 보상체계 수립	5/6	김창수(사외)	정관 § 47, 경영발전보상위원 회규정
회장후보추천 위원회	· 회장 후보 추천 및 회장의 자격요건 설정 · 회장 후보군 발굴 및 관리, 자격요건 검증	5/7	김성호(사외) *호선으로 선출	회장후보추천위원 회규정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주주총회에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	3/4	박홍대(사외)	정관 § 47,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규정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감사위원 후보 추천 ·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	5/5	- *호선으로 선출	정관 § 47, 감사위원후보추천 위원회규정
그룹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그룹 임원 후보 검증 및 심사하여 후보 추천 · 후보자 발굴 관리, 자질 등 자격요건 설정	3/5	성세환(상임)	그룹임원후보추천 위원회규정
감사위원회	· 회사 등의 감사계획 수립, 집행, 결과 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 법령, 정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4/4	문재우(사외)	정관 § 47, 감사위원회규정

다. 관련 규정

- 첨부1. 정관
- 첨부2. 지배구조 내부규범
- 첨부3. 이사회규정
- 첨부4.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 첨부5.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 첨부6. 경영발전보상위원회규정
- 첨부7.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8.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9. 감사위원회규정
- 첨부10.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11.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12.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 첨부13 사외이사운영규정
- 첨부14. 그룹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
- 첨부15.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검토보고서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환경 및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전반 및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며,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당사의 이사회는 그룹 경영목표와 전략을 수립·평가합니다.(이사회규정 § 11, 경영계획규정 § 7) 그룹 경영목표 대한 구체적인 실무업무는 회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최종 승인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이사회 규정 § 11, 경영계획규정 § 11)

이에 따라 당사는 계열회사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2015년 11월에 실무자 및 경영진이 초안을 마련하고, 당사 최고경영진과 계열회사 CEO로 구성된 그룹경영관리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후 2015년 12월에 개최된 제15차 이사회에서 아

래와 같이 2016년 그룹 경영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에 따라 그룹사장단 회의를 폐지하고, 2015년 2월 그룹경영관리협의회를 신설하였으며, 동 협의회에서는 지주 및 계열사의 경영계획 수립 등 그룹사간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그룹 경영계획>

1. 그룹 경영전략

- ① 경영방침 : 『Great Innovation 2016 : 수익 중심의 지속가능 성장체제 구축』
- ② 경영슬로건 : 희망을 주는 행복한 금융
- ③ 경영화두 : 礎潤張傘(초윤장산 / 다가올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대비책을 강구함)

2. 그룹 재무계획

- ① 그룹 총자산 : 106조원 내외
- ② 그룹 당기순이익 : 5,400억원 이상
- ③ ROE : 8.52% 이상
- ④ BIS총자본비율 : 12.21% 이상
- ⑤ 고정이하여신비율 : 1.23% 이하 / 연체대출채권비율 0.76% 이하

3. 그룹 전략과제

- ① 지속가능 미래 성장기반 확충
- ② 고객 가치 경영 실천을 통한 경쟁력 확보
- ③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고도화
- ④ 상생경영 확대 및 사회적 책임완수

이사회는 그룹 경영계획의 수행을 위해 경영진 성과평가에 그룹 경영계획을 반영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 분기별로 경영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여 그룹 경영계획 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 정관변경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변경안을 심의·의결합니다.(이사회규정 §11)

이에 따라 2015년 2월 개최된 제2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정관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15년 3월 제2차 이사회 정관변경 주요내용>

1. 변경사유 : 상호변경(영문변경 포함), 공고방법 변경,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116)
2. 주요 변경 내용
 - ① 상호변경 : (주) BS금융지주 => (주)BNK금융지주
 - ②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변경 www.bsfnng.com => www.bnkfg.com
 - ③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근거 신설

제19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 ②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5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③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환과 이자 지급 의무가 감면(이하 ‘채무재조정’이라 한다) 된다. 다만, 이사회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당시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
 1. 이 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
 2. 이 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는 경우

사명 변경에 따른 정관 개정 및 공고방법 변경을 내용으로 201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정관 변경안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를 정관에 마련하여 회사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및 BIS비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했으며, 201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정관 변경안이 승인되었습니다.

(다) 예산 및 결산승인

당사 이사회는 그룹 예산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의할 그룹 결산안을 심의·의결합니다.(이사회규정 § 11, 경영계획규정 § 7) 이 경우 익년도 예산은 익년도 그룹 경영계획 승인과 함께 심의·의결합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예산은 2016년 그룹 경영계획과 함께 2015년 12월 제 15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2016년 그룹 예산 편성 주요 내용>					
1. 경비예산 편성			(단위 : 억원)		
인건비	준인건비	물건비	합계		
4,261	2,329	3,122	9,712		
2. 자본예산 편성			(단위 : 억원)		
업무용부동산	업무용동산	무형자산	기타자산	합계	감가상각비
1,362	932	886	620	3,800	1,215

2014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책임자가 2015년 2월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2015년 2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2015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2월 개최된 제1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14년 그룹 결산의 주요 내용>

(단위 : 억원, %)

구분	목표	실적
당기순이익	3,720	8,098 ^{주)}
총자산	561,000	933,225
자기자본	39,132	54,639
ROA	0.76	1.47
ROE	10.00	11.49
BIS자기자본비율	13.01	11.91
고정이하여신비율	1.30	1.42

주) 경남은행 인수에 따른 염가매수차액 4,479억원 포함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합병·분할·해산 및 영업양수도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 § 10, 이사회규정 § 11)

(마)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당사의 이사회는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 내부규범 § 2, 이사회규정 § 11,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 6)

이에 따라 2015년 3월 개최된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안)에 대해 논의하여 2015년 3월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년 2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규정 등을 일괄 개정하였고, 최고경영자승계규정,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여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에 부합하는 세부기준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당사의 이사회규정은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이사는 상법 제398조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이사등과 같은 의미로 이사뿐만 아니라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대주주 및 임원과의 거래 등이 지주회사의 이익과 충돌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활동>

- 2014. 12월 제8차 이사회 : 2015년 중 자회사와 체결한 IT관련 거래 심사 및 승인(승인 대상 거래 3건, 예상금액 440백만원)
- 2015. 2월 제1차 이사회 : 그룹사간 업무용 차량 렌터카 도입 계약(2대, 계약 총액 113백만원) 및 IT자원 통합구매계약(4건, 예상금액 1,138백만원) 심사 및 승인

또한, 2015년 2월에 개최된 제1차 이사회에서 2014년도에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내역 결과를 보고 받아 이해상충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해상충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향후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보호에 반하지 않도록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사) 내부통제기준 수립·평가

당사는 법령준수, 건전경영,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이사회 결의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내부통제체제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새로 선임(임기 2년)하였고, 동 준법감시인은 2015년도의 준법감시 활동 결과를 2016년 2월에 개최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아)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이사회내 위원회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을 결정하는 등 그룹 및 자회사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정책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규정을 통해 그룹 리스크 철학 및 리스크관리 원칙을 정하고 리스크허용한도 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조직을 통해 리스크분석 및 각종 리스크한도 수준여부 등을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결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5) 결의사항>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2.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3. 자회사별 리스크허용한도의 승인
4. 자회사별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5.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보다 자세한 역할 및 활동사항 등은 본문 9. 리스크관리위원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영승계업무

당사 이사회는 경영승계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결의하고 있습니다.(이사회규정§11)

주요 심의·결의 내용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최고경영자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의하고, 경영승계원칙 및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며, 각 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를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이사가 아닌 집행임원의 경우에는 회장이 선임하도록 위임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2월 제1차 이사회에서 지주 경영진 임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5월 제6차 이사회에서는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BNK투자증권 안동원 대표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에 따라, 2015년 2월 제1차 이사회에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과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차 이사회에서 지배구조 원칙과 전반에 관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이 반영된 기본적인 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 6일 제2차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프로그램기준을 제정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였을뿐만 아니라, 그룹에서 자회사 CEO 경영승계계획을 일괄 수립하고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차) 기타

당사의 이사회는 자회사등에 대한 이사회 권한과 책임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시정권고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전체 자회사등을 통괄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토록 이사회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6조>

1. 자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자회사등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3.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나. 구성(이사)

(1) 총괄

당사 이사회의 총원수는 15명 이내로 하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이사 총원수의 과반수로 정합니다(정관 § 34). 2015년 말 현재 이사 총원수는 8명으로 상임이사 2명(대표이사, 부사장), 비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사 총원수를 8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회사의 자산규모와 수행업무의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회사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수가 소수인 경우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구성원수가 16명 이상으로 다수인 경우 의사결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1명의 상임이사(정민주)가 연임되었고, 1명의 사외이사(이종수)가 임기만료로 사퇴함에 따라, 새로운 이사(박홍대)가 선임되었으며, 나머지 2명의 사외이사(김성호, 김우석)는 모두 연임되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

로 연임하되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습니다.(정관 § 36) 상임·비상임이사는 경영의 연속성 제고 및 책임경영 차원에서 적절한 임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사외이사의 최고 임기를 제한한 사유는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를 차단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사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만이 선임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자격요건으로는 첫째, 이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둘째, 사외이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이지 아닌 자이어야 합니다.(정관 § 37) 당사는 2016년 3월 사외이사운영규정 개정을 통하여 사외이사는 그 재임기간 동안 다른 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정관 § 37)

<정관 3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2항>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자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을 말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 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아래의 사외이사 적극적 자격요건을 2015년 2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여 반영하였으며(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6조), 향후 사외이사 선임 시부터 동 자격요건을 적용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2015년말 현재 이사회는 이사의 출신분야별로 금융 2명, 경제 1명, 경영 1명, 재무·회계 2명, 법률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 중에서 선임되는 바, 현재 이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당사 대표이사인 회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함에 따라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로 김성호 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정관 § 43) 김성호 이사는 법률분야 전문가(건국대 대학원 법학박사, 前 법무부 장관)로 2011년 3월에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어 당사 사외이사로는 가장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한 점, 이사회 참여의 적극성 및 탁월한 법률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13년부터 선임사외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① 이사회 의장 성세환

성세환 이사회 의장은 상임이사(회장)으로 당사 재임기간은 30개월(임기: 2013.8월~2016. 8월)이며, 현재 부산은행 은행장(2012. 3월~2018. 3월)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은 당사 부사장(2011.3월~2012.3월), 부산은행 부행장(2008.1월~2011.3월), 부산은행 부행장보(2007.1월~12월), 부산은행 지역본부장(2006.3월~12월), 부산은행 지점장(2001.3월~2006.2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동인은 상임이사로서 그룹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사회내 위원회로는 이사회운영위원,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장, 회장후보추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아닌 자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함에 따라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진의 견제기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외이사 중에서 별도 선임사외이사(김성호 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정관 § 43)

② 이사 김우석

김우석 이사는 사외이사로 당사 재임기간은 59개월(2011.3월 ~ 2016.3월)이며, 현재 예일회계법인 회장(2008.1월~현재)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2005.1월), 신용회복위원장(2003.6월), 한국은행 감사(2000.5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이사회운영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장, 경영발전보상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 감사위원, 회장후보추천위원의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③ 이사 이종수

이종수 이사는 사외이사로 201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당사 재임기간은 48개월(2011.3월 ~ 2015.3월)이었습니다.

주요 경력은 현재 한성대학교 명예교수(2013.3월~현재),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2010.5월), (사)한국행정학회 회장(2003.1월), 한성대학교 교수(1983.9월~2013.2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퇴임 전 이사회운영위원, 리스크관리위원, 경영발전보상위원장,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 회장후보추천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④ 이사 김성호

김성호 이사는 현재 선임사외이사로 당사 재임기간은 59개월(2011.3월~2016.3월)이며, 현재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2007.12월~현재)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은 법무부 장관(2006.8월),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2004.1월), 대구·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2003.3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리스크관리위원, 경영발전보상위원,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 감사위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장, 회장후보추천위원장의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⑤ 이사 김창수

김창수 이사는 사외이사로 당사 재임기간은 23개월(2014.3월~2016.3월)이며,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1992.3월~현재) 및 부산은행 사외이사(2013.8월~2016.3월) 등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은 부산국제금융개발센터 센터장(2009.7월~현재), 부산상공회의

소 경제정책자문위원(2009.3월~현재), (사)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2008.4월),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원장(2006.3월), 부산대학교 무역·국제학부장(2005.7월), 부산대학교 국제대학원 부원장(1998.9월),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부 객원교수(1998.4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이사회운영위원, 리스크관리위원, 경영발전보상위원장,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 감사위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 회장후보추천위원의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⑥ 이사 문재우

문재우 이사는 사외이사로 당사 재임기간은 23개월(2014.3월~2016.3월)이며, 현재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2013.11월~현재)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정기주주총회 시 임기만료에 따라 사임 예정)

주요 경력은 손해보험협회 회장(2010.8월), 금융감독원 감사(2007.7월),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2005.12월),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2005.3월),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장(2002.6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담당 국장(2001.4월),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경협총괄 과장(1999.2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로는 이사회운영위원, 경영발전보상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 감사위원장,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 회장후보추천위원의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⑦ 이사 정민주

정민주 이사는 상임이사(부사장)로 당사 재임기간은 23개월(2014.3월~2016.3월)입니다.

주요 경력은 부산은행 상임감사위원(2010.3월),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

(2008.7월),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장(2006.5월), 금융감독원 조사연구실장(2005.1월),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부국장(2002.2월), 금융감독원 감독정보국 시니어팀장(2000.11월), 금융감독원 동경사무소 주재원(1999.1월), 한국은행 여신관리국 과장(1994.9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리스크관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의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⑧ 이사 이봉철

이봉철 이사는 비상임이사로 당사 재임기간은 23개월(임기 : 2014.3월~2017.3월)이며, 현재 롯데쇼핑 정책본부 경영지원실장 부사장(2014.12월~현재)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은 롯데쇼핑 정책본부 경영지원실장 전무(2014.3월),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2012.6월), 롯데손해보험 전무(2011.6월), 롯데캐피탈 감사(2009.3월), 롯데쇼핑 정책본부 상무(2009.2월), 롯데쇼핑 정책본부 이사(2007.4월), 롯데호텔 경영관리본부 이사(2006.2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경영발전보상위원,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 회장후보추천위원의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⑨ 이사 박홍대

박홍대 이사는 사외이사로 당사 재임기간은 11개월(2015.3월~2017.3월)이며, 현재 법무법인 유석의 대표변호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2016년 3월 정기주주총회 시 중도 사임 예정임)

주요 경력은 S&T모티브(주) 사외이사(現), 법무법인 유석 대표변호사(現), 부산고등법원 법원장(2013.2월), 부산선거관리위원회 35대 위원장(2011.3월), 부산지방법원장(2011.2월), 제주지방법원장(2010.2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2009.2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리스크관리위원, 경영발전보상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 회장후보추천위원의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3) 요약

성명	상임/ 사외/ 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성세환	상임	회장, 이사회 의장	01.03 부산은행 업무동지점장 03.04 부산은행 업무동기업고객 지점장 04.06 부산은행 사상공단지점장 05.03 부산은행 녹산중앙지점장 06.03 부산은행 지역본부장 07.01 부산은행 부행장보 08.01 부산은행 부행장 11.03 BS금융지주 부사장 12.03 부산은행 은행장(現) 13.08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現)	13.08.14	16.08.13	30개월	운영위, 임추위, 회추위
김우석	사외	이사회 운영 위원장	84.06 재무부 이재국 산업금융과 과장 88.08 아시아개발은행 이사 보좌관 91.11 재무부 국제금융국 외환정책과 과장 94.08 駐日 한국대사관 재경관(참 사관) 97.01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실 국제금 융증권 심의관 98.03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장 99.01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 99.07 세무대학 학장 00.05 한국은행 감사 03.06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05.01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08.01 예일회계법인 회장(現) 11.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11.03.15	16.03.26	59개월	운영위, 리스크 관리위, 경발위, 사추위, 감추위, 감사위, 회추위
이종수	사외 (前)	보상 위원장 (前)	83.09 한성대학교 교수,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역임 99.05 일본 중앙대학 정책문화연 구소 초빙연구원 02.05 법무부 반부패세계대회 조직 위원 03.01 (사)한국행정학회 회장 04.01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자문 위원장	11.03.15	15.03.27	48개월	운영위, 리스크 관리위, 보상위, 감추위, 회추위

성명	상임/ 사외/ 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10.01 CBS방송 객원해설위원(現) 10.05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 위 원장 11.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前) 13.03 한성대학교 명예교수(現)				
김성호	사외	회장 후보 추천 위원장	95.09 서울지방검찰청 특수 제3· 2·1부장 99.06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03.03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03.03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04.01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06.08 법무부 장관 07.12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現) 11.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11.03.15	16.03.26	59개월	리스크 관리위, 경발위, 임추위, 감사위, 감추위, 회추위
김창수	사외	경영발 전보상 위원장	92.03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부 교수/학부장(現) 98.04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국제 관계학부 객원교수 98.09 부산대학교 국제대학원 부원장 05.07 부산대학교 무역·국제학부장 06.03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원장 08.04 (사)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 09.03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자 문위원(現) 09.07 부산국제금융개발센터 센터장(現) 11.08 부산대학교 대외교류본부장 13.08 부산은행 사외이사(現) 14.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14.03.28	16.03.27	23개월	운영위, 리스크 관리위, 경발위, 임추위, 감사위, 감추위, 회추위
문재우	사외	감사 위원장	99.02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경험총 괄 과장(부이사관) 01.04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적 기강담당 국장 02.06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장(이 사관) 05.03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05.12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07.07 금융감독원 감사 10.08 손해보험협회 회장 13.11 법무법인 율촌 고문(現) 14.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14.03.28	16.03.27	23개월	운영위, 경발위, 사추위, 임추위, 감사위, 감추위, 회추위

성명	상임/ 사외/ 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정민주	상임	부사장	94.09 한국은행 여신관리국 과장 99.01 금융감독원 동경사무소 주재원 00.11 금융감독원 감독정보국 시니어 팀장 02.02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부국장 05.01 금융감독원 조사연구실장 06.05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장 08.07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 10.03 부산은행 상임감사위원 14.03 BNK금융지주 부사장(現)	14.03.28	16.03.26	23개월	리스크 관리위, 사추위
이봉철	비상임	-	06.02 롯데호텔 경영관리본부 이사 07.04 롯데쇼핑 정책본부 이사 09.02 롯데쇼핑 정책본부 상무 09.03 롯데캐피탈 감사 11.06 롯데손해보험 전무 12.06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14.03 롯데쇼핑 정책본부 경영지원 실장 전무 14.03 BNK금융지주 비상임이사(現) 14.12 롯데쇼핑 정책본부 경영지원 실장 부사장(現)	14.03.28	17.03.27	23개월	경발위, 임추위, 회추위
박홍대	사외	사외이 사후보 추천위 원장	06.08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09.02 부산시방법원동부지원장 10.02 제주지방법원장 11.02 부산지방법원장 13.02 부산고등법원장 15.02 법무법인 유석 대표변호사(現) 15.03 S&T모티브(주) 사외이사(現) 15.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15.3.27	17.03.26	11개월	리스크 관리위, 경발위, 사추위, 감추위, 회추위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15년에는 총 15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어 부의안건 47건, 보고사항 32건으로 총 79건의 안건을 의결 및 보고받았으며,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96%로, 당초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사회 참석률 목표치인 80%를 상회하였

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27회 소집되어 부의안건 40건을 의결하였으며, 위원의 평균 참석률은 93%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이하 ‘이사회 등’ 이라 한다) 운영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이사회 등 개최 전 의안에 대해 이사들에게 사전설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들의 의견 및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이사회 등 개최 전에 반영하여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와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5년도 제1차 이사회 : 2015. 2. 4(10:50~11:50)

[안건 통지일 : 2015. 1. 28]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성호	김우석	이종수	이봉철	문재우	김창수	정민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경영진 임면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이사회 사무지원조직의 책임자 임면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2014년도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거래내역 결과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2014년도 사외이사평가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임원보수 규정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집행임원운영규정 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정(안) ²⁾									
라.금융회사 지배구조 모 범규준 관련 내규 제 · 개정(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 회 위원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제4기(2014년도) 결 산결과승인 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고객정보의 제공 및관 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당사와 BS캐피탈간 거래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없음 ¹⁾	가결
자.IT자원 통합구매 계약 및 지주회사와 회사간 포괄거래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없음 ¹⁾	가결

1)사외이사, 비상임이사 전원 S등급 평가

2)집행임원 선임 대상범위 확대

3)주요내용 : 이사회등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 등

4)지주사 당기순이익 3,564억, 그룹 당기순이익 8,098억(염가매수차익 반영)

(나) 제2015년도 제2차 이사회 : 2015. 2. 27(11:30~12:30)

[안전 통지일 : 2015. 2. 17]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성호	김우석	이종수	이봉철	문재우	김창수	정민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내부회계관리제도 운 영실태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전									
가.2014년도 경영진 단 기성과 평가 및 보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나.장기성과 현금보상 성과평가 확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장기성과 현금보상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2015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목표 부여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장기성과 현금보상 계약체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이사 후보 확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정관일부변경(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카.제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의 목적 사항 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반영

2) 상호변경 : BS금융지주 → BNK금융지주

(다) 제2015년도 제3차 이사회 : 2015. 3. 27(11:00~12:40)

[안전 통지일 : 2015. 3. 17]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우석	박홍대	김성호	김창수	문재우	정민주	이봉철		
2. 참석여부	참석	불참 ¹⁾	참석	불참 ¹⁾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이사회내 위원회별 위원장 선임보고 ²⁾	특이의견 없음									
나.이사회 운영 및 사외 이사 활동 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다.사외이사 기부금 지원 내역 보고 ³⁾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이사회 의장 선임 ⁴⁾		찬성	불참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선임사외이사 선임 ⁵⁾		찬성	불참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이사회내 위원회별 위 원선임		찬성	불참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해외출장

2) 각 위원회별 위원장 : 이사회운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김우석 이사, 경영발
전보상위원회 김창수 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박홍대 이사, 회장후보추천
위원회 김성호 이사

3) 해당사항 없음

4) 대표이사 회장

5) 김성호 사외이사

(라) 제2015년도 제4차 이사회 : 2015. 4. 1(09:30~10:00)

[안건 통지일 : 2015. 3. 20]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우석	박홍대	김성호	김창수	문재우	정민주	이봉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리스크관리위원회 심 의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경남은행 비자배주주지 분 인수를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2015년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의 목적 사항 결정(기준일 지 정 및 주주명부 폐쇄)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경남은행 1주당 0.6388022주 비율로 배정 및 교부
- 2) 감사보고와 경남은행비지배주주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체결 승인

(마) 제2015년도 제5차 이사회 : 2015. 4. 27(10:30~11:00)

[안건 통지일 : 2015. 4. 17]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우석	박홍대	김성호	김창수	문재우	정민주	이봉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제 5기(2015년) 1/4 분기 가결산 결과보고 ¹⁾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해당사항 없음								

- 1) 1/4분기 그룹 당기순이익 1,540억원, ROA 0.9%, ROE 12.77%, BIS 11.58%, 보통주자본비율 7.7%

(바) 제2015년도 제6차 이사회 : 2015. 5. 13(11:40~12:10)

[안건 통지일 : 2015. 5. 1]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우석	박홍대	김성호	김창수	문재우	정민주	이봉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조건부 신종자본증권 발행(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자금 차입(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BIS 비율 및 안정성 지표 개선 위한 신종자본증권 2,000억원 발행

2) 주식매수청구권 발생에 대비한 한도거래 여신 2,000억원 차입

(사) 제2015년도 제7차 이사회 : 2015. 6. 10(17:00~17:30)

[안건 통지일 : 2015. 5. 29]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우석	박홍대	김성호	김창수	문재우	정민주	이봉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자회사 출자 결과보고 ¹⁾	특이의견 없음								
나. 자금 차입 승인의견 미취급 보고 ²⁾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조건부 신종자본증권 발행내용 변경(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나. BNK투자증권출자(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1) BNK캐피탈 500억원 출자지원 건(납입자본금 50억원, 자본잉여금 450억원)

2) 당사 보유자금 조달가능, 미취급 보고

3) 발행예정금액 감액보고

(아) 제2015년도 제8차 이사회 : 2015. 6. 11(16:30~17:00)

[안건 통지일 : 2015. 6. 1]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우석	박홍대	김성호	김창수	문재우	정민주	이봉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불참 ¹⁾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조건부 신종자본증권 발행내용 변경(안) ²⁾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업무상 출장

2) 발행금액 변경(유효수요 추가확보)

(자) 제2015년도 제9차 이사회 : 2015. 6. 29(08:40~09:00)

[안전 통지일 : 2015. 6. 19]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우석	박홍대	김성호	김창수	문재우	정민주	이봉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부산은행 출자(안)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자본적정성 확충을 위한 1,100억원 출자

(차) 제2015년도 제10차 이사회 : 2015. 8. 4(11:00~12:30)

[안전 통지일 : 2015. 7. 24]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우석	박홍대	김성호	김창수	문재우	정민주	이봉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불참 ¹⁾	참석	참석	참석	불참 ¹⁾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BNK 자산운용(주)의 계열사 편입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2015년도 상반기 가결산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신종자본증권 발행 및 자회사 출자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경남은행 비지배주주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그룹 고객정보 관리업무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바.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4. 의결안건									
가.브랜드 수수료 수취계 약 체결(안) ²⁾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불참	가결
나.지주회사 개별 재무계 획 일부 수정(안)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불참	가결
다.조건부 신종자본증권 발행(안) ³⁾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불참	가결
라.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 정(안) 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가결
마.(재)경상남도장학회장 학기금(기부금)출연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가결
바.부산은행과의 임대차 계약 갱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가결

- 1) 업무상 출장
- 2) BNK CI 사용으로 지주사와 계열사간 거래
- 3) 전액 경남은행 출자분
- 4) BNK자산운용 편입에 따른 조치

(카) 제2015년도 제11차 이사회 : 2015. 9. 1(09:30~10:00)

[안건 통지일 : 2015. 8. 21]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우석	박홍대	김성호	김창수	문재우	정민주	이봉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경남은행 출자(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출자금액 1,500억원(자본적정성 확보 통한 대외신인도 향상)

(타) 제2015년도 제12차 이사회 : 2015. 10. 2(10:00~10:30)

[안전 통지일 : 2015. 9. 22]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우석	박홍대	김성호	김창수	문재우	정민주	이봉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BNK캐피탈 출자 (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500억원 유상증자(안)

(파) 제2015년도 제13차 이사회 : 2015. 11. 6(11:30~12:30)

[안전 통지일 : 2015. 10. 26]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우석	박홍대	김성호	김창수	문재우	정민주	이봉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2015년도 3/4분기 가결산 결과 보고 ¹⁾	특이의견 없음								
다.2015년 회사채 발행 결과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신종자본증권 발행 및 출자 결과보고 ²⁾	특이의견 없음								
마.그룹 고객정보관리업 무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바.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³⁾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가.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프로그램기준제정 (안) 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중요내규 개정(안) ⁵⁾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그룹 당기순이익 4,675억원, 경남은행 지배지분이익 1,675억원

2)경남은행 출자건

3)감사담당직원의 독립성 확보차원

4)지배구조 모범규준 반영

5)지배구조 모범규준 반영

(하) 제2015년도 제14차 이사회 : 2015. 11. 17(15:50~16:05)

[안건 통지일 : 2015. 11. 6]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우석	박홍대	김성호	김창수	문재우	정민주	이봉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제2차 유상증자 추진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바젤 III 도입에 따른 그룹 자본 적정성 제고 및 자회사 자본확충

(가-1) 제2015년도 제15차 이사회 : 2015. 12. 17(11:10~12:20)

[안건 통지일 : 2015. 12. 7]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우석	박홍대	김성호	김창수	문재우	정민주	이봉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나.리스크관리위원회 결 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감사위원회 결의사항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그룹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 규 정제정(안)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VISION 2020 그룹중 장기 경영계획(안) ¹⁾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2016년도 그룹 경영 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회사채 발행 계획(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2016년도 지주회사와 자 회사간 포괄거래 승인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2016년~2020년 5개년

2) 만기도래 회사채 차환 및 지주사 운영자금조달

3) BNK시스템과 IT 자원구입의 건

라.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당사는 이사의 역할 및 책임강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매년 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경우 매년 1월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종류는 자기평가, 이사회 평가(본인 제외), 직원 평가의 정성평가와 이사회 및 소위원회 참석률 평가의 정량평가를 실시합니다. 정성평가의 평가항목으로 역량 및 전문성, 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당사 발전 기여도를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이사 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의 경우 경영진 성과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은 1년 단위의 단기성과평가와 3년 단위의 장기성과평가로 구분되고,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의 경우 보상은 일정 수준의 현금보상과 나머지는 주가와 연계하여 3년간 이연지급함으로써 단기성과 지향적인 경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평가체계를 설계하였으며, 또한 이연 지급된 보상에 대해서도 환수제도를 도입하여 책임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 권한과 책임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동 위원회 규정 제2조 및 제6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 및 심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 후보 인선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을 발굴하여 관련법령 및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이사회 구성, 분야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내역을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 후보군을 실질적으로 발굴 및 관리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기 관리 중인 후보군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부터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적정성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오고 있습니다.

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요

당사는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되며 역량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과 사외이사운영규정에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후보추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12월 시행된 금융회

사 지배구조 모범기준의 취지 및 적극적 요건을 반영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2월, 11월 두 차례 동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동 규정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주요 주주 또는 외부자문기관 등 금융회사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등 내역을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법령에서 정하는 소극적 자격요건 외 적극적 자격요건인 독립성, 직무공정성, 책임성, 윤리성, 충실성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재임중인 사외이사 평가를 매년 1월 실시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 추천서에 사외이사 평가 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0 (다만, 관련 법령에서 더 낮은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상법 제542조의6 제8항에 따라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함)가 당사에 추천한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구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위원회 위원은 사외이사 3명과 상임이사(부사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전문성, 다양성, 독립성 등을 감안하여 회계전문가 2명, 금융전문가 1명, 법률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2015년말 기준)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및 임기만료일	약력
박홍대	사외	위원장	15.3.27~17.3.27	법무법인 유석 대표변호사(現) 부산고등법원 법원장
김우석	사외	위원	14.3.28~16.3.25	예일회계법인 회장(現)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재우	사외	위원	14.3.28~16.3.25	법무법인 율촌 고문(現) 손해보험협회 회장
정민주	상임	부사장	14.3.28~16.3.25	부산은행 상임감사위원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당사는 다양한 전문가로 사외이사를 구성하기 위하여 주요 주주 및 사외이사, 경영진, 외부자문기관 등으로부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받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위원장 선임을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2월 27일 개최된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될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그 결과 사외이사 5명 가운데 임기 도래한 3명 중 2명은 1년간 연임하는 것으로 재추천하고, 1명은 임기만료로 사임함에 따라 1명을 추가로 신규 추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31년간 판사와 법원장을 역임하며 법률분야에 대한 폭넓은 전문지식과 실무적 경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높은 명성과 덕망을 갖춘 前 부산고등법원장 박홍대(법무법인 유석) 변호사를 신임 사외후보로 추천하였으며,

임기 도래한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당사 재임기간 동안 이사회 등의 높은 참석률, 우수한 사외이사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추천 하였습니다.

2015년 3월 27일에 개최된 제2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참석위원 전원의 결의로 2015년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임기 1년)을 선임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신임 위원장(박홍대)의 사외이사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점,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 유지에 적합한 점 등이 인정되어 위원의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6일에 개최된 제3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선임원칙 및 후보군 관리방안,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안)을 안건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①이사 구성원의 다양성 반영 ②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③관련법령 및 지배구조 모범기준 자격요건 충족 등을 선임원칙으로 결의하였으며,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하여 ①다양한 추천경로 통하여 전문성 및 다양성 갖춘 후보군 관리 ②공개정보 활용 통한 후보군 검증 ③후보군 2~5배수 수준 관리 ④사외이사 후보군 Pool-In/Out 실시 ⑤예비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자격요건 정밀검증 실시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17일에 개최된 제4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후보군관리 및 후보검증에 대한 부의안건을 상정하여 후보군 Pool-In/Out 실시에 대해 결의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5년도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5. 2. 27(10:30~10:50)

[안전통지일 : 2015. 2. 17]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문재우	김우석	김창수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해당사항 없음	-				-
4. 의결(심의)안건					
가.사외이사 후보 추천(안) (김성호 사외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김우석 사외이사 후보 추천)	찬성	의결권제한 ¹⁾	찬성	찬성	
(박홍대 사외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사외이사 본인의 후보 추천건으로 가부결정에 대한 의결권 행사 불가

(나) 제2015년도 제2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5. 3. 27(11:40~11:50)

[안전통지일 : 2015. 3. 17]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문재우	김우석	박홍대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해당사항 없음		-			-
4. 의결(심의)안전					
가.위원장 선임 (사외이사 박홍대)	찬성	불참	의결권제한 ¹⁾	찬성	가결

1)사외이사 본인의 후보 추천건으로 가부결정에 대한 의결권 행사 불가

(다) 제2015년도 제3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5. 11. 6(10:30~11:00)

[안전통지일 : 2015. 10. 26]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박홍대	김우석	문재우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해당사항 없음	-			-
4. 의결(심의)안전					
가.사외이사 선임원칙 및 후보군 관리방안 수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2015년도 제4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5. 12. 17(10:30~10:50)

[안전통지일 : 2015. 12. 07]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박홍대	김우석	문재우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해당사항 없음		-			-
4. 의결(심의)안건					
가.사외이사 후보군 Pool-In/Out 실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사외이사 후보 추천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개요

사외이사 후보 박홍대는 2015년 2월 27일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었고, 사외이사 후보 김성호, 김우석은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전 계열회사로부터의 거래관계 등 사외이사 자격요건검증을 거쳐 2015년 2월 27일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위원 4명의 전원 찬성으로 위 3명을 최종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2015년 2월 27일 제2차 이사회에서 이사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안건을 결의하였으며, 2015년 3월 27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 김우석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 1947년

② 출신학교

○영양고

○건국대 무역학과

- 미국 윌리엄스 대학원(경제학 석사)
- 필리핀 산토토마스 대학원(경제학 박사)

③ 경력

一 일반경력

1984.06 前 재무부 이재국 산업금융과 과장
 1988.08 前 아시아개발은행 이사 보좌관
 1991.11 前 재무부 국제금융국 외환정책과 과장
 1994.08 前 駐日 한국대사관 재경관(참사관)
 1997.01 前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실 국제금융증권 심의관
 1998.03 前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장
 1999.01 前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
 1999.07 前 세무대학 학장
 2000.05 前 한국은행 감사
 2003.06 前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2005.01 前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2008.01 現 예일회계법인 회장
 2008.03 前 현대엘리베이터(주) 사외이사
 2009.03 前 (주)GS 사외이사
 2011.03 現 BNK금융지주 사외이사
 一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 해당사항 없음

④ 사외이사 경력

김우석 사외이사 후보는 2011년 3월 당사 출범 시부터 현재까지 당사 사외이사로 재임 중입니다.

2014년의 경우 이사회 8회(참석률 100%), 이사회내위원회 19회(참석률 100%) 참석하여,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구 분	시 기	후보 제안자	후보제안자 주요 경력(현직 포함)	사추위원장 해당 여부
재선임	2015. 3월	김창수	2014.03~2016.03 現 BNK금융지주 사외이사 1992.03~ 現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부
재선임	2014. 3월	임영록	2013.08~2014.03 前 BS금융지주 사장 2012.03~2013.08 前 BS금융지주 부사장	부
재선임	2013. 2월	김종화	1982.03~2013.02 前 덕성여자대학교 경제학 교수 2011.03~2013.03 前 부산은행 사외이사 1999.11~2000.03 前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부
신임	2011. 3월	지주사 전환에 따른 모든 자회사 이사회 의 일괄 추천		

②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자와 후보제안자 김창수는 2014년 총 5회의 이사회를 같이 참석하였으며 회사 업무상 만남 외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후보제안자 김창수는 2014년 3월 주주총회에서 최초 선임되었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이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김우석은 경제학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경제 및 금융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예일회계법인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2011년 당사가 지주 체제로 출범 당시 최초로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그간 다양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을 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에 회계 및 재무분야의 전문가로서 앞으로 BNK금융그룹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2011년 3월 당사 출범 시, 지주사 전환에 따른 모든 자회사 이사회 의 일괄 추천을 통해 최초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년간의 임기 이후에는 그간의 수행 능력과 실적을 인정 받았고, 다른 사외 이사 및 당사 경영진으로부터 3회에 걸쳐 추천을 받아 사외이사로 재선임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후보자가 최근 2년 내 상근으로 근무한 예일회계법인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는 없습니다.
②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가)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평가

후보자는 당사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후보자가 최근 2년 내 상근으로 근무한 예일회계법인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는 없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관련법령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 37), 지배구조 내부규범

(§ 6~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4)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당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 여부 및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동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㉞ 전문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 정관(§ 37조)에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전문성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배구조 내부규범(§ 7), 사외이사운영규정(§ 4조)에도 반영하였습니다. 당사는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후보자는 2008년 이후 예일회계법인의 회장직을 수행하는 자로 회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리더십, 비전제시,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높은 명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한국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금융기관과 재정경제부 공직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회계·재무 전문가로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㉟ 직무공정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 정관(§ 37조)에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공정성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배구조 내부규범(§ 6~7), 사외이사운영규정(§ 4조)에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후보자가 2년 내 상근으로 근무 중인 예일회계법인의 경우 당사 및 당사 회사와의 여신거래가 없고,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

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㉔ 윤리성, 책임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윤리성, 책임성 자격요건을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7), 사외이사 운영규정(§ 4조)에 반영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오랜 공직생활 중에서도 평판이 우수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이사회 활동에 있어서도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하고, 당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㉔ 충실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제4호의 충실성 자격요건을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7), 사외이사운영규정(§ 4조)에 반영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당사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참여 및 안건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80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후보자는 현재 예일회계법인의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통해 출석률 100%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외이사 업무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④ 본인 소명

본인은 관련법령 및 회사 내규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현재 본인이 근무 중인 예일회계법인은 BNK금융지주 및 BNK금융지주의 회사와 거래관계가 없어 이해상충 및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경제·재무(회계) 분야에서의 약 30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으로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 사외이사 평가 결과

당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최초 선임 시 2년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익년도 초에 이사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되며 정성평가는 자기평가(20%), 이사회평가(50%), 직원평가(20%)로 구분하고 정량평가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률(10%)을 반영합니다. 평가항목은 이사의 역량 및 전문성과 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회사발전 기여도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2014년도 김우석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결과 전문성, 충실성, 기여도 등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대한 사외이사의 참석률이 100%로 우수하며 이사회(위원회 포함)시 안건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의견제시 등으로 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는 사외이사를 재선임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자격요건 준수 여부,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이사회 등 참여도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김우석 사외이사는 당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률이 우수하고(100%), 사외이사 평가등급도 탁월한 수준(S등급)으로 당사 사외이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등에서도 회의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사전에 준비하여 회의시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하는 등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당사의 감사위원장과 위원을 오랜 기간 역임하는 등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2015년 회사의 주요 이슈사항으로는 경남은행 비지배주주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BNK자산운용(주)의 계열사 편입, 제2차 유상증자 추진 등이 있었으며, 김우석 사외이사는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회계/재무전문가로서 심도 깊은 검토를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회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김우석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그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로서 당사 사외이사 후보로서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15]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5년 2월 27일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4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주)}

주)본인 재선임에 대해서 김우석 사외이사의 의결권 제한함

(3) 김성호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 1950년

② 출신학교

○브니엘고

- 고려대 법학과
- 미국 조지워싱턴대 법과대학원(법학 석사)
- 건국대 대학원(법학 박사)

③ 경력

—일반경력

1979.11 前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3.03~1995.09 前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4·3·2과장
 1995.09~1997.08 前 서울지방검찰청 특수 제3·2·1부장
 1999.06 前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2003.03 前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2004.01~2006.08 前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2006.08~2007.09 前 법무부 장관
 2007.12 現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
 2011.03 現 BNK금융지주 사외이사
 2013.03 前 CJ(주) 사외이사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 해당사항 없음

④ 사외이사 경력

김성호 사외이사 후보는 2011년 3월 당사 출범 시부터 현재까지 당사 사외이사로 재임 중입니다.

2014년의 경우 이사회 8회(참석률 100%), 이사회내위원회 19회(참석률 100%) 참석하여,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구 분	시 기	후보 제안자	후보제안자 주요 경력(현직 포함)	사추위원장 해당 여부
재선임	2015. 3월	김우석	2011.03 現 BNK금융지주 사외이사 2008.01 現 예일회계법인 회장 2005.01 前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부
재선임	2014. 3월	이종수	2013.03 現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2011.03 現 BS금융지주 사외이사 2010.05 現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부
재선임	2013. 2월	김우석	2011.03 現 BNK금융지주 사외이사 2008.01 現 예일회계법인 회장 2005.01 前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부
신임	2011. 3월	지주사 전환에 따른 모든 자회사 이사회 의 일괄 추천		

②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자와 후보제안자 김우석은 2014년 총 8회의 이사회를 같이 참석하였으며 회사 업무상 만남 외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2011년 최초 선임시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모든 자회사 이사회 의 일괄 추천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이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김성호는 법학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검찰청 등 법률 관련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에는 법무부 장관직을 역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2011년 최초로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그간 다양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법률 분야의 전문가로서 향후 BNK금융그룹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2011년 3월 당사 출범시 지주사 전환에 따른 모든 자회사 이사회의 일괄 추천을 통해 최초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년간의 임기 이후에는 그간의 수행 능력과 실적을 인정받아 다른 사외이사로부터 3회에 걸쳐 추천을 받아 사외이사로 재선임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후보자가 최근 2년 내 상근으로 근무 중인 재단법인 행복세상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는 없습니다.
②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관련법령

가)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평가

후보자는 당사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후보자가 최근 2년 내 상근으로 근무 중인 재단법인 행복세상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는 없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관련법령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 37), 지배구조 내부규범 (§ 6~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 4)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당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

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 여부 및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동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전문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 정관(§ 37조)에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전문성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배구조 내부규범(§ 7), 사외이사운영규정(§ 4조)에도 반영하였습니다.

김성호 후보자는 약 25년간의 검사 경험 및 법무부 장관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법률 분야에 대한 지식과 업무 능력이 탁월하며, 재단법인의 이사장직을 수행하며 대내외적으로 높은 명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후보자는 법률 전문가로서 당사 사외이사가 되기 위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직무공정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 정관(§ 37조)에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공정성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배구조 내부규범(§ 6~7), 사외이사운영규정(§ 4조)에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후보자가 2년 내 상근으로 근무 중인 재단법인 행복세상의 경우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가 없고,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리성, 책임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윤리성, 책임성 자격요건을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7), 사외이사

운영규정(§ 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윤리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법조계에서의 오랜 공직생활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확립, 경제적 번영, 국민의 안전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운영을 통해 계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당사에서도 사외이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충실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제4호의 충실성 자격요건을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7), 사외이사운영규정(§ 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사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참여 및 안전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80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후보자는 현재 재단법인 행복세상의 이사장직(상근)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통해 사외이사 업무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본인 소명

본인은 관련법령 및 회사 내규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현재 본인이 근무 중인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BNK금융지주 및 BNK금융지주의 자회사와 거래관계가 없어 이해상충 및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본인은 법률 분야에서의 약 25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으로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 사외이사 평가 결과

당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최초 선임 시 2년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익년도 초에 이사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되며 정성평가는 자기평가(20%), 이사회평가(50%), 직원평가(20%)로 평가하고 정량평가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률(10%)을 반영합니다. 평가항목은 이사의 역량 및 전문성과 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회사발전 기여도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2014년도 김성호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결과 전문성, 충실성, 기여도 등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대한 사외이사의 참석률이 100%로 우수하며 이사회(위원회 포함)시 안건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의견제시 등으로 이사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는 사외이사를 재선임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사외이사 자격요건 준수 여부,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이사회 등 참여도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김성호 사외이사는 당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률이 우수하고(100%), 사외이사 평가등급도 탁월한 수준(S등급)으로 당사 사외이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등에서도 회의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사전에 준비하여 회의시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하는 등 법률 전문가로서 당사의 이사회운영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오랜 기간 역임하는 등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2015년 회사의 주요 이슈사항으로는 경남은행 비지배주주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BNK자산운용(주)의 계열사 편입, 제2차 유상증자 추진 등이 있었으며, 김성호 사외이사는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로서 심도깊은

검토를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회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김성호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그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로서 당사 사외이사 후보로서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15]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박흥대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 1954년

② 출신학교

○경남공고

○부산대 법학과

○부산대 대학원(법학 석사)

③ 경력

—일반경력

1984.02 前 광주지방법원 판사

2006.08 前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09.02 前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지원장

2010.02 前 제주지방법원 법원장

2011.02 前 부산지방법원 법원장

2011.03 前 부산선거관리위원회 제35대 위원장

2013.02 前 부산고등법원 법원장 (2015.2.7 퇴임)

2015.02 現 법무법인 유석 대표이사

2015.03 現 S&T 모티브(주) 사외이사

2015.03 現 BNK금융지주 사외이사

※ 2016. 3월 정기주주총회 시 당사 사외이사 사임예정

④ 사외이사 경력 :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해당사항 없음

(나)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구 분	시 기	후보 제안자	후보제안자 주요 경력(현직 포함)	사추위원장 해당 여부
신임	2015.3월	문재우	2014.03 現 BNK금융지주 사외이사 2013.11 現 법무법인 율촌 고문 2010.08 前 손해보험협회 회장	여

②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자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서 후보제안자 문재우와 이사회를 같이 참석한 적이 없으며, 민법상 친족관계, 학연, 동 기업 내 근무관계 등은 전혀 없습니다. 후보제안자 문재우는 2014년 3월 주주총회에서 최초 선임되었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이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박홍대는 31년간 판사와 법원장 등을 역임하며 법률분야에 폭넓은 전문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지역 내 높은 명성과 덕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률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향후 BNK금융그룹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동 후보자에 대한 능력 및 세평을 확인한 결과 법률분야의 폭넓은 전문지식과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인정받아 문재우 사외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후보자가 최근 2년 내 상근으로 근무한 부산고등법원, 법무법인 유석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는 없습니다.
②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관련법령

가)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평가

후보자는 당사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후보자가 최근 2년 내 상근으로 근무한 부산고등법원, 법무법인 유석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는 없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관련법령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 37), 지배구조 내부규범 (§ 6~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 4)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당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 여부 및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동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전문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 정관(§ 37조)에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전문성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배구조 내부규범(§ 7), 사외이사운영규정(§ 4조)에도 반영하였습니다.

박홍대 후보자는 약 30년간의 판사 및 법원장으로 재임하여 법률 분야에 대한 지식과 업무 능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높은 명성과 덕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후보자는 법률 전문가로서 당사 사외이사가 되기 위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직무공정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 정관(§ 37조)에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공정성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배구조 내부규범(§ 6~7), 사외이사운영규정(§ 4조)에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후보자가 2년 내 상근으로 근무한 부산고등법원과 현재 근무중인 법무법인 유석의 경우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가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리성, 책임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윤리성, 책임성 자격요건을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7), 사외이사운영규정(§ 4조)에 반영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윤리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법조계에서의 오랜 공직생활을 성실히 해오며 법원장으로 명예롭게 퇴임한 점을 감안할 때 당사에서도 윤리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외이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㉔ 충실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제4호의 충실성 자격요건을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7), 사외이사운영규정 (§ 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사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참여 및 안건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80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 유석의 대표변호사직을 수행하면서, 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통해 사외이사 업무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④ 본인 소명

본인은 관련법령 및 회사 내규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현재 본인이 최근 2년간 근무한 부산고등법원과 현재 근무 중인 법무법인 유석은 BNK금융지주 및 BNK금융지주의 자회사와 거래관계가 없어 이해상충 및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본인은 법률 분야에서 약 30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으로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 사외이사 평가 결과 :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해당사항 없음

(사)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해당사항 없음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상기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5년 2월 27일 제1차 사

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시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4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바. 사외이사 재임여부

2015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 3명 중 2명은 연임, 1명은 임기만료로 사임하였으며, 연임한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 평가 결과 재선임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이사회등 출석율	평가 여부
김우석	48개월	여	100%	여
김성호	48개월	여	100%	여
이종수	48개월	부	100%	여

※재임기간 및 참석율은 2015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FY2014) 기준임

사.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당사는 지역 금융회사의 특성상 지역 내에서 적합한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하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지원부서의 후보군 발굴 활동, 사외이사 및 경영진의 추천과 외부로부터의 추천 및 지역의 주요 인사 접촉 등을 통해 적합한 후보군을 발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에 따라 사외이사 후

보군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큰 틀은 2015년 2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여 마련하였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및 사외이사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내규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사외이사 선임원칙은 특정 배경 및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 및 심사하고,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 5, 사외이사운영규정 § 7조)

첫째, 경영진 또는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주기적으로 위원회에 제공하고

둘째, 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가 관련 법규 및 내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공정하게 검증하며

셋째,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하고

넷째, 위원회가 사외이사 재선임을 위해 후보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등 후보군 관리내역을 이사회 보고 하여야 한다.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군 선발기준 및 관리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2015년 10월 수립되어 제3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2015.11.6)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당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를 추천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원칙 및 후보군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매년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

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하여 주주, 당사 경영진 및 지원부서, 사외이사, 지역 내 명망 있는 인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당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추천 받은 인물 중 총 24명을 사외이사 후보군으로 선정하고 2015년도 제3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부의하여 참석위원 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사회 후보군은 출신분야별로 금융 5명, 경제 5명, 경영 4명, 법률 4명, 회계/재무 6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12월 당사는 기존 후보군 24명과 신규 추천자 5명에 대한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 점검을 실시하고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20명에 대해 12월 17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Pool-In/Out 실시(안)'을 부의하여 참석위원 4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후보군은 출신분야별로 금융 3명, 경제 5명, 경영 4명, 법률 2명, 회계/재무 6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1차 결의(심의)일자: 2015년 11월 6일 제3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금융	5	20.8%	
경제	5	20.8%	
경영	4	16.7%	
법률	4	16.7%	
회계/재무	6	25.0%	
합계	24	1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주주	—	—	
외부자문기관	—	—	
사외이사	6	25%	

지원부서	18	75%	
경영진	—	—	
합계	24	100%	

2차 결의(심의)일자: 2015년 12월 17일 제3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금융	3	15%	
경제	5	25%	
경영	4	20%	
법률	2	10%	
회계/재무	6	30%	
합계	20	1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주주	—	—	
외부자문기관	—	—	
사외이사	6	30%	
지원부서	12	60%	
경영진	2	10%	
합계	20	100%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2015년도 제3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15.11.6), 제4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15.12.07)에서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해당 결의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11월 6일, 12월 17일 각각 보고하고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정하였습니다. (후보군 추천내역은 상기 사-(3) 후보군 현황 참조)

자.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당사의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전략기획부이며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부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와 관련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	위원회명	보고 및 지원내용
2015.10.26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선임원칙 및 후보군 관리방안
2015.10.26		-사외이사 후보군 Pool-In/Out 실시현황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예측 가능한 기업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회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2월 제1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동 규정은 2014년 12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상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2월과 11월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 회사,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설정,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 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수립 등입니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은 이사회가 매년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며, 내부규정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별첨 12.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참조]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당사는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따라 당사 및 계열사의 최고경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관련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은행법 제 1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3, 상호저축은행법 제 35조의 2 등)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을 최소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에서는 2015년 2월 4일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15년 11월 6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프로그램기준을 제정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예측 가능한 기업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회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또는 개시시기는 당사 및 계열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또는 그룹임원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정하고, 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추천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는 먼저, 후보자추천위원회가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며, 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비상계획

당사는 최고경영자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불의

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상 이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지체 없이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 후보자 선임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제10조에 의거 직무대행자는 우선 상임이사가 맡게 되고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일상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보유하되, 상법 제408조에서 규정한 회사의 상무(常務)에 한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자 그룹과 추천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자격 요건 심사 및 검증 등을 통하여,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최종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다.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2015년 11월 제13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프로그램기준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15. 11. 16부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프로그램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동 프로그램에 따라 2016년 1월과 2월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및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주, 경남은행 및 BNK캐피탈의 최고경영자 후보가 추천되었습니다.

라.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2015년도 2월 제1차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부산은행과 BNK캐피탈의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안)이 참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며, 관련법령 및 당사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제5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에 의거 후보자는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격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현황

최고경영자 경영승계프로그램기준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평가, 검증 및 관리 등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 내역

당사는 2014년 12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에 따라 2015년 2월 제1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을 마련하여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토록 내규에 반영하였습니다.

동 연차보고서 작성기간 중에는 경영승계계획의 점검내역은 없으며, 당사는 2015년 11월 제정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프로그램기준에 따라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을 위하여,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제11조에 따라 전략기획부를 전담지원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지원부서 역할은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등 입니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에 따라 상기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부서명 : 지배구조지원팀

○직원수 : 총 4명

—총괄 : 부장 문경호(051-620-3021)

—실무 : 차장 송재현(051-620-3014), 차장 박도형(051-620-3035)

차장 신희섭(051-620-3042)

○ 운영내역

일자	운영내역	비고
2015.2.4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제정	이사회
2015.11.6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프로그램기준 제정	이사회운영위원회

가. 권한과 책임

당사는 경영승계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해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회장,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합니다.

- ① 회장후보추천
- ② 회장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
- ③ 회장의 자격요건 설정
- ④ 회장 후보군 발굴 및 관리, 후보자 자격요건 검증
- ⑤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각 자회사의 근거법(은행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 정한 최고경영자의 소극적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다음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최고경영자승계규정에 명시하여, 그 자격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2.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나.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당사는 2014년 12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반영하여 2015년 2월 제1차 이사회에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 구성과 심의·결의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2015년 11월 금감원 지적사항을 반영

하여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회장을 추가하여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등 이사전원, 총 7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였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은 회장의 자격요건 설정, 회장 후보군 발굴 및 관리, 후보자 자격요건 검증 등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회장 후보군 발굴 및 관리, 후보자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여 지배구조 모범기준에 맞게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실질적으로 상임이사(회장) 1명을 제외할 경우 외부출신의 이사는 6명(사외이사 5명, 비상임이사 1명)(86%)으로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토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사회는 비상설 위원회인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회내 위원회로 편제하고 상설 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2015년도 회기중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회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으로 김성호 선임사외이사를 호선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2015년말 기준)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現 직위	선임일 및 임기만료일	약력
김성호	사외	위원장	14.03.28~16.03.26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現) 법무부 장관
성세환	상임	위원	15.03.27~16.03.26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現) 부산은행 은행장(現)
박홍대	사외	위원	15.03.27~16.03.26	한성대학교 명예교수(現)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우석	사외	위원	15.03.27~16.03.26	예일회계법인 회장(現)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김창수	사외	위원	15.03.27~16.03.26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교수(現) 부산국제금융개발센터 센터장(現)
문재우	사외	위원	15.03.27~16.03.26	법무법인 율촌 고문(現) 손해보험협회 회장
이봉철	비상임	위원	15.03.27~16.03.26	롯데쇼핑 부사장(現)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15년도 중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3월 주주총회 후 위원장 선임 건으로 1회 개최되었습니다. 동 회의는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참석하였으며,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 선임사회이사인 김성호이사를 호선으로 선출하였습니다.

2015년 2월 제1차 이사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반영하여 동 위원회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15년 금감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동 규정을 2차 개정한 바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5년도 제1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2015. 3. 27(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이봉철	문재우	김창수	박홍대	김성호	김우석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불참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	—	—	—	—	—	—	
4. 의결안건								
가. 동 위원회 위원장 선임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여

1) 보고안건 없음

2) 위원장으로 선임사외이사 김성호를 추대함

라. 최고경영자후보 추천 관련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권한과 책임

당사는 자회사의 최고경영자 및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반영하여 2015년 2월 제1차 이사회에서 기존의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자회사 최고경영자 외에도 추가로 자회사 이사회에서 정하는 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사는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에 대해 동 위원회규정 제2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룹임원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유하고, 그룹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임원 후보를 물색 및 심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를 지원하고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룹임원후보 인선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원의 자격요건 설정, 은행장 후보군 발굴 및 관리·후보 검증, 그룹임원의 자질 등 자격요건 설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은행장 후보자 발굴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자회사 최고경영자 및 당사와 자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2015년 2월 제1차 이사회에서 신설된 위원회입니다.

동 위원회는 회장,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총 5명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위원 총수의 과반수로 하여 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5년말 기준)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현직	선임일 및 임기만료일	약력
성세환	상임	위원장	13.03.28~16.03.26	BNK금융지주 회장(現) 부산은행 은행장(現)
김성호	사외	위원	14.03.28~16.03.26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現) 법무부 장관
김창수	사외	위원	15.03.27~16.03.26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교수(現) 부산국제금융개발센터 센터장(現)
문재우	사외	위원	15.03.27~16.03.26	법무법인 율촌 고문(現) 손해보험협회 회장
이봉철	비상임	위원	14.03.28~16.03.26	롯데쇼핑 부사장(現)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다.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5년도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4회 개최되어 총 4건의 부의안건을 가결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은 총 5명(회장, 부사장, 사외이사 2명, 비상임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2월 4일 개최된 제1차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부산은행과 BNK캐피탈의 대표이사 후보로 각각 부산은행 현 은행장 성세환과 BNK캐피탈 현 대표이사 이상춘을 후보로 추천하였으며 2015년 3월 자회사별 주주총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2015년 2년 27일 개최된 제2차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당사 상임이사인 정민주 부사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연임을 추천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으며, 당사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되었습니다.

2015년 5월 13일 개최된 제3차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후보로 現 대표이사 안동원을 연임 추천하고, BNK투자증권 이사회를 거쳐 2015년 6월 BNK투자증권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2015년 8월 4일 개최된 제4차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BNK자산운용 대표이사 후보로 손석근 후보자를 추천하고, BNK자산운용 이사회를 거쳐 2015년 8월 BNK자산운용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5년도 제1차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5. 2. 4(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이봉철	김성호	김창수	문재우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¹⁾ 에 대한 의견	-	-	-	-	-	
4. 의결안전 ²⁾						
가.부산은행 은행장 후보 추천 나.BNK캐피탈 대표이사 후보추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여

1)보고안전 없음

2)現 부산은행 은행장 후보추천(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마련), BNK캐피탈 現 대표이사 재선임 추천,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는 의결권 행사 불가

(나) 제2015년도 제2차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5. 2. 27(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이봉철	김성호	김창수	문재우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¹⁾ 에 대한 의견	-	-	-	-	-	
4. 의결안전 ²⁾						
가. 지주 상임이사 후보 추천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여

1) 보고안전 없음

2) 지주 상임이사 후보추천

(다) 제2015년도 제3차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5. 5. 13(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성호	김창수	이봉철	정민주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¹⁾ 에 대한 의견	-	-	-	-	-	
4. 의결안전 ²⁾						
가. BNK투자증권 대표 이사 후보추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여

1) 보고안전없음

2)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후보추천

(라) 제2015년도 제4차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5. 8. 4(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성호	김창수	이봉철	정민주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출장)	참석	
3. 보고안전 ¹⁾ 에 대한 의견	-	-	-	-	-	
4. 의결안전 ²⁾						
가. BNK자산운용 대표 이사 후보추천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여

1) 보고안전없음

2) BNK자산운용 대표이사 후보추천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과 내부통제시스템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및 평가를 통하여 BNK금융그룹의 건전경영 및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는 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수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제, 법률,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감독

① 이사회등 안전에 대한 감독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안전에 대한 감독업무를 감사위원장에게 위임하여 감사위원장의 사전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전 일체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쳤으며, 심의결과 “적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 업무보고 및 회사 내 모든 정

보에 대한 제공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 2. 27 개최한 2차 감사위원회에서 제4기 결산재무제표 관련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안건 부의시 담당 부서장의 참석을 요구하였고, 이에 재무기획부장이 동 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2015. 12. 17 제5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인 2015년 회계감사 계획보고를 실시하고 2016. 3. 3. 제2차 감사위원회에서는 외부감사인인 결산감사 결과를 보고토록 요청하여 2015년(제5기) 결산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설명하였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14. 3. 28 지주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제안요청서 검토부터 각 제안사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해 일상감사 등을 통해 경영진과 협의하였으며, 그간의 외부감사업무 실적 및 수행능력, 향후 원활한 업무수행 가능 여부, 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임감사위원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실질적인 감사기능이 작동하도록 다음의 감사업무를 감사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감사보조기구(검사부)를 통하여 감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업무의 적시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내부통제업무가 적정하게 실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 업무로는 ①금융회사가 정하는 감사위원회규정 등에 따른 일상감사 사항 ②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③검사 실시 등 내부감사부서 업무통할 ④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사항 및 주요업무 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2015년 제4차 감사위원회에서 ①지배구조 모범기준 관련 금감원 부문검사 결과 보고 ②한일월드 관련 캐피탈 특별검사 결과를 보고하고, 제5차 감사위원회에서 2015년 검사결과 및 조치현황을, 2016년 제1차 감사위원회에서는 2016년 준법감시업무 추진계획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라)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로부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의 결산서류를 보고 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위원장은 주주총회에 감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류 및 영업보고서가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계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산서류와 외부감사인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세밀하게 점검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주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감사위원장은 2015년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제5기 정기주주총회에 보고 할 예정입니다.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2016년도 1차 감사위원회(2016.2.3 개최)에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 2등급으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준법감시인으로부터 2015년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활동 점검결과 및 준법감시 활동결과도 함께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2015년도 5차 감사위원회에서 2016년 감사업무 계획수립 사항을 심의한 결과 감사방향을 “리스크 중심의 선제적 감사업무 수행을 통한 그룹의 지속성장 지원” 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2015년 하반기 캐피탈의 한일월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법감시인 및 감사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문제 발생시에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 내부통제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1) 총괄

감사위원회 위원은 관련 법률에 의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 중 김우석 사외이사, 문재우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 구성 및 자격요건>

※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 2항

1.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9조의2(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기준)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구성원 (2015. 12월말 현재)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현직위	선임일 및 임기만료일	약력
문재우	사외	위원장	14.03.28~16.03.26	법무법인 율촌 고문(現)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성호	사외	위원	11.03.15~16.03.26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現) 법무부 장관
김우석	사외	위원	11.03.15~16.03.26	예일회계법인 회장(現)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김창수	사외	위원	14.03.28~16.03.26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교수(現) 부산국제금융개발센터 센터장(現)

(3)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권한과 책임

당사는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동 위원회 규정 제 6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관련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검증을 실시하고 감사위원회 구성,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감사위원회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추천절차 개요

감사위원회위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과 감사위원회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공정하게 검증한 후 감사위원회위원 후보로 추천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다) 추천위원회 구성 (2015. 12월말 현재)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의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성 명	상임/사외/ 비상임	現 직위	선임일 및 임기만료일	약 력
김성호	사외	위원장	11.03.15~16.03.26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現) 법무부 장관
김우석	사외	위원	11.03.15~16.03.26	예일회계법인 회장(現)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김창수	사외	위원	14.03.28~16.03.26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교수(現) 부산국제금융개발센터 센터장(現)
문재우	사외	위원	14.03.28~16.03.26	법무법인 율촌 고문(現) 손해보험협회 회장
박홍대	사외	위원	15.03.27~16.03.26	법무법인 유석 대표변호사(現) 부산고등법원장

(라) 활동내역

당사는 기존 감사위원 2명이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감사위원회위원 후보로 재선임하기 위해 2015년 2월 제1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위원 5명 전원이 참석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으며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 후보추천

당사는 2015년 2월 개최된 제1차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후보로 김성호 사외이사와 김우석 사외이사를 추천하였습니다.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5년도 감사위원회는 총 5회가 소집되었으며 위원의 평균 참석율은 100%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16년 3월 소집된 2차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관련하여 담당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감사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 설명토록 하였고 2015년 5차 및 2016년 2차 감사위원회에는 외부감사인을 참석토록 하여 감사계획 및 제5기 결산 감사 결과를 설명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 2015년도 제1차 감사위원회 : 2015. 2. 4(09:50 ~ 10:2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김우석	김성호	문재우	김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감사보조기구의 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평가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준법감시인으로부터 보고사항 검토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신임 감사부장은 감사업무 전반에 대해 두루 경험하고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한 직원으로 향후 감사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시기에 적임자로 임면동의를 요청함.

2)내부통제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2014.11.17 ~ 11.21. 기간중 총 8개부문 74개 평가 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표에 의거 산정한 결과 종합평가등급은 2등급으로 지주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이 적정하고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3)준법감시활동 결과 보고로 내부통제 컨트롤 기능 강화를 위해 그룹내부통제협의회를 마련·운영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와 실태를 종합점검하고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내부통제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였음.

☞ 내부통제 활동 결과 (지주 및 자회사) : 위반사항 없음.

(나) 제2015년도 제2차 감사위원회 : 2015. 2. 27(09:30 ~ 10:0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 고
1. 위원 성명	김우석	김성호	문재우	김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의견없음					
4. 의결안건						
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적정성 평가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³⁾	찬성	찬성	참석	찬성	가결	
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⁴⁾	찬성	찬성	참석	찬성	가결	
마.감사위원장 선임 ⁵⁾	찬성	찬성	참석	찬성	가결	

- 1)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의거 시스템으로 관리·운영되고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여 세부업무를 수행하는 등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음.
- 2)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서 및 외부감사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감사계획수립, 감사방법 및 감사결과 보고 등 외부감사인인 감사수행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 안전회계법인인 기말감사 등 회계감사 와 감사계획결과 보고 등 7회 실시
- 3) 결산서류 및 영업보고서가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계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되었음.
- 4)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의 적법성 여부를 위해 제4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5개 의안과 기타보고(최대주주 등과의 거래현황)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
- 5) 회의결과 회계전문가인 문재우위원을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

(다) 제2015년도 제3차 감사위원회 : 2015. 4. 1(09:00 ~ 09:1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 고
1. 위원 성명	문재우	김성호	김우석	김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없음				
4. 의결안전					
가.임시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임시주총 안건으로 “경남은행 비지배주주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의 건”이 제출되어 적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

(라) 제2015년도 제4차 감사위원회 : 2015. 11. 6(09:30 ~ 10:0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 고
1. 위원 성명	문재우	김성호	김우석	김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지배구조 모범규준 관련 금감원	의견없음				

	부문 검사 결과 보고 ¹⁾					
	나.한일월드 관련 캐피탈 특별검사 결과 보고	의견없음				
4. 의결안건		해당사항없음				
	가.감사업무규정 개정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2015.7.6 ~ 7.10 기간 실시한 금감원 부문검사 결과 보고(경영유의사항 3건)

2) 검사원의 자격, 인사 및 대우, 신분보장 내용을 규정에 명문화 하였음.

(마) 제2015년도 제5차 감사위원회 : 2015. 12. 17(10:30 ~ 10:5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 고
1. 위원 성명	문재우	김성호	김우석	김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외부감사인의 2015년 회계감사 계획보고	의견없음				
4. 의결안건					
가.2016년도 감사업무 계획 수립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2016년 감사업무 기본 방향을 “리스크 중심의 선제적 감사업무 수행을 통한 그룹의 지속성장 지원”으로 정하고 테마검사 실시 등을 통하여 취약부문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를 강화할 예정임.

라. 감사보조조직 등

당사는 감사업무의 실질적인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 산하 감사보조기구로 독립조직인 감사부를 두고 있으며, 감사인원은 2016년 1월 말 기준 총 4명(부장 1, 감사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감사부에서 수행한 주요 감사실적은 아래와 같으며 지주사와 자회사의 경영 및 내부통제업무 등 전반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금융사고 사전예방 및 건전경영 제고를 위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업무 수행실적>

일 자	대 상	검사 내용
2015.11.23~11.27	全 본부부서	▪ 업무 검사 (지주업무 전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병행)
2015.04.20~04.24	BNK캐피탈	▪ 업무 검사 (경영전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부문 등)
2015.05.18~05.22	BNK저축은행	▪ 업무 검사 (경영전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부문 등)
2015.06.22~06.26	BNK신용정보	▪ 업무 검사 (경영전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부문 등)
2015.07.20~07.24	BNK시스템	▪ 업무 검사 (경영전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부문 등)
2015.10.26~10.30	BNK투자증권	▪ 업무 검사 (경영전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부문 등)
2015.02.09~02.11	(지주)재무기획부	▪ 부문 검사 (결산 재무제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2015.03.13외 2일	경남은행	▪ 부문 검사 (내부통제업무 전반)
2015.07.29~07.30	BNK자산운용	▪ 부문 검사 (자회사 편입 관련 주요자산 및 현물 점검, 내부통제 업무 운영 현황)
2015.09.07~09.09	경남은행	▪ 부문 검사 (내부통제업무 전반)
2015.09.21~10.08	BNK캐피탈	▪ 부문 검사 (레탈사업(한일월드) 관련 취급의 적정성 등)
연 중	全 본부부서	▪ 일상 감사 (경영진의 일상업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연 중	全 본부부서	▪ 대외보고서 (금감원 업무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연 중	자회사	▪ 감사 결과 (자회사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연 중	자회사	▪ 경영관리규정에 의한 보고사항 검토
연 중	지주회사 및 자회사	▪ 대외 감독기관 수검 및 자회사 감사결과 보고

감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제경비 일체를 당사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회사 및 그룹자산이 날로 증가하고 업무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보상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보상체계가 위험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보상체계는 회사의 성과와 연동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현재 및 미래의 잠재 위험을 고려한 변동보상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 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 라 한다)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회사의 상기 보상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상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경영발전보상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당사 「이사회규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2011년 3월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2015년 11월 6일 개정을 통하여 지주사의 자회사 관리강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상위원회는 사외이사 5명과 비상임이사 1명,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회 구성에 상임이사를 제외하여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경영발전보상위원회규정」 제12조에 의거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의사록을 작성,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심의사항

동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 (가) 그룹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규정에 관한 사항
- (나) 회사의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 (다) 회사의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
- (라) 임원보수규정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바)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 (사) 자회사 CEO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및 보상 결과

(3) 구체적 역할

- (가)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설계 ·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심의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2015년 2월 27일 개최된 제1차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경영진 평가 및 보상체계안의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을 심의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도 장·단기 성과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자회사인 경남은행 편입이 2014.10.10로 지연됨에 따라 그룹 경영계획 수정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보상위에서는 경남은행 실적 전체를 제외하여 경영진 성과평가가 반영되도록 논의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염가매수차익 등 경남은행 인수 과정의 일련의 행위를 제거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정량지표를 산출하여 경영진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17일 개최된 제3차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그룹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그룹 전반의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의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나) 금융회사의 보상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2015년 2월 27일 개최된 제1차 경영발전보상위원회와 2015년 12월 17일 개최된 제3차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점검 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경영진과 특정직원에 보상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규모 및 자본의 규모 등에 맞게 설정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보상 체계에 리스크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여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변동보상비율, 이연지급기간, 변동보상의 지급형태 및 방식, 현금보상 지급 등 모범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미준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금융회사의 보상체계가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상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2015년 2월 27일 개최된 제1차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연차보상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보상정책 및 운영이 모범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상 평가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라) 경영진, 특정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변동보상 대상자를 성과평가기준에 반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변동보상 대상자에 경영진만 포함되며, 「경영발전 보상위원회규정」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외환딜링 등 특정업무 종사자는 당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말 기준 적용대상자는 회장, 부사장 3명, 상무 1명, 상무보 2명 총 7명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5년 12월말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경영진 등	7	회장, 부사장, 상무, 상무보
특정직원	—	

※당해 연도말 기준으로 겸직하는 임원은 부산은행의 성과보상체계가 적용되나 당사에서 업무수행비율에 따른 일부 기본급 지급되어 인원수에 포함.

(마) 보상위원회 보상정책의 적용 범위

- 국내 : 지주회사, 자회사 경영진에 적용
- 해외 : 해당사항 없음

나. 구성(보상위원회위원)

(1) 총괄

당사는 「경영발전보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거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사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사외이사가 총 위원 3인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 1인 이상을 위원회에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에 리스크 관리측면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총 6인으로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상위원회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이사는 예일회계법인 회장으로 재정부 국고국 국장, 세무대학 학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역임한 재무 관련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이며, 문

재우 이사 역시 금융감독원 감사, 손해보험협회 회장을 역임한 금융 및 재무관련 전문가이고, 김성호, 김우석, 김창수, 박홍대 이사는 현재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로 보상체계에 회사의 리스크 관리측면이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말 기준)

성명	직명	사외이사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중대한 경험 유무	약력
김창수	위원장	여(여)	무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교수(現) 부산국제금융개발센터장(現)
김성호	위원	여(여)	무	(재) 행복세상 이사장(現) 법무부장관
김우석	위원	여(여)	유	예일회계법인 회장(現)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봉철	위원	여(부)	유	롯데쇼핑 정책본부 부사장(現)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문재우	위원	여(여)	유	법무법인 율촌 고문(現) 손해보험협회 회장
박홍대	위원	여(부)	무	법무법인 유석 대표변호사(現) 부산고등법원장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김창수	사외	위원장	2014.03.28	2016.03.26
김성호	사외	위원	2014.03.28	2016.03.26
김우석	사외	위원	2011.03.15	2016.03.26
이봉철	비상임	위원	2014.03.28	2016.03.26
문재우	사외	위원	2014.03.28	2016.03.26
박홍대	사외	위원	2015.03.27	2017.03.26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5년도에는 총 3회차의 경영발전보상위원회가 소집되어 부의안건 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회 개최 전 보상위원회 안전에 대해 이사들에게 사전자료 배포 및 설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사들의 요청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보상위원회 개최 전 반영함으로써 보상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사들의 의견 제시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5년도 제1차 경영발전보상위원회 : 2015년 2월 27일(금) (10:00 ~ 10:30)

[안전 통지일 : 2015년 2월 17일(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이종수	김우석	김성호	이봉철	문재우	김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 해당사항없음							
4. 결의안건 :							
가. 2014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및 보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장기성과 현금보상 성과평가 확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기준 개정(안)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가결
라. 장기성과 현금보상기준 개정(안)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가결
마. 2015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목표 부여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가결
바. 장기성과 현금보상 계약체결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가결

1) 2014년도 지주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심의 및 보상금액 확정

- 2) 성과평가대상 중도퇴임자에 대한 장기성과평가 심의 및 보상금액 확정
- 3) 평가대상자 확정 및 회장의 2015년도 경영방침 및 전략과제 반영
- 4) 장기성과 보상기준 일부 개정
- 5) 2015년도 단기성과 계약체결 및 신입 임원에 대한 장기성과 계약체결
- 6) 조건부찬성 : 상대적TSR 산정 시 비교대상 금융회사에 지주회사로만 반영하는
조건부찬성 결의

제1차 경영발전보상위원회는 전체위원 6명이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경영계약서’ 및 ‘성과목표계약서’에 의거 경영진(회장, 부사장, 상무)의 단기성과 평가 및 보상안을 심의하였으며, 퇴임 경영진에 대한 장기성과평가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성과평가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단기 성과 목표를 부여하고, 신입 임원에 대한 장기성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이사회 결의로 최종 확정토록 되어있습니다.

(나) 제2015년도 제2차 경영발전보상위원회 : 2015년 3월 27일(금) (11:30 ~ 11:40)
[안건 통지일 : 2015년 3월 19일(목)]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창수	김우석	김성호	이봉철	문재우	박홍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불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해당사항없음							
4. 결의안건 :							
가. 위원장 선임 ¹⁾	찬성	—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 1) 2015년도 경영발전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 : 사외이사 김창수
- 2) 불참사유 : 회사일정

제2차 경영발전보상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이후 이사회를 통해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였고, 경영발전보상위원회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2015년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김창수 사외이사를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다) 제2015년도 제3차 경영발전보상위원회 : 2015년 12월 17일(금) (10:50 ~ 11:10)
[안전 통지일 : 2015년 12월 10일(목)]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창수	김우석	김성호	이봉철	문재우	박홍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불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 해당사항없음							
4. 결의안건 :							
가. 그룹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 제정 (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그룹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원칙 마련

제3차 보상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총 1건의 안전을 심의 하였습니다. 안전은 2015년 7월 실시된 금융감독원 지배구조 관련 부문검사 결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상의 성과보상 원칙 등을 내규에 반영토록 요청함에 따라 위 기준을 반영하여, 그룹의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원칙을 마련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과보상의 기본원칙, 적용회사, 성과평가 프로세스, 변동보상의 원칙, 이연지급, 성과평가 지표 및 보상관련 공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라. 보상위원회 및 보상체계 관련 주요사항

(1) 보상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당사의 경영발전보상위원회는 『경영발전보상위원회규정』에 의거 하여 그 직무수행을 위해 경영진에 대한 정보 요구 및 각종 회의록, 장부, 기타자료의 열람 및 사본의 요청, 필요에 따라 관계이사 또는 직원들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각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당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충실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

에서 논의되어 회사의 보상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보상위원회의 보상정책 관련 의사결정 절차

보상위원회는 매년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현재 김창수 이사)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소집할 때는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통지토록 하고 있으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절차를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2015년도에는 통지절차를 단축 또는 생략한 경우 없음)

회의일 통지 후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보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위원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합니다. 2015년도 결의사항 중 별도 반대의견은 없었으며, 2015.2.27 개최된 제 1차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는 성과평가 기준 및 계약체결 시 상대적TSR 산정과 관련하여 비교대상 금융회사에 지주회사로만 반영하기로 하는 수정 결의를 실시하였습니다.

(3)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 『경영발전보상위원회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위원들에게 외부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15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4) 보상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당사는 2015.12.17 보상위원회 결의에 의거하여 금융지주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 기준등을 반영하여 그룹의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룹의 성과보상의 기본원칙 및 적용회사, 성과평가 프로세스, 변동보상의 원칙, 이연지급, 성과평가 지표 및 보상관련 공시내용이며, 상기 내규 제정으로 2016년도부터 모든 자회사의 경영진 성과평가기준 수립과 그에 따른 자회사 CEO의 성과평가 및 보상결과는 지주 보상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여 실질적인 자회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화 하였습니다.

(5)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부서의 인원현황

당사의 리스크관리 부서는 리스크관리부이며, 준법감시 부서는 준법감시부입니다. 2015년 12월말 기준 인원수는 각각 8명, 5명(변호사 3명 포함)입니다. 리스크관리부의 경우 해당 업무 평균근속 연수는 3년, 준법감시부의 경우 1.8년이나 최근 2014년도 전입한 직원을 제외하고 재직중인 3명의 평균 근속연수가 2.6년임을 감안 시 전문역량을 충분히 보유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6)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부서 성과보상체계의 독립성

리스크관리부는 그룹 통합 리스크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위험자본 배분 및 한도 관리와 리스크 관련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부서로 그 역할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준법감시부 역시 그룹 내부통제 업무와 법무업무 및 그룹 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부서로 해당 업무의 독립적인 역할을 감안하여 직무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사는 그룹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임직원의 보상체계의 위험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8) 일반직원의 보상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상제도

당사는 조직 성과와 개인의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창립 이후 매년 통상임금 100% 내외 수준으로 일반직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성과공유라는 취지를 위해 우리사주조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2015년중 직무와 성과중심의 보상문화를 위해 기존 단일호봉제에서 3급이상 연봉제, 4급이하 밴드형 호봉제로 급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한 직무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의 역할과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여 조직에 공헌과 임금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 보상체계의 주요 특성

(1)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

① 보상체계 설계시 고려해야 할 당사의 주요 리스크

당사의 성과측정은 매년도 그룹 경영계획에 의거 이사회에서 승인된 정량목표 중 에서 리스크가 반영된 수익성, 안전성, 건전성, 효율성 및 상대적 주주가치 등이 포함된 평가항목에 대한 목표달성도로 평가하는 정량지표와 전략적 과제 및 개인역량 평가지표로 구성된 정성지표로 단기성과를 측정하고, 장기성과는 수익성, 자본적정성, 건전성 및 상대적 주주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주요 리스크 측정지표

1. 그룹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Return On Equity)

-정의 :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로서 기업의 주주들이 자신의 투자액에 대하여 실현한 수익률을 측정하는 지표

-산식 : $[\text{그룹 당기순이익} / \text{그룹 자기자본(평잔)}] * 100$

2. 그룹 자기자본순이익률(ROA : Return On Asset)

-정의 : 총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로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하였나를 평가하는 지표

-산식 : $[\text{그룹 당기순이익} / \text{그룹 총자산(평잔)}] * 100$

3. 그룹 BIS자기자본비율(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결제은행)
 - 정의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로서 기업의 안정성 확보 및 자본
활용의 최적화를 측정하는 지표
 - 산식 : $[\text{그룹 BIS자기자본} / \text{그룹 위험가중자산}] * 100$
4. 그룹 BIS기본자본비율(Tier I 비율)
 - 정의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비율로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부담함에
있어 투입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자본인 자본금 및 이익잉여금 등
으로 구성된 기본자본으로 자본능력을 측정한 지표
 - 산식 : $[\text{그룹 BIS기본자본} / \text{그룹 위험가중자산}] * 100$
5. 그룹 고정이하여신비율
 - 정의 : 총여신에 대한 고정이하여신비율로 고정이하여신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산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는 지표
 - 산식 : $[\text{그룹 고정이하여신} / \text{그룹 총여신}] * 100$
6. 그룹 연체대출채권비율
 - 정의 : 총대출채권에 대한 1개월 이상 연체대출채권비율로 계열사의 보유
자산 중 가장 중요한 대출채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향후 자산건전성의 악화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 산식 : $[\text{그룹 1개월 이상 연체대출채권} / \text{그룹 총대출채권}] * 100$
7. 그룹 CIR (Cost Income Ratio)
 - 정의 : 조정영업이익에 대한 판매관리비율로 원가절감을 통한 영업경비 절감
하여 재무적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주주가치 향상에 공헌하는 지표
 - 산식 : $[\text{그룹 판매관리비} / \text{그룹 조정영업이익}] * 100$
8. 지주 이중레버리지비율
 - 정의 : 지주회사 자기자본에 대한 자회사 출자비율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원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

-산식 : [자회사에 대한 출자 총액 / (지주)자기자본] * 100

9. 지주 부채비율

-정의 : 지주회사 자기자본에 대한 지주회사 부채비율로 이중레버리지비율과 더불어 자회사 지원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

-산식 : [(지주)부채총계 / (지주)자기자본] * 100

③ 동 측정지표에 의한 주요 리스크별 측정결과 (2015년도)

- ROE 9.02%, ROA 0.60%, 그룹BIS자기자본비율 11.69%,
- 그룹BIS기본자본비율 8.13%, 그룹 고정이하여신비율 1.30%,
- 그룹 연체대출채권비율 0.69%, 그룹 CIR 50.25%,
- 지주 이중레버리지비율 125.58%, 지주 부채비율 28.35%

※동 지표는 2015년도 성과평가에 반영한 지표임.

④ 동 측정결과의 최근 3개년 증감추이, 증감추이에 대한 설명, 증감추이가 보상에 미치는 영향

<주요리스크지표 최근 3개년 증감추이>

(단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실적	염가매수차익 제외 시	
ROA	0.67	1.47	0.67	0.60
ROE	9.01	20.50	9.40	9.02
Cost-Income-Ratio	47.21	38.11	49.26	50.25
BIS자기자본비율	13.85	11.91	11.91	11.69
보통주자본비율	9.46	7.69	7.69	7.28
고정이하여신비율	1.30	1.42	1.42	1.30
연체대출채권비율	0.77	0.83	0.83	0.69
이중레버리지비율	115.21	125.62	125.62	125.58
지주부채비율	28.13	27.84	27.84	28.35

- ROA : 2014년 대비 0.07%p 하락하였으나, 2015년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예대마진 축소, 메르스사태로 인한 경기부진, 하반기 중 미국 금리 인상 등 녹록치 않은 대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계획 대비 당기순이익 초과 달성하여 ROA 0.60% 실현
- ROE : 2013년 및 2014년에 비해 다소 낮은 9.02%를 실현하였으나, 동종 업계 최고 수준 유지
- 자본적정성 비율(BIS비율, 보통주자본비율) : 2013년 바젤Ⅲ기준의 시행으로 기발행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인정액이 점차 축소되고, 2014년 경남은행 인수, 2015년 경남은행 잔여지분 인수 등으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016년 1월 유상증자(4,725억원) 자금으로 계열사(부산은행/경남은행) 증자 시 자본적정성 비율 상당부분 개선되어 강화된 자본규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부채비율 : 3년 연속 30%이내를 유지하여 감독원경영실태평가 기준 1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중레버리지 비율 : 자회사 출자 등으로 인해 2013년에 비해 2014년 및 2015년 이중레버리지 비율 다소 상승하였으나, 감독원경영실태평가 기준 2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⑤ 동 측정결과와 보상의 연계방법

주요 리스크 지표 중 ROE, BIS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CIR, 상대적 TSR은 전 경영진의 공통지표로 직접 반영되고 있으며, 담당본부의 업무에 따라 이중레버리지비율, 지주 부채비율, ROA, BIS기본자본비율, 연체대출채권비율을 성과지표에 추가 적용하여 평가함으로써 보상체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⑥ 동 측정지표와 회사 전체 리스크관리 체계의 연계방법

당사의 성과보상체계에 반영된 BIS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채권비율, 이중레버리지비율, 부채비율 등의 지표는 당사 리스크관리의 핵심지표입니다.

ROA, ROE, CIR 지표는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BIS자기자본비율, BIS기본자본비율 지표는 회사 자본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채권비율 지표는 자산의 건전성을 대표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중레버리지비율과 부채비율을 통하여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경우, 이상의 리스크관리의 핵심 지표들이 성과평가에 반영되고, 성과평가의 결과가 보상체계에 반영되며, 또한 사후적으로 과도한 리스크 부담행위로 인한 개인적 업무 손실이 발생하거나, 환수 평가지표에 의한 환수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성과급을 차감할 수 있도록 환수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①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재무지표로는 수익성 지표(당기순이익, ROA, ROE, CIR 등), 건전성 지표(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채권비율 등), 자본적정성 지표(BIS 자기자본비율, BIS 기본자본비율 등), 안정성 지표(이중레버리지비율, 부채비율 등), 주주수익률(상대적 TSR)을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비재무 지표로는 ‘그룹경영전략 과제’ 이행, ‘경영진 개인역량 평가’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및 개인 보상의 연계방법

경영진의 경우 전사 재무성과(ROE, BIS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CIR 지표 등)를 공통으로 반영하고, 개인 성과측정 지표로는 본인 업무와 관련된 이중레버리지비율, 부채비율, ROA, BIS기본자본비율, 연체대출채권비율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비계량 부문의 그룹경영전략과제 및 개인역량 평가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개인 성과보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③ 성과미달시 보상을 조정하는 방법

경영진의 경우 개인 성과 달성률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의 차등을 두고 있으며, 단기 성과보상의 경우 성과 달성률에 따라 회장은 -50% ~ 150%, 부사장은 -50% ~ 110% 범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 업무 손실 발생이나, 경영실적이 악화되었을 경우 환수율에 따라 환수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보상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리스크와 연계된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을 반영하여 이연지급 기간 동안 환수될 수 있도록 성과와 보상이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3) 이연 및 지급확정 기준

① 변동보상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당사는 경영진에 대해 변동보상의 상당부분을 수년간 이연지급하고 있으며 변동보상 비율은 직위, 책임의 정도 등과 연동하여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성과는 회장의 경우 현금보상 40%와 주가연계보상 60%로 지급하며, 그 외 경영진의 경우는 현금보상 60%와 주가연계보상 40%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현금보상은 평가년도에 성과평가 확정 후 1개월이내 지급하고, 주가연계보상은 3년간 균등 배분하여 매 년 주가와 연계한 현금보상으로 지급하며 지급시마다 환수평가결과에 따른 환수금액을 차감후 지급합니다.

장기성과는 현금보상 40~60%, 주가연계보상 60~40%로 계약 체결하고, 계약기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의 성과달성률에 따라 현금보상은 성과평가 확정 후 1개월이내 지급하고 주가연계보상은 3년간 주가와 연계하여 지급하되 환수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금액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② 장기성과를 반영하기 위한 이연된 보상액 또는 지급된 보상액에 대한 조정정책

변동보상액 중 이연된 보상액은 3년간 균등 배분하여 이연지급 하며, 이연지급 시에도 경영성과가 반영된 주가와 연계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비윤리적 행위, 법률 위반, 업무 손실 발생 등의 경우, 변동보상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③ 이연보상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변동보상액 결정시 이연지급을 위한 주식수가 확정되며, 이를 3년간 이연지급 합니다. 다만, 그 지급액은 이연지급 시점의 주가와 연동되어 결정되므로 지급시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① 전체 보상액 중 고정보상액과 변동보상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상액 중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을 고정보상액으로 분류하며, 경영진의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급은 변동보상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② 변동보상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변동보상의 지급형태는 현금보상과 주가연계현금보상으로 구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③ 변동보상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상이 장기성과와 연동하기 위하여 변동보상액의 40~60%를 주가연계상품으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④ 변동보상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경영진의 경우 변동보상액 중 40~60%는 성과평가 확정 후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 60~40%는 주가연계상품으로 3년간 균등 배분하여 이연지급 합니다.

바. 경영진 및 특정직원 보상에 관한 세부정보

(1)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주1)}	고정 보상액 ^{주2)}	변동 보상액 ^{주2)}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14년)	경영진	5	5.3	4.5	2.3
	특정직원	—	—	—	—
당해년도 (2015년)	경영진	7		5.0	2.3
	특정직원	—	—	—	—

주1) 해당년도중 6개월이상 경영진·특정직원으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주2)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고정보상’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변동보상’으로 분류

(2) 변동보상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변동 보상액	현금	주식 ^{주1)}	주식연계 상품 ^{주2)}	기타 ^{주3)}
전년도 (2014년)	경영진	4.5	2.5	—	2.0	—
	특정직원	—	—	—	—	—
당해년도 (2015년)	경영진	5.0	2.7	—	2.3	—
	특정직원	—	—	—	—	—

주1) 주식 :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 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아 산정한 금액등)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상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주2) 주식연계상품 : 상기 주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한다. (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주3) 기타 :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한다.

(3)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 보상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14년)	경영진	7.8		7.8
	특정직원	—	—	—
당해년도 (2015년)	경영진	4.1		4.1
	특정직원	—	—	—

주1) 이연보상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상액을 기재한다.

주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상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 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 으로 구분 기재

(4)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 보상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2014년)	경영진	7.8	2.3	2.2	3.3	0	0
	특정직원	—	—	—	—	—	—
당해년도 (2015년)	경영진	4.1	2.3	1.2	0.6	0	0
	특정직원	—	—	—	—	—	—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15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상액을 2015년(t기) 발생분, 2014년(t-1기) 발생분, 2013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5) 이연보상의 성과조정(해당년도 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상액 축소액 ^{주1)}	주가변동 반영 ^{주2)}	성과평가 등 반영 ^{주3)}	기타 환수 금액
전년도	경영진		해당사항없음		

(2014년)	특정직원	—	—	—	—
당해년도 (2015년)	경영진 특정직원	—	해당사항없음 —	—	—

주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중에서 추가변동, 재무성과 등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상을 축소하였으나, 추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상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한다.

주2) 이연보상이 추가와 연동된 경우 추가하락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3) 이연보상이 재무성과 등을 반영하여 축소된 부분을 기재

(6) 기존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보장성 상여금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4년)	경영진		해당사항없음	
	특정직원	—	—	—
당해년도 (2015년)	경영진		해당사항없음	
	특정직원	—	—	—

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성의 보장상여는 보장성 상여금에서 제외 (이하 동일)

주) 기존 고용자 : 당해 회계연도 이전부터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해당된 자를 기재

(7) 신규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보장성 상여금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4년)	경영진		해당사항없음	
	특정직원	—	—	—
당해년도 (2015년)	경영진		해당사항없음	
	특정직원	—	—	—

주) 신규 고용자 : 당해 회계연도중에 채용, 승진, 전보 등의 사유로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해당된 자를 기재

(8)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상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보장성 상여금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4년)	경영진	3	0.4	0.3
	특정직원	—	—	—
당해년도 (2015년)	경영진	1	0.15	0.15
	특정직원	—	—	—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상액에서 제외

(9)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A) ^{주3)}	법인세차감전 순이익(B) ^{주4)}	비율 (A/B)	임직원수(C)	임직원 평균보수 (A/C)
전년도 (2014년)	74	9,191	0.008	94 ^{주1)}	0.78
당해년도 (2015년)	81	7,001	0.115	112 ^{주2)}	0.72

주1) 계열사와 겸직 16명 포함

주2) 계열사와 겸직 36명 포함, 기중 퇴직인원 포함

주3)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 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주4)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기의 금액을 기재한다.

[예시 : 당해연도가 2015년인 경우 2014년 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재]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 및 자회사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정책을 승인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리스크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선호도 및 리스크관리한도를 설정하여 그 준수여부를 감시·감독하는 등 그룹 전반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경영진의 과도한 리스크부담을 견제하고 균형있는 경영의사결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상임이사 1명 외에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외이사 4명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부서는 사외이사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정기적인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5년도 사외이사에 대한 리스크관리 교육실시 현황

1. 지주회사,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도입('15.5.13)
2. 그룹 리스크 측정기준 표준화 현황('15.8.4)
3. '16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바젤규제 및 대응방안('15.11.6)
4. '15년도 대내외 경제전망에 따른 그룹 및 계열사의 리스크관리 정책방향('15.12.17)

리스크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내부규정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이사회규정」 제12조 ①항 6호에 의거 2011년 3월 15일부터 운영하여 왔으며, 부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철학과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연말기준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시 연중 수행한 중점추진과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2016년도 리스크관리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1. 그룹 리스크관리 철학(리스크관리규정 제4조)

☞ 위험과 수익간의 균형유지를 통한 그룹의 지속성장 지원

2.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목표

☞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통한 그룹 자산건전성 제고

3. 중점추진과제

-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리스크관리
- 비은행계열사, 부실예방 및 여신 사후관리 강화
- 그룹 내부등급법 도입을 통한 리스크관리체제 선진화
- 바젤규제의 단계적 국내도입에 대한 그룹차원의 사전대응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가용장부자본 중 최대손실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소요자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리스크선호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및 계열사의 연간 업무계획 및 금융환경 악화 전망 등을 반영하여 2016년도 리스크선호도를 85.3%로 설정하고, 매분기별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를 통해 내부자본비율(총리스크량 ÷ 가용장부자본)이 리스크선호도 이내에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각종 투자 등의 수익창출활동에서 수반되는 손실발생가능성을 리스크량으로 계량화하여 그룹 및 계열사에 대한 리스크허용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허용한도는 그룹 리스크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은행계열사 및 비은행계열사별로 리스크유형별 한도산출방법을 정하고, 신용/시장/금리/운영리스크 및 자본버퍼(위기상황추가자본, 신용편중 및 전략/평판리스크)에 대한 내부자본 사용계획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 및 자회사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을 정하고 그룹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리스크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규정에서 정하는 리스크관리원칙 및 리스크관리방안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그룹 리스크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 정의한 각종 리스크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그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리스크관리지침」으로 명문화하여 그룹 리스크관리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마) 기타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결의사항과 관련된 세부사항 또는 절차 등에 대해서 그룹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을 통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자회사등의 각종 리스크의 관리현황 및 리스크 허용한도의 관리현황
2. 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한 결의사항
3. 자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사항
4. 경영관리협의회에 제출한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2015.2.4 신설)
5.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1) 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4명의 사외이사와 리스크관리본부 및 업무지원본부를 통할하는 상임이사인 부사장 1명을 선임하였습니다. 전체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80%이며, 경제전문가,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적절하게 구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 3월 27일자 주주총회에서 기존 위원이었던 이종수 및 문재우 사외이사는 사임 및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신규위원으로 김창수 및 박홍대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위원장으로는 기존 김성호 사외이사에서 2015년 3월부터 김우석 사외이사가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2015. 12월말 기준)

2015년 중 재임하였던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김우석	사외	위원장	2011.03.15	2016.03.26
김성호	사외	위원	2013.03.28	2016.03.26
김창수	사외	위원	2015.03.27	2016.03.26
박홍대	사외	위원	2015.03.27	2016.03.26
정민주	상임	위원	2014.03.28	2016.03.26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5년중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총 7회 개최되었습니다. 동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12건이었으며 결의안건은 5건, 심의·보고안건은 7건입니다.

5건의 결의안건은 모두 가결처리 되었으며, 매분기별 그룹 리스크한도관리

현황, 자본적정성 현황, 자산건전성 현황, 자회사 리스크관리회의체 결의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5년도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 2. 4(10:20 ~ 10:5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성호	김우석	이중수	문재우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14년말 그룹 목표 BIS비율 관리현황 보고	'14년말 BIS비율 11.91%로 목표 BIS비율 (11.64%) 이상 관리되었으며, '15년도에도 적정수준 이상으로 관리토록 당부함					
나.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주1)}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 응답					
4.의결안건						
가.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 개정(안) ^{주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주) 1. 2014.12월말기준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한도관리 현황,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현황, 2014년도 리스크관리 중점추진과제 이행현황 점검 등
 2.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에 따라, 리스크관리협의회 협의 및 심의사항으로 경영관리협의회가 요청하는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

(나) 2015년도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 3. 27(11:20 ~ 11: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우석	김성호	김창수	박홍대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불참	불참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주)}	-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 호선으로 김우석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

(다) 2015년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 4. 1(09:10 ~ 09: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우석	김성호	김창수	박홍대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안건						
가.경남은행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리스크 점검 ^{주)}	경남은행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시 BIS비율 등을 포함한 각종 재무지표 영향분석 결과에 대한 심의함					

주) 포괄적 주식교환시 이중레버리지비율 및 부채비율 개선되고, BIS비율 하락 예상되나, 규제비율이상 관리가능

(라) 2015년도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 5. 13(10:30 ~10:5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우석	김성호	김창수	박홍대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주1)}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 응답					
4.의결안건						
가.신중자본증권 발행관련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안 ^{주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주)1. 2015.3월말기준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한도관리 현황,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현황, 자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등 보고
 2. 신중자본증권 2,000억원 발행관련 제 지표 영향 및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마) 2015년도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 8. 4(09:40 ~10:0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우석	김성호	김창수	박홍대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주1)}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 응답					
4.의결안건						
가.신종자본증권 발행관련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안 ^{주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주)1. 2015.6월말기준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한도관리 현황,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현황, 자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등 보고
 2. 신종자본증권 1,500억원 발행관련 제 지표 영향 및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바) 2015년도 제6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 11. 6(10:00 ~ 10: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우석	김성호	김창수	박홍대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주3)}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 응답					

- 주) 2015.9월말기준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한도관리 현황,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현황, 자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등 보고

(사) 2015년도 제7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 12. 17(10:10 ~ 10: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우석	김성호	김창수	박홍대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그룹 내부등급법 도입 추진 보고 ^{주1)}	그룹 내부등급법 도입관련 사업계획(구축범위,추진일정 등)을 보고받고,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함					
4.의결안건						
가.2016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및 계획(안) ^{주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주)1. 2016년 2월부터 그룹 내부등급법 도입 TFT를 구성하여 추진

2. '16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및 (중장기)중점추진과제 수립, 그룹 리스크 선호도 설정, 그룹 총리스크허용한도 및 유형별 리스크한도 설정, 계열사별 총리스크허용한도 배분

가. 역할(권한과 책임)

당사 이사회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고,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및 논의,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및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 모색 및 이사회와 경영진간의 상호 견제 하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2014년 12월 발표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당사는 지배구조의 원칙과 정책을 수립하고,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점검 및 평가 등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결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향후 정관에 이를 반영하여 이사회 권한강화 및 이사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나. 구성(이사회운영위원회위원)

(1) 총괄

당사의 이사회운영위원회는 그룹 지배구조 및 이사회 정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사회 및 각 위원회 위원장(이사회위원장, 감사위원회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장, 경영발전보상위원회위원장) 4인으로 구성하며, 다만 위원장의 겸직으로 위원의 수가 4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수만큼 다른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김우석	사외	위원장	2011.3.15	2016.3.26
성세환	상임	위원	2013.3.28	2016.3.26
김창수	사외	위원	2015.3.27	2016.3.26
문재우	사외	위원	2015.3.27	2016.3.26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5년에는 2회의 이사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위원들의 참석률은 87.5% 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이사회 운영 방안 및 사외이사 활동계획, 교육 및 연수, 평가계획,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프로그램기준 제정 등을 심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5년 제1차 이사회운영위원회 : 2015.3.27(12:00~12:2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김우석	성세환	김창수	문재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불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해당사항없음					
4. 의결안건 :					
가. 위원장 선임 ¹⁾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 (안) ²⁾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위원장 선임 : 사외이사 김우석

2)이사회 8회, 이사회운영위원회 2회, 리스크관리위원회 4회, 경영발전보상

위원회 2회, 감사위원회 4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필요시

(나) 2015년 제2차 이사회운영위원회 : 2015.11.6(11:00~11: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김우석	성세환	김창수	문재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프로그램 기준제정(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반영

가. 역할

당사는 2014년 12월 시행된 지배구조 모범규준(§ 69)에 따라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그룹경영관리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 동 위원회를 2015.2.4부터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회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연간 경영계획 수립, 조직의 중요한 변경, 내규의 제·개정, 자회사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영사항 중 의장이 자회사 간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요 경영현안 등에 관하여 당사의 최고경영자(회장)의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협의절차(운영현황)

동 협의회는 의장인 당사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원칙적으로는 분기 1회 소집하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의의 일시와 장소는 의장이 지정하며, 간사(전략기획부장)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사전에 각 위원 및 참석자에 통지합니다.

동 협의회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구 성격의 협의체이므로 심의·의결 기능은 없으나,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위원간 심도 깊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 사항〉

1.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연간 경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해산·영업양도·분할·합병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전략적 공동투자, 핵심 전산시스템 변경 등 2개 이상의 자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영사항 중 의장이 자회사간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요 경영현안에 관한 사항(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사안 제외)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는 협의사항 중 위험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리스크관리협의회에 그 의견을 요청해야 하고,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합니다.

다. 구성

협의회의 위원은 당사 회장(의장) 및 8개 자회사 대표이사로, 총 8명(지주 회장, 부산은행장 겸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당사 및 자회사의 임원 중에서 위원 또는 참석자를 정할 수 있으며, 당사의 전략 기획부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BNK금융지주 그룹경영관리협의회 구성(당연직 위원)〉

성 명	직 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비 고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부산은행 은행장(겸직)	2012.3.22	2016.8월	의장
손교덕	경남은행 은행장	2014.1.28	2016.3월	위원
안동원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2013.6.13	2016.6월	위원
이상춘	BNK캐피탈 대표이사	2013.3.12	2016.3월	위원
정재영	BNK저축은행 대표이사	2014.1.13	2016.1월	위원

손석근	BNK자산운용 대표이사	2015.8.11	2017.8월	위원
배남석	BNK신용정보 대표이사	2014.3.27	2016.3월	위원
이영우	BNK시스템 대표이사	2014.12.31	2016.12월	위원

라.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15년도에는 그룹경영관리협의회가 5회 개최되었으며, 위원들의 참석률은 100% 였습니다. 동 협의회는 그룹 新 CI 개발 협의,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추진, 2016년도 경영계획 수립 등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요 경영현안 등에 관한 협의회가 이루어졌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5년 제1차 그룹경영관리협의회 : 2015. 2. 13(08:00~09:30)

항 목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성세환(의장), 손교덕, 안동원, 이상춘, 정재영, 배남석, 이영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전원참석	
3. 협의사항	-	
4. 보고사항	제1호 : 그룹 사명 및 CI 변경 추진 제2호 : 2015년(제4기) 행복한 금융 사업 추진	

(나) 2015년 제2차 그룹경영관리협의회 : 2015. 3. 17(15:00~16:00)

항 목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성세환(의장), 손교덕, 안동원, 이상춘, 정재영, 배남석, 이영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전원참석	
3. 협의사항	제1호 : 그룹 新 CI 개발 협의	
4. 보고사항	-	

(다) 2015년 제3차 그룹경영관리협의회 : 2015. 5. 8(08:00~09:30)

항 목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성세환(의장), 손교덕, 안동원, 이상춘, 정재영, 배남석, 이영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전원참석	
3. 협의사항	-	
4. 보고사항	제1호 : 경남은행 비지배주주 지분 인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호 : 그룹 통합전산센터 추진 현황	

(라) 2015년 제4차 그룹경영관리협의회 : 2015. 8. 11(07:50~09:30)

항 목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성세환(의장), 손교덕, 안동원, 이상춘, 정재영, 배남석, 이영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전원참석	
3. 협의사항	제1호 : 그룹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추진	
4. 보고사항	제1호 : BNK자산운용 자회사 편입 제2호 : 경남은행 손해배상 추진	

(마) 2015년 제5차 그룹경영관리협의회 : 2015. 11. 25 (16:30~18:00)

항 목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성세환(의장), 손교덕, 안동원, 이상춘, 정재영, 손석근, 배남석, 이영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전원참석	
3. 협의사항	제1호 : 지주 및 자회사 Vision 2020 중장기 경영계획 제2호 : 지주 및 자회사 2016년도 경영계획	
4. 보고사항	제1호 : DJSI(지속가능경영지수) 편입 결과 보고	

가. 역할

당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거 그룹 및 각 자회사의 리스크 정책 및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그룹의 제반 리스크관리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등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에 따른 결의사항 및 협의/심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결의사항(제5조)

- 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리스크관리지침의 제·개정
- 그룹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 제7조 3항에 관한 사항
(중복차주의 자산건전성 분류 차이 발생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 그룹 Total Exposure관리한도의 설정 및 초과운용 승인

◇ 협의 및 심의사항(제6조)

-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 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에 관한 사항
- 그룹 리스크측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한 한도관리에 관한 사항
- 그룹차원의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공동 협의가 필요한 사항
- 그룹사간 자금지원관련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 신규사업 진출, 그룹차원의 신상품 및 신서비스 개발 등으로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경영관리협의회가 요청한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2015.2.4 신설)
- 기타 의장이 정하는 사항

나. 협의절차(운영현황)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소집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장은 안전내용에 따라 필요시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의 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합니다. 간사인 지주회사 리스크관리부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시행결과 등을 의장 또는 협의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 구성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 담당임원(CRO) 및 리스크관리부장, 신용공여 취급 및 금융투자업 영위 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담당임원으로 구성됩니다. 2015년말 현재, 김윤환 BNK금융지주 CRO(부산은행 CRO 겸직), 조현일 BNK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장, 김창구 경남은행 CRO, 서정의 BNK투자증권 경영관리본부장, 최병진 BNK캐피탈 CRO, 강석래 BNK저축은행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은 안전내용에 따라 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부서장을 임시의원으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중 리스크관리협의회 구성 현황〉

성명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비고
김윤환	BNK금융지주 CRO 부산은행 CRO(겸직)	2014.01.01	2016.01.01	前 위원장
신덕수	BNK금융지주 CRO 부산은행 CRO(겸직)	2016.01.01	—	現 위원장
조현일	BNK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장	2012.12.28	—	現 간사
김창구	경남은행 CRO	2014.12.29	2016.01.01	
이철수	경남은행 CRO	2016.01.01	—	現 의원
이한철	BNK투자증권 경영관리본부장	2014.08.01	2015.01.16	

성명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비고
서정의	BNK투자증권 경영관리본부장	2015.01.16	-	現 의원
최병진	BNK캐피탈 CRO	2014.08.01	2016.2.2	
김윤환	BNK캐피탈 CRO	2016.2.2	-	現 의원
강석래	BNK저축은행 경영지원본부장	2014.08.01	2016.2.1	
박중수	BNK저축은행 경영지원본부장	2016.2.1	-	現 의원

라. 활동내역 개요

2015년도중 리스크관리협의회는 규정에서 정하는 결의사항, 협의 및 심의사항에 따라 결의안건 14건, 협의 및 심의안건 11건을 처리하였으며, 그룹 및 계열사의 리스크관리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업권별 이슈사항 및 관리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2015년도중 협의회에서 처리된 안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5년도중 리스크관리협의회 안건 현황>

개최일자	안건구분	안건명	회의결과
2015.1.29	심의	▪ 리스크관리 회의체 규정 개정(안)	원안대로 심의
	보고	▪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완료
2015.2.24	결의	▪ 그룹 Total Exposure 관리한도 초과운용 승인	원안대로 결의
2015.4.2	결의	▪ 그룹 Total Exposure 관리한도 초과운용 승인	원안대로 결의
2015.4.29	심의	▪ 그룹 업종별 편중위험 관리방안	원안대로 심의
	심의	▪ 그룹 중복차주 Exposure 관리방안	수정하여 심의
	심의	▪ 그룹 신용리스크 위기상황분석 표준화 방안	원안대로 심의
	보고	▪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완료

개최일자	안전구분	안전명	회의결과
2015.5.28	결의	▪ 그룹 Total Exposure 관리한도 초과운용 승인	원안대로 결의
2015.6.16	결의	▪ 그룹 Total Exposure 관리한도 초과운용 승인	원안대로 결의
2015.6.30	결의	▪ 그룹 Total Exposure 관리한도 초과운용 승인	원안대로 결의
2015.7.7	결의	▪ 그룹 Total Exposure 관리한도 초과운용 승인	원안대로 결의
2015.7.30	결의	▪ BNK자산운용, '15년도 총리스크허용한도 배분(안)	원안대로 결의
	심의	▪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업무메뉴얼 제정(안)	원안대로 심의
	심의	▪ '15년 그룹 위험가중자산 관리 목표 재수립	원안대로 심의
	보고	▪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완료
2015.8.20	결의	▪ 그룹 Total Exposure 관리한도 초과운용 승인	원안대로 결의
2015.9.30	결의	▪ 그룹 Total Exposure 관리한도 초과운용 승인	원안대로 결의
2015.10.1	결의	▪ 그룹 국가별 위험관리지침(안) 제정	원안대로 결의
	심의	▪ 은행 리스크관리 제한도 표준화 방안	원안대로 심의
	심의	▪ 은행계열사 거액여신 차주 한도관리 방안	원안대로 심의
	협의	▪ 그룹 중복차주 요감축 현황 점검	원안대로 협의
	보고	▪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완료
2015.10.28	결의	▪ 그룹 Total Exposure 관리한도 초과운용 승인	원안대로 결의
2015.11.05	결의	▪ 그룹 Total Exposure 관리한도 초과운용 승인	원안대로 결의
2015.11.30	결의	▪ 국가별 신용등급 설정(안)	원안대로 결의
	심의	▪ 2016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및 계획(안)	원안대로 심의
	심의	▪ 그룹 내부등급법 도입 추진 방안	원안대로 심의
2015.12.22	결의	▪ 그룹 Total Exposure 관리한도 초과운용 승인	원안 부결

가.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김우석

(가) 소극적 자격요건

김우석 사외이사는 금융지주회사법(§ 38, § 40), 당사 정관(§ 3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2011년 3월에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되었고, 2015년 말 기준으로도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 3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김우석 사외이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사외이사는 2008년 이후 예일회계법인의 회장직을 수행하며 회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리더쉽, 비전제시,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높은 명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한국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금융기관과 재무부, 재정경제부등 공직에 근무하면서 경제 및 금융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게 되었고, 현재 공인회계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 이사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재무·회계 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김우석 사외이사가 최근 2년내 상근으로 근무 중인 예일회계법인의 경우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가 없고,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사외이사는 오랜 공직생활 중에서도 평판이 우수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이사회 활동에 있어서도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하고, 당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통해 사외이사 업무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여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충족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충족
다. 정관 및 내규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당사 정관 제37조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제4조 충족
2. 적극적 자격요건	여	
가. 전문성	여	재무·회계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 직무공정성	여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여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여	이사회 등 활동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2) 사외이사 김성호

(가) 소극적 자격요건

김성호 사외이사는 금융지주회사법(§ 38, § 40), 당사 정관(§ 3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2011년 3월에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되었고, 2015년 말 기준으로도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 3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김성호 사외이사는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사외이사는 약 25년간의 검사 경험 및 법무부 장관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법률 분야에 대한 지식과 업무 능력이 탁월하며, 재단법인 행복세상의 이사장직을 수행하며 대내외적으로 높은 명성을 보유하고 있어, 법률 전문가로서 당사 사외이사가 되기 위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성호 사외이사가 최근 2년내 상근으로 근무 중인 재단법인 행복세상의 경우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가 없고,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사외이사는 윤리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법조계에서의 오랜 공직생활을 해 왔고,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법치주의 확립, 경제적 번영, 국민의 안전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운영을 통해 계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오고 있어, 이러한 윤리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당사에서 사외이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성호 사외이사는 당사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참여 및 안전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여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충족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충족
다. 정관 및 내규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당사 정관 제37조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제4조 충족
2. 적극적 자격요건		여	
가. 전문성		여	법률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 직무공정성		여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여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여	이사회 등 활동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3) 사외이사 김창수

(가) 소극적 자격요건

김창수 사외이사는 금융지주회사법(§ 38, § 40), 당사 정관(§ 3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2014년 3월에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되었고, 2015년 말 기준으로도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 3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김창수 사외이사는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사외이사는 무역 및 경제 관련 전공자로서 금융 및 경제 전반에 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자문위원, 부산국제금융개발센터 센터장 등을 겸직하면서 현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경제·금융 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창수 사외이사가 최근 2년내 상근으로 근무 중인 부산대학교의 경우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가 없고,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사외이사는 지역 국립대학교에서 교수활동과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적 신망과 우수한 평판을 얻어왔고, 현재 부산은행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해 당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당사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참여 및 안전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여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충족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충족
다. 정관 및 내규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당사 정관 제37조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제4조 충족
2. 적극적 자격요건	여	
가. 전문성	여	경제·금융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 직무공정성	여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여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여	이사회 등 활동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4) 사외이사 문재우

(가) 소극적 자격요건

문재우 사외이사는 금융지주회사법(§ 38, § 40), 당사 정관(§ 37) 및 사외이

사운영규정(§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2014년 3월에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16년 3월 정기주주총회 시 임기만료로 사임할 예정입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3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문재우 사외이사는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재우 사외이사는 행정학, 회계학 및 경영학 관련 전공자로서 금융당국 청와대 비서실, 금융감독위원회 및 손해보험협회 등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금융 및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재무·회계 전문가로 당사의 사외이사가 되기 위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문재우 사외이사는 재정경제부, 대통령비서실, 금융당국 등의 공직에 오랜 기간 근무함으로써 윤리성과 책임성은 이미 검증 받았으며, 당사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해 당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통해 당사 사외이사 업무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여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충족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충족
다. 정관 및 내규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당사 정관 제37조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제4조 충족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2. 적극적 자격요건	여	
가. 전문성	여	재무·회계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 직무공정성	여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여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여	이사회 등 활동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5) 사외이사 박홍대

(가) 소극적 자격요건

박홍대 사외이사는 금융지주회사법(§ 38, § 40), 당사 정관(§ 3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2015년 3월에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되었고, 2016년 3월 정기주주총회 시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할 예정입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 3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박홍대 사외이사는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홍대 사외이사는 약 30년간의 판사로서 재직하면서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부산고등법원장을 역임한 지역의 대표적인 법관으로, 법률분야에 대한 지식과 업무 능력이 탁월하며, 부산선거관리위원회 제35대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적 대내외적으로 높은 명성을 보유하고 있어, 법률 전문가로서 당사 사외이사가 되기 위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유석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동 법인 당사 및 당사 자회

사와의 여신거래가 없고,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흥대 사외이사는 윤리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법조계에서의 오랜 공직생활을 해 왔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 오고 있어, 이러한 윤리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당사에서조차 사외이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여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충족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충족
다. 정관 및 내규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당사 정관 제37조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제4조 충족
2. 적극적 자격요건	여	
가. 전문성	여	법률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 직무공정성	여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여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여	이사회 등 활동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나.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보수

당사는 사외이사 활동 및 보수에 대하여 사외이사운영규정 및 임원보수규정을 마련하여 활동 및 보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규정 제 16조에 의거 매월 15일까지 회의체 참석, 직무교육 등 사외이사 활동내역을 은행연합회 및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보수규정에 의거 기본연봉 및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 사외이사별 구체적 활동내역과 보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외이사 김우석

(가) 활동내역

사외이사 김우석은 2015년 중 개최된 이사회 총 15회 중 14회 참석하였으며, 이사회운영위원회 1회, 리스크관리위원회 6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2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감사위원회 5회, 총 이사회내 위원회 18회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김우석은 당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5년 중 총 25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보수

(단위 : 백만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51.5	
	기본급	50	
	상여금	—	
	기타수당	1.5	회의참가수당(임원보수규정제6조)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편익제공	—	

(2) 사외이사 김성호

(가) 활동내역

사외이사 김성호는 2015년 중 개최된 이사회 총 15회 중 14회 참석하였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6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2회, 감사위원회 5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4회, 이사회내 위원회 총 18

회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김성호는 당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4년 중 총 247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보수

(단위 : 백만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51.5	
	기본급	50	
	상여금	—	
	기타수당	1.5	회의참가수당(임원보수규정제6조)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편익제공	—	

(3) 사외이사 김창수

(가) 활동내역

사외이사 김창수는 2015년 중 개최된 이사회 15회 중 14회 참석하였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6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3회, 이사회운영위원회 2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감사위원회 5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4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1회, 총 이사회내 위원회 23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김창수는 당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5년 중 총 26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보수

(단위 : 백만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21.5	

	기본급	20	
	상여금	—	
	기타수당	1.5	회의참가수당(임원보수규정제6조)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편익제공	—	

(4) 사외이사 문재우

(가) 활동내역

사외이사 문재우는 2015년 중 개최된 이사회 15회 중 15회 참석하였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1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3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4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1, 감사위원회 5회, 이사회운영위원회 2회 등 이사회내 위원회 총 21회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문재우는 당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5년 중 총 25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보수

(단위 : 백만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51.5	
	기본급	50	
	상여금	—	
	기타수당	1.5	회의참가수당(임원보수규정제6조)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편익제공	—	

(5) 사외이사 박홍대

(가) 활동내역

사외이사 박홍대는 2015년 중 개최된 이사회 13회 중 12회 참석하였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6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2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1회 등 이사회내 위원회 총 12회 참여하였으며, 사외이사 박홍대는 당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5년 중 총 189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보수

(단위 : 백만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39.5	
	기본급	38	
	상여금	—	
	기타수당	1.5	회의참가수당(임원보수규정제6조)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편익제공	—	

(6) 회의체 참석내용

(단위 : 개최 · 참여 횟수)

이사회	개최횟수/ 참여횟수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시간
			이사회 운영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경영발전 보상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감사위원 후보추천 위원회		감사 위원회		회장후보 추천위원회		그림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계
김우석	15	14	2	1	7	6	3	2	4	3	1	1	5	5	-	-	-	-	255
김성호	15	14	-	-	7	6	3	2	-	-	1	1	5	5	-	-	4	4	247
김창수	15	15	2	2	6	6	3	3	1	1	1	1	5	5	1	1	4	4	265
문재우	15	15	2	2	1	1	3	3	4	4	1	1	5	5	1	1	4	4	255
박홍대	13	12	-	-	6	6	2	2	3	3	-	-	-	-	1	1	-	-	189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사외이사 성명	김성호	김우석	문재우	김창수	박홍대	비고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취임전	1시간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2015.2.4(수) (14:00~15:00) 부산은행 본점 20층 회의실 ○ 내용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주요내용 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취임전	1시간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2015.2.27(금) (14:00~15:00) 부산은행 본점 20층 회의실 ○ 내용 : G2경제 항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취임전	1시간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2015.3.27(금) (14:00~15:00) 부산은행 본점 20층 회의실 ○ 내용 : 2014년도 BNK금융그룹 현황 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불참	불참	참석	참석	참석	1시간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2015.5.13(수) (14:00~15:00) 부산은행 본점 20층 회의실 ○ 내용 : 지주회사,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도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1시간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2015.8.4(화) (14:00 ~ 16:00) 부산은행 본점 20층 회의실 ○ 내용 : 그룹 리스크 측정기준 표준화 현황 및 최근 기업금융 현황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시간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2015.11.6(금) (14:00 ~ 15:00) 부산은행 본점 20층 회의실 ○ 내용 : 2016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바젤규제 및 대응방안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1시간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2015.12.17(목) (14:00~16:00) 부산은행 본점 20층 회의실 ○ 내용 : 2016년도 그룹 및 계열사의 리스크관리 정책방향 2016년 동남권 경제전망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시간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2016.1.29(금) (12:00~13:00) 부산은행 서울업무부 회의실 ○ 내용 : 경쟁력 우위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특징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불참	참석	참석	불참	1시간
2. 연간 누적 교육 시간: 47시간	10시간	9시간	11시간	10시간	7시간	누적

*누적 교육 시간 : 사외이사로 취임 후 참석한 교육·연수 시간 합산

라. 기부금등 지원내역

(기준일 : 2015.12.31)

사외이사	기부받은 비영리법인등		기부한 금융회사등	지원 내역	
	법인등의 명칭	사외이사와 관계		선임전	선임후
김우석		()	()	해당사항 없음	
이종수		()	()	해당사항 없음	
김성호		()	()	해당사항 없음	
김창수		()	()	해당사항 없음	
문재우		()	()	해당사항 없음	

마. 임원책임보상보험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의 임원책임배상에 대비하여 임원책임보상보험으로 그룹 차원에서 일괄 부보하고 있어 임원의 책임으로 인하여 회사 및 제 3자에게 법률상 책임을 부담케한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상범위는 임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으로, 방어비용이란 보험회사의 동의를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의 조사, 합의 또는 소송시 소요된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포함한 제비용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조건은 먼저 보상하는 손해로 사외이사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회사 또는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을 보상하며,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이사로서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개인적인 이익이나 혜택을 사실상 취한 행위, 이사가 저지른 사실상의 부정행위나 범죄행위,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사전승인 없이 지불한 이사의 급료, 공표되지 않는 회사

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사실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제기되었던 소송 또는 그 소송에서 주장된 사실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서 행한 행위 또는 그 회사의 임원이라는 이유로 제기된 배상청구의 경우입니다.

당사는 매년 임원책임배상보험을 갱신하여 사외이사 재직 시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 6일 사외이사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 자기부담액을 배상 책임액의 20% 이상으로 하며 자기부담액의 최대한도는 1억원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 임원책임보상보험의 총한도보상액은 100억원이며 1 청구당 보상한도액도 100억원입니다.

바. 사외이사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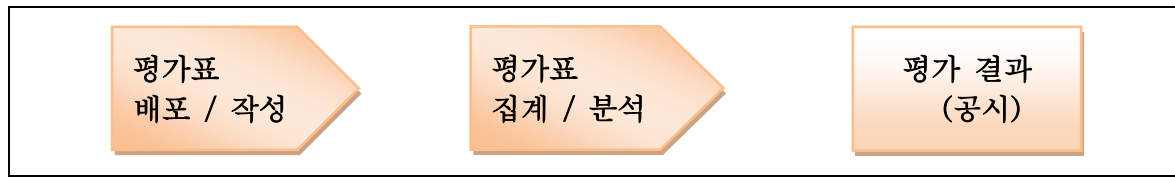
(1) 평가개요

당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최초 선임시 2년이며, 연임시 1년 단위로 총 5년까지 재임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 연임 및 당해 이사회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이사회 및 사외이사에 대한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 ① 평가주체 :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익년도 초에 이사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② 평가절차 : 이사 및 직원들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평가를 수행합니다.



③ 평가기준

평가방법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되며 정성평가는 자기평가(20%), 이사회평가(50%), 직원평가(20%)로 평가하고 정량평가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률(10%)을 반영합니다.

평가항목은 이사의 역량 및 전문성과 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발전 기여도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기준 요약>

구 분	정성평가(다면평가)			정량평가
평가종류	자기평가	이사회평가	직원평가	
평가자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본인	본인 제외한 이사전원	이사회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평가항목	○ 사외이사 평가표 주요 항목 － 역량 및 전문성 － 이사회에 대한 관심 및 참여도 － 회사발전 기여도			
평가비중	20%	50%	20%	10%

④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비고
S	90점 이상 ~ 100점	탁월	
A	80점 이상 ~ 90점 미만	우수	
B	70점 이상 ~ 80점 미만	보통	
C	60점 이상 ~ 70점 미만	미흡	
D	60점 미만	매우미흡	

⑤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별도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제도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지는 않으나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방법을 자기평가, 이사회평가, 직원평가 등으로 다면화 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본인평가를 병행하되, 타인평가비중을 높여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① 총론

2015년도 당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결과 전원 탁월(S등급)한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사외이사의 참석률이 91.7% 수준으로 양호하고 이사회(위원회 포함)시 안전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의견제시 및 당사 경영진에 대한 자료제공요청 등으로 이사회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②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사외이사	평가결과					개선방안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기타	
김성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	—
김우석	양호	양호	양호	양호	—	—
김창수	양호	양호	양호	양호	—	—
문재우	양호	양호	양호	양호	—	—
박홍대	양호	양호	양호	양호	—	—

(3) 외부평가

당사의 사외이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기평가, 이사회평가, 직원평가 등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별도의 외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사회와 실질적인 운영과 사외이사의 역할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 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당사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회장을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회장이 이사회회장으로 선임되어 있는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선임사외이사는 김성호 이사이며, 그 역할은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회의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보고 및 관련자료를 이사회회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중 선임사외이사는 3월 제2차 경영발전보상위원회 종료 후 선임 사외이사를 위한 경영진 성과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당일 이사회 종료 후 전략기획부장이 전체적인 보상체계에 대해 선임 사외이사에게 추가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제출함)을 요청하였습니다.

2015. 6월 제8차 이사회 직후 문재우 사외이사는 안건인 조건부 신종자본증권 발행내용 변경건과 관련하여 자료이해의 용이성을 위해 조건부 신종자본증권발행에 대한 외부환경과 당사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및 타 금융기관의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위원회 종료 후 재무기획부장은 위 요구사항에 따라 시장동향, 관련세척 및 당사에 미칠 예상되는 효과 등에 관하여 작성 후 이사회 전원에게 E-MAIL의 방식으로 보고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당사의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전략기획부이며 선임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지원,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등의 보고 및 발송 지원,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검증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인원수는 전략기획부 내 사외이사 지원을 위한 인력은 2015년말 현재 3명입니다.

2015년도 중 사외이사 지원부서로서의 업무수행으로 이사회와 관련하여 선임사외이사 및 사외이사의 요청사항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서면제출과 E-MAIL을 통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외이사 워크숍 관련 업무지원과 사외이사 및 자회사 CEO 후보 추천 관련하여 후보군 물색, 후보자 자격요건 심사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외이사 교육 및 연수를 위해 정기교육 자료작성 및 당사 경제연구소 발간 정기간행물 발송을 하였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 실시를 위해 사외이사에게 평가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김성호 (現)	'11.3.15	'16.3.26	60 개월	운영위('11.3 월~'16.3 월) 감추위('11.3 월~'16.3 월) 감사위('11.3 월~'16.3 월) 보상위('12.3 월~'13.3 월) ('14.3 월~'16.3 월) 시추위('13.3 월~'14.3 월) 리스크위('13.3.월~'16.3 월) 회추위('14.3.월~'16.3 월)	운영위원장('11.3 월~'12.3 월) ('13.3 월~'14.3 월) ('15.3 월~'16.3 월) 감추위위원장('12.3 월~'13.3 월) 리스크위원장('13.3 월~'15.3 월) 회추위위원장('15.3 월~'16.3 월) 선임사외이사('13.3 월~'16.3 월)	대구지방검찰청 감사장 법무부 장관 (재) 행복세상 이사장(現)
채정병 (前)	'11.3.15	'14.3.28	36 개월	운영위('11.3 월~'13.3 월) 보상위('11.3 월~'14.3 월)	보상위원장('11.3 월~'13.3 월)	호텔롯데 정책본부 전무 롯데쇼핑(주) 사장 롯데카드(주) 대표이사
김우석 (現)	'11.3.15	'16.3.26	60 개월	운영위('11.3 월~'16.3 월) 리스크위('11.3.월~'16.3 월) 보상위('11.3 월~'16.3 월)	운영위원장('13.3 월~'14.3 월) ('15.3 월~'16.3 월) 리스크위원장('15.3 월~'16.3 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에일회계법인 회장 (現)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감추위('11.3월~'16.3월) 사추위('12.3월~'13.3월) ('14.3월~'16.3월) 감사위('11.3월~'16.3월) 회추위('15.3월~'16.3월)	감사위원장('11.3월~'15.2월) 선임사외이사('11.3월~'12.3월)	
이중수 (前)	'11.3.15	'15.3.27	48 개월	리스크위('11.3.월~'13.3월) ('14.3월~'15.3월) 보상위('11.3월~'15.3월) 사추위('11.3월~'14.3월) 감추위('11.3월~'15.3월) 운영위('13.3월~'15.3월)	보상위원장('13.3월~'15.3월) 사추위위원장('11.3월~'15.3월)	한성대 대학원장 (사)한국행정학회 회장 한성대 명예교수
김중화 (前)	'11.3.15	'13.3.28	24 개월	리스크위('11.3.월~'13.3월) 보상위('11.3월~'13.3월) 사추위('11.3월~'13.3월) 감추위('11.3월~'13.3월) 감사위('11.3월~'13.3월)	감추위위원장('11.3월~'12.3월) 선임사외이사('12.3월~'13.4월)	국무총리 무역 및 산업정책 담당관 덕성여대 총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오거돈 (前)	'12.3.27	'14.3.5	24 개월	운영위('12.3월~'13.3월) 감추위('12.3월~'14.3월) 감사위('12.3월~'14.3월) 리스크위('13.3월~'14.3월) 보상위('13.3월~'14.3월)	운영위원장('12.3월~'13.4월) 감추위위원장('12.3월~'13.4월)	부산시 행정부시장 해양수산부 장관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박맹언 (前)	'13.3.28	'14.3.4	12 개월	보상위('13.3월~'14.3월) 리스크위('13.3월~'14.3월) 감추위('13.3월~'14.3월) 사추위('13.3월~'14.3월) 감사위('13.3월~'14.3월)	사추위위원장('13.3월~'14.3월)	부경대학교 총장 (사)한국해양산업협회 공동이사장 부경대학교 교수
이봉철 (現)	'14.3.28	'17.3.27	24 개월	보상위('14.3월~'16.3월) 임추위('14.3월~'16.3월) 회추위('15.3월~'16.3월)	-	롯데캐피탈 감사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롯데쇼핑 정책본부 부사장(現)
문재우 (現)	'14.3.28	'16.3.27	24 개월	보상위('14.3월~'16.3월) 리스크위('14.3월~'15.3월) 사추위('14.3월~'16.3월) 감추위('14.3월~'16.3월) 감사위('14.3월~'16.3월) 회추위('15.3월~'16.3월)	사추위위원장('14.3월~'15.3월) 감사위원장('15.3월~'16.3월) 사추위위원장('14.3월~'15.3월) 감사위원장('15.3월~'16.3월)	금융감독원 감사 손해보험협회 회장 법무법인 율촌 고문(現)
김창수 (現)	'14.3.28	'16.3.27	24 개월	보상위('14.3월~'16.3월) 사추위('14.3월~'15.3월)	보상위원장('15.3월~'16.3월)	(사)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 부산은행 사외이사 (現)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감추위('14.3월~'16.3월) 감사위('14.3월~'16.3월) 회추위('15.3월~'16.3월)	감추위위원장('14.3월~'15.3월)	부산대 무역학부 교수(現)
박홍대 (現)	'15.3.27	'17.3.26	12개월	보상위('15.3월~'16.3월) 사추위('15.3월~'16.3월) 감추위('15.3월~'16.3월) 회추위('15.3월~'16.3월)	감추위위원장('14.3월~'15.3월)	(사)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 부산은행 사외이사(現) 부산대 무역학부 교수(現)

※ 위 표에서 사용된 각종 위원회의 약칭의 정식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위 : 이사회운영위원회 / 리스크위 : 리스크관리위원회 / 보상위 : 경영발전보상
위원회 / 임추위 :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추위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감추
위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감사위 : 감사위원회 / 회추위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가. 주주현황

(1) 발행주식 현황

(단위 : 주, %)

주식의 종류	보통주	종류주식	(의결권 행사가능 주식)
발행주식 수	255,935,246	—	255,920,391
계	255,935,246	—	255,920,391

당사의 발행주식은 총 255,935,246주이며, 보통주로 이루어져 있고, 종류주식은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발행주식 중 자기주식 14,855주(2015.6.4 실시된 경남은행 비지배주주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결과 발생)를 제외한 255,920,391주가 의결권 행사가능 주식입니다.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안전별로 행사 가능한 의결권에 차이가 없습니다.

(2) 주요주주 현황 (2015.12.31 기준)

(단위 : 주, %)

주주명	소유주식 수	지분율
롯데제과(주) ^{주1)}	30,741,736	12.01
국민연금	26,985,939	10.54
(주)파크랜드	16,672,392	6.51
THE OAKMARK INTERNATIONAL SMALL CAP FUND	8,792,434	3.44
THE GOVERNMENT OF SINGAPORE	4,636,570	1.81
ABERDEEN GLOBAL	4,537,375	1.77
HSBC POOLED INVESTMENT FUND-HSBC POOLED	3,314,888	1.30
메리츠종합금융증권	3,103,547	1.21
기타	157,150,365	61.41
계 ^{주2)}	255,935,246	100.00

주1) 롯데제과(주)외 특수관계인(8개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2) 외국인 주주 지분율 합계 : 46.52%

2015년 12월31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롯데제과(주)(특수관계인 포함)임

니다. 당사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롯데” 소속회사로서 식품제조, 가공, 판매를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인으로 당사의 최대주주를 구성하는 회사는 (재)롯데장학재단, 롯데상사(주), 롯데스카이힐CC, 롯데칠성음료(주), 롯데쇼핑(주), (주)롯데리아, (주)광윤사, (주)롯데, (주)패밀리이며, 총 보유주식수는 30,741,736주, 12.01%입니다.

나. 주주총회 개최 현황

(1)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현황

구분	제2기 정기주총	2013년 임시주총	제3기 정기주총	제4기 정기주총	2015년 임시주총
소집결의일	2013.02.27(수)	2013.06.24(월)	2014.03.05(수)	2015.02.27(금)	2015.04.01(수)
소집공고일	2013.03.13(수)	2013.07.29(월)	2014.03.13(목)	2015.03.11(수)	2015.05.04(월)
주총개최일	2013.03.28(목)	2013.08.14(수)	2014.03.28(금)	2015.03.27(금)	2015.05.13(수)
개최장소	부산은행 본점 7층 강당 (범일동)	부산은행 본점 7층 강당 (범일동)	부산은행 본점 7층 강당 (범일동)	부산은행 본점 23층 SKY홀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 23층 SKY홀 (문현동)

당사의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현황은 상기 표와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주주총회를 연 횟수는 5회로, 2013년도에 지주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8월 개최) 및 2015년 경남은행 비지배주주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승인을 위한 임시주총(5월 개최)을 제외하고 매년 3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세부내용

(가) 제2기 정기주주총회

구분	내용
주주총회 소요시간	39분
이사회 구성원 참석	여
영문 소집통지 공개·송부	부

구 분		내 용
주주의 발언관련	주주 수	5명
	발언 수	5회
	발언시간	평균 1분, 최장 3분
	주요내용	안전 동의
	발언자 유형	일반 주주
소요비용		7,754,200원
안전별 주요내용 (찬반비율)		1.제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개정상법 반영 등
		3.이사 선임의 건 3-1.사내이사 후보 : 임영록 3-2.비상임이사 후보 : 성세환 3-3.사외이사 후보 : 김성호 3-4.사외이사 후보 : 김우석 3-5.사외이사 후보 : 이종수 3-6.사외이사 후보 : 박맹언
		4.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1.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김성호 4-2.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김우석 4-3.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박맹언
		5.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20억원
안전별 반대주주의 반대의견		부(명시적으로 제시된 경우 없음)
의결정족수	보통결의	참석주식의 1/2이상 및 발행주식의 1/4이상
	특별결의	참석주식의 2/3이상 및 발행주식의 1/3이상
의결권 행사가능 지분율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13.59%
	기관투자자	12.98%

제2기 정기주주총회는 2013년 3월 28일 개최되었습니다. 오전 10시30분에 개최하여 11시9분에 폐회함으로써 총 39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안전별 주요내용은 1안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안 이사 선임의 건, 4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이었습니다. 2안은 특별결의 사항이며, 나머지는 보통결의사항으로서 모두가결되었습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주주는 없었습니다.

발언한 주주는 5명으로 안건 동의 발언이었으며, 평균 1분 가량이었고, 일부 3분 정도 발언이 지속되기도 하였습니다.

①제2기 주주총회 결의사항

(단위 : 주, %)

의안 번호	결의 유형	참석주식수				Shadow Voting		계		발행주식수 대비	
		찬성	비율	반대	비율	찬성	반대	찬성	반대	불행사	비율
1	보통	115,037,933	88.3	15,210,665	11.7	17,664,364	2,335,636	132,702,297	17,546,301	43,131,301	22.3
2	특별	121,819,926	93.3	8,734,493	6.7	335,914,89	2,408,511	155,411,415	11,143,004	26,825,480	13.9
3-1	보통	130,150,881	99.5	663,175	0.5	19,898,607	101,393	150,049,488	764,568	42,565,843	22.0
3-2	보통	130,437,721	99.7	376,335	0.3	19,942,462	57,538	150,380,183	433,873	42,565,843	22.0
3-3	보통	130,690,216	99.9	123,840	0.1	19,981,066	18,934	150,671,282	142,774	42,565,843	22.0
3-4	보통	130,239,946	99.6	574,110	0.4	19,912,225	87,775	150,152,171	661,885	42,565,843	22.0
3-5	보통	130,239,946	99.6	574,110	0.4	19,912,225	87,775	150,152,171	661,885	42,565,843	22.0
3-6	보통	130,690,216	99.9	123,840	0.1	19,981,066	18,934	150,671,282	142,774	42,565,843	22.0
4-1	보통	116,803,915	100	-	-	5,796,964	-	122,600,879	-	70,779,020	36.6
4-2	보통	116,353,645	99.6	450,270	0.4	5,774,617	22,347	122,128,262	472,617	70,779,020	36.6
4-3	보통	116,782,915	99.98	21,000	0.02	5,795,921	1,043	122,578,836	22,043	70,779,020	36.6
5	보통	122,103,416	93.7	8,238,593	6.3	18,735,849	1,264,151	140,839,265	9,502,744	43,037,890	22.3

의안에 대해서 전부 가결되었으며, 의결권 행사율을 제고코자 예탁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하였습니다. 2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20백만주를, 특별결의 대상인 2안에 대해서는 36백만주를 Shadow Voting으로 행사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90%이상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사선임 및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에 있어 세부안건으로 구분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②제2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방법별 현황

(단위 : 주,%)

구분		주식 수	찬성주식수	비율	반대주식수	비율
1안	주총장 직접투표	34,302,807	34,302,807	100	-	-
	대리행사	95,945,791	80,735,126	84.1	15,210,665	15.9
	Shadow Voting	20,000,000	17,664,364	88.3	2,335,636	11.7
	계	150,248,598	132,702,297	88.3	17,546,301	11.7
2안	주총장 직접투표	34,302,807	34,302,807	100.0	-	0.0
	대리행사	96,251,612	87,517,119	90.9	8,734,493	9.1
	Shadow Voting	36,000,000	33,591,489	93.3	2,408,511	6.7
	계	166,554,419	155,411,415	93.3	11,143,004	6.7
3-1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302,807	34,302,807	100	-	-
	대리행사	96,511,249	95,848,074	99.3	663,175	0.7
	Shadow Voting	20,000,000	19,898,607	99.5	101,393	0.5
	계	150,814,056	150,049,488	99.5	764,568	0.5
3-2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302,807	34,302,807	100	-	-
	대리행사	96,511,249	96,134,914	99.6	376,335	0.4
	Shadow Voting	20,000,000	19,942,462	99.7	57,538	0.3
	계	150,814,056	150,380,183	99.7	433,873	0.3
3-3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302,807	34,302,807	100	-	-
	대리행사	96,511,249	96,387,409	99.9	123,840	0.1
	Shadow Voting	20,000,000	19,981,066	99.9	18,934	0.1
	계	150,814,056	150,671,282	99.9	142,774	0.1
3-4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302,807	34,302,807	100	-	-
	대리행사	96,511,249	95,937,139	99.4	574,110	0.6
	Shadow Voting	20,000,000	19,912,225	99.6	87,775	0.4
	계	150,814,056	150,152,171	99.6	661,885	0.4
3-5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302,807	34,302,807	100	-	-
	대리행사	96,511,249	95,937,139	99.4	574,110	0.6
	Shadow Voting	20,000,000	19,912,225	99.6	87,775	0.4
	계	150,814,056	150,152,171	99.6	661,885	0.4
3-6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302,807	34,302,807	100	-	-
	대리행사	96,511,249	96,387,409	99.9	123,840	0.1
	Shadow Voting	20,000,000	19,981,066	99.9	18,934	0.1
	계	150,814,056	150,671,282	99.9	142,774	0.1

구분		주식 수	찬성주식수	비율	반대주식수	비율
4-1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302,807	34,302,807	100	-	-
	대리행사	82,501,108	82,501,108	100	-	-
	Shadow Voting	5,796,964	5,796,964	100	-	-
	계	122,600,879	122,600,879	100	-	-
4-2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302,807	34,302,807	100	-	-
	대리행사	82,501,108	82,050,838	99.5	450,270	0.5
	Shadow Voting	5,796,964	5,774,617	99.6	22,347	0.4
	계	122,600,879	122,128,262	99.6	472,617	0.4
4-3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302,807	34,302,807	100	-	-
	대리행사	82,501,108	82,480,108	99.97	21,000	0.03
	Shadow Voting	5,796,964	5,795,921	99.98	1,043	0.02
	계	122,600,879	122,578,836	99.98	22,043	0.02
5안	주총장 직접투표	34,302,807	34,302,807	100	-	-
	대리행사	96,039,202	87,800,609	91.4	8,238,593	8.6
	Shadow Voting	20,000,000	18,735,849	93.7	1,264,151	6.3
	계	150,342,009	140,839,265	93.7	9,502,744	6.3

제2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방법은 주총장 직접투표, 대리행사, Shadow Voting이며, 대리행사를 통한 경우 일부 반대표가 있었던 반면, 주총장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한 주주의 경우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100% 찬성하였습니다.

(나) 2013년 임시주주총회

구 분		내 용
주주총회 소요시간		15분
이사회 구성원 참석		여
영문 소집통지 공개·송부		부
주주의 발언관련	주주 수	1명
	발언 수	1회
	발언시간	평균 1분, 최장 1분
	주요내용	안건 동의
	발언자 유형	일반 주주
소요비용		7,094,930원

안건별 주요내용		1.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후보 성세환
안건별 반대주주의 반대의견		부(명시적으로 제시된 경우 없음)
의결정족수	보통결의	참석주식의 1/2이상 및 발행주식의 1/4이상
	특별결의	참석주식의 2/3이상 및 발행주식의 1/3이상
의결권 행사가능 지분율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13.59%
	기관투자자	12.98%

2013년 임시주주총회는 2013년 8월14일 개최되었으며, 오전 10시30분에 개최하여 10시45분에 폐회하여 총 15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안건은 1건으로 사내이사 후보 성세환 선임건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주주는 없었습니다.

①2013년 임시주주총회 결의사항

(단위 : 주, %)

의안 번호	결의 유형	참석주식수				Shadow Voting		계		발행주식수 대비	
		찬성	비율	반대	비율	찬성	반대	찬성	반대	불행사	비율
1	보통	133,016,752	99.8	268,100	0.2	19,959,770	40,230	152,976,522	308,330	40,095,047	20.7

본 안건은 보통결의사항으로 그림자투표로 예약원을 통해 20백만주를 확보 하였습니다. 참석주식수 중 찬성율은 99.8%입니다.

②2013년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방법별 현황

(단위 : 주, %)

구분	해당 주식 수	찬성주식수	비율	반대주식수	비율
주총장 직접 투표	28,372,558	28,372,558	100.0	-	0.0
대리행사	104,912,294	104,644,194	99.7	268,100	0.3
Shadow Voting	20,000,000	19,959,770	99.8	40,230	0.2
계	153,284,852	152,976,522	99.8	308,330	0.2

임시주주총회에서 반대투표는 대리행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주총장에서 직접 투표한 주주는 100% 찬성하였습니다.

(다) 제3기 정기주주총회

구 분		내 용
주주총회 소요시간		40분
이사회 구성원 참석		여
영문 소집통지 공개·송부		부
주주의 발언관련	주주 수	5명
	발언 수	5회
	발언시간	평균 1분, 최장 2분
	주요내용	안전 동의
	발언자 유형	일반 주주
소요비용		7,923,000원
안전별 주요내용 (찬반비율)		1. 제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3.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후보 : 정민주 3-2. 비상임이사 후보 : 이봉철 3-3. 사외이사 후보 : 김성호 3-4. 사외이사 후보 : 김우석 3-5. 사외이사 후보 : 이종수 3-6. 사외이사 후보 : 문제우 3-7. 사외이사 후보 : 김창수
		4.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1.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후보 : 김성호 4-2.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후보 : 김우석 4-3.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후보 : 문제우 4-4.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후보 : 김창수
		5.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20억원
안전별 반대주주의 반대의견		부(명시적으로 제시된 경우 없음)

구 분		내 용
의결정족수	보통결의	참석주식의 1/2이상 및 발행주식의 1/4이상
	특별결의	참석주식의 2/3이상 및 발행주식의 1/3이상
의결권 행사가능 지분율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13.12%
	기관투자자	20.01%

제3기 정기주주총회는 2014년 3월28일 오전 10시35분에 개최하여 11시 15분에 폐회하였으며 총 개최시간은 40분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모두 통과 되었으며, 일반주주 5인의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

①제3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사항

(단위 : 주, %)

의안 번호	결의 유형	참석주식수				Shadow Voting		계		발행주식수 대비	
		찬성	비율	반대	비율	찬성	반대	찬성	반대	불행사	비율
1	보통	128,803,564	98.6	1,899,374	1.4	19,709,360	290,640	148,512,924	2,190,014	42,676,961	22.1
2	특별	130,264,476	99.9	185,172	0.1	35,948,898	51,102	166,213,374	236,274	26,930,251	13.9
3-1	보통	130,264,518	99.9	185,130	0.1	19,971,616	28,384	150,236,134	213,514	42,930,251	22.2
3-2	보통	130,285,518	99.9	185,130	0.1	19,971,621	28,379	150,257,139	213,509	42,909,251	22.2
3-3	보통	130,999,756	99.6	470,892	0.4	19,928,365	71,635	150,928,121	542,527	41,909,251	21.7
3-4	보통	129,621,636	99.8	309,012	0.2	19,952,434	47,566	149,574,070	356,578	43,449,251	22.5
3-5	보통	130,184,928	99.8	285,720	0.2	19,956,201	43,799	150,141,129	329,519	42,909,251	22.2
3-6	보통	130,140,636	99.8	309,012	0.2	19,952,623	47,377	150,093,259	356,389	42,930,251	22.2
3-7	보통	130,140,636	99.8	309,012	0.2	19,952,623	47,377	150,093,259	356,389	42,930,251	22.2
4-1	보통	130,538,766	99.9	185,172	0.1	19,971,669	28,331	150,510,435	213,503	42,655,961	22.1
4-2	보통	130,538,766	99.9	185,172	0.1	19,971,669	28,331	150,510,435	213,503	42,655,961	22.1
4-3	보통	130,517,766	99.9	185,172	0.1	19,971,665	28,335	150,489,431	213,507	42,676,961	22.1
4-4	보통	130,517,766	99.9	185,172	0.1	19,971,665	28,335	150,489,431	213,507	42,676,961	22.1
5	보통	130,185,241	99.8	264,407	0.2	19,959,462	40,538	150,144,703	304,945	42,930,251	22.2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출된 의안 중 2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특별 결의 대상으로 예탁원에 36백만주의 Shadow Voting을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20백만주를 요청하였습니다. 전 의안이 가결되었으며 참석주식수 중 찬성률은 95%를 상회하였습니다.

②제3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방법별 현황

(단위 : 주,%)

구분		해당 주식 수	찬성주식수	비율	반대주식수	비율
1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558,813	34,558,813	100	-	-
	대리행사	96,144,125	94,244,751	98	1,899,374	2
	Shadow Voting	20,000,000	19,709,360	98.5	290,640	1.5
	계	150,702,938	148,512,924	98.5	2,190,014	1.5
2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558,813	34,558,813	100.0	-	0.0
	대리행사	95,890,835	95,705,663	99.8	185,172	0.2
	Shadow Voting	36,000,000	35,948,898	99.9	51,102	0.1
	계	166,449,648	166,213,374	99.9	236,274	0.1
3-1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558,813	34,558,813	100	-	-
	대리행사	95,890,835	95,705,705	99.8	185,130	0.2
	Shadow Voting	20,000,000	19,971,616	99.9	28,384	0.1
	계	150,449,648	150,236,134	99.9	213,514	0.1
3-2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558,813	34,558,813	100	-	-
	대리행사	95,911,835	95,726,705	99.8	185,130	0.2
	Shadow Voting	20,000,000	19,971,621	99.9	28,379	0.1
	계	150,470,648	150,257,139	99.9	213,509	0.1
3-3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558,813	34,558,813	100	-	-
	대리행사	95,911,835	95,440,943	99.5	470,892	0.5
	Shadow Voting	20,000,000	19,927,816	99.6	72,184	0.4
	계	150,470,648	149,927,572	99.6	543,076	0.4
3-4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558,813	34,558,813	100	-	-
	대리행사	95,911,835	95,602,823	99.7	309,012	0.3
	Shadow Voting	20,000,000	19,952,631	99.8	47,469	0.2
	계	150,470,748	150,114,267	99.8	356,481	0.2
3-5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558,813	34,558,813	100	-	-
	대리행사	95,911,835	95,626,115	99.7	285,720	0.3
	Shadow Voting	20,000,000	19,956,201	99.8	43,799	0.2
	계	150,470,648	150,141,129	99.8	329,519	0.2
3-6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558,813	34,558,813	100	-	-
	대리행사	95,890,835	95,581,823	99.7	309,012	0.3

구분		해당 주식 수	찬성주식수	비율	반대주식수	비율
	Shadow Voting	20,000,000	19,952,623	99.8	47,377	0.2
	계	150,449,648	150,093,259	99.8	356,389	0.2
3-7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558,813	34,558,813	100	-	-
	대리행사	95,890,835	95,581,823	99.7	309,012	0.3
	Shadow Voting	20,000,000	19,952,623	99.8	47,377	0.2
	계	150,449,648	150,093,259	99.8	356,389	0.2
4-1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558,813	34,558,813	100	-	-
	대리행사	96,165,125	95,979,953	99.8	185,172	0.2
	Shadow Voting	20,000,000	19,971,669	99.9	28,331	0.1
	계	150,723,938	150,510,435	99.9	213,503	0.1
4-2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558,813	34,558,813	100	-	-
	대리행사	96,165,125	95,979,953	99.8	185,172	0.2
	Shadow Voting	20,000,000	19,971,669	99.9	28,331	0.1
	계	150,723,938	150,510,435	99.9	213,503	0.1
4-3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558,813	34,558,813	100	-	-
	대리행사	96,144,125	95,958,953	99.8	185,172	0.2
	Shadow Voting	20,000,000	19,971,665	99.9	28,335	0.1
	계	150,702,938	150,489,431	99.9	213,507	0.1
4-4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558,813	34,558,813	100	-	-
	대리행사	96,144,125	95,958,953	99.8	185,172	0.2
	Shadow Voting	20,000,000	19,971,665	99.9	28,335	0.1
	계	150,702,938	150,489,431	99.9	213,507	0.1
5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558,813	34,558,813	100	-	-
	대리행사	95,890,835	95,626,428	99.7	264,407	0.3
	Shadow Voting	20,000,000	19,959,462	99.8	40,538	0.2
	계	150,449,648	150,144,703	99.8	304,945	0.2

제3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방법은 주총장 직접투표, 대리행사, Shadow Voting으로 대리행사를 통한 경우 일부 반대표가 있었던 반면, 주총장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한 주주의 경우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100% 찬성하였습니다.

(라) 제4기 정기주주총회

구 분		내 용
주주총회 소요시간		28분
이사회 구성원 참석		여
영문 소집통지 공개·송부		부
주주의 발언관련	주주 수	5명
	발언 수	5회
	발언시간	평균 1분, 최장 2분
	주요내용	안건 동의
	발언자 유형	일반 주주
소요비용		4,766,940원
안건별 주요내용 (찬반비율)		1.제4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정관 일부 변경의 건 —상호 변경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 신설
		3.이사 선임의 건 3-1.사내이사 후보 : 정민주 3-2.사외이사 후보 : 김성호 3-3.사외이사 후보 : 김우석 3-4.사외이사 후보 : 박홍대
		4.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1.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후보 : 김성호 4-2.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후보 : 김우석
		5.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25억원
안건별 반대주주의 반대의견		부(명시적으로 제시된 경우 없음)
의결정족수	보통결의	참석주식의 1/2이상 및 발행주식의 1/4이상
	특별결의	참석주식의 2/3이상 및 발행주식의 1/3이상
의결권 행사가능 지분율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13.12%
	기관투자자	25.10%

제4기 정기주주총회는 2015년 3월27일 오전 10시30분에 개최하여 10시

58분에 폐회하였으며 총 개최시간은 28분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모두 통과 되었으며, 일반주주 5인의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① 4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사항

(단위 : 주, %)

의안 번호	결의 유형	참석주식수				발행주식수 대비	
		찬성	비율	반대	비율	불행사	비율
1	보통	162,645,790	94.49	9,489,890	5.51	62,244,219	26.56
2	특별	172,465,908	99.74	445,003	0.26	61,468,988	26.23
3-1	보통	163,845,524	94.76	9,065,387	5.24	61,468,988	26.23
3-2	보통	172,699,365	99.88	211,546	0.12	61,468,988	26.23
3-3	보통	161,832,446	93.59	11,078,465	6.41	61,468,988	26.23
3-4	보통	172,257,340	99.62	653,571	0.38	61,468,988	26.23
4-1	보통	150,078,650	99.86	209,623	0.14	84,091,626	35.88
4-2	보통	141,269,056	94.00	9,019,217	6	84,091,626	35.88
5	보통	130,145,415	75.27	42,765,496	24.73	61,468,988	26.23

제4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출된 의안 중 2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특별 결의 대상이며, 나머지 의안은 보통결의 대상입니다. 전 의안이 가결되었으며 참석주식수 중 평균 찬성률은 약 95% 입니다.

② 4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방법별 현황

(단위 : 주, %)

구분		해당 주식 수	찬성주식수	비율	반대주식수	비율
1 안	주총장 직접투표	40,190,413	40,190,413	100.0	-	0.0
	대리행사	131,945,267	122,455,377	92.8	9,489,890	7.2
	계	172,135,680	162,645,790	94.5	9,489,890	5.5
2 안	주총장 직접투표	40,190,413	40,190,413	100.0	-	0.0
	대리행사	132,720,498	132,275,495	99.7	445,003	0.3
	계	172,910,911	172,465,908	99.7	445,003	0.3
3-1 안	주총장 직접투표	40,190,413	40,190,413	100.0	-	0.0
	대리행사	132,720,498	123,655,111	93.2	9,065,387	6.8
	계	172,910,911	163,845,524	94.8	9,065,387	5.2
3-2	주총장 직접투표	40,190,413	40,190,413	100	-	-

구분		해당 주식 수	찬성주식수	비율	반대주식수	비율
안	대리행사	132,720,498	132,508,952	99.8	211,546	0.2
	계	172,910,911	172,699,365	99.9	211,546	0.1
3-3 안	주총장 직접투표	40,190,413	40,190,413	100.0	-	0.0
	대리행사	132,720,498	121,642,033	91.7	11,078,465	8.3
	계	172,910,911	161,832,446	93.6	11,078,465	6.4
3-4 안	주총장 직접투표	40,190,413	40,190,413	100.0	-	0.0
	대리행사	132,720,498	132,066,927	99.5	653,571	0.5
	계	172,910,911	172,257,340	99.6	653,571	0.4
4-1 안	주총장 직접투표	40,190,413	40,190,413	100.0	-	0.0
	대리행사	110,097,860	109,888,237	99.8	209,623	0.2
	계	150,288,273	150,078,650	99.9	209,623	0.1
4-2 안	주총장 직접투표	40,190,413	40,190,413	100.0	-	0.0
	대리행사	110,097,860	101,078,643	91.8	9,019,217	8.2
	계	150,288,273	141,269,056	94.0	9,019,217	6.0
5 안	주총장 직접투표	40,190,413	40,190,413	100.0	-	0.0
	대리행사	132,720,498	89,955,002	67.8	42,765,496	32.2
	계	172,910,911	130,145,415	75.3	42,765,496	24.7

제4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방법은 주총장 직접투표 및 대리행사로 이루어졌으며, 대리행사를 통한 경우 일부 반대표가 있었던 반면, 주총장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한 주주의 경우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100% 찬성하였습니다.

(마) 2015년 임시주주총회

구분		내용
주주총회 소요시간		15분
이사회 구성원 참석		여
영문 소집통지 공개·송부		부
주주의 발언관련	주주 수	1명
	발언 수	1회

구 분		내 용
	발언시간	2분
	주요내용	안전 동의
	발언자 유형	일반 주주
소요비용		24,246,600원
안전별 주요내용 (찬반비율)		1.경남은행 비지배주주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승인의 건
안전별 반대주주의 반대의견		부(명시적으로 제시된 경우 없음)
의결정족수	보통결의	참석주식의 1/2이상 및 발행주식의 1/4이상
	특별결의	참석주식의 2/3이상 및 발행주식의 1/3이상
의결권 행사가능 지분율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13.12%
	기관투자자	18.20%

2015년 임시주주총회는 2015년 5월1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최하여 10시 45분에 폐회하였으며 총 개최시간은 15분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모두 통과 되었으며, 일반주주 1인의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① 2015년 임시주주총회 결의사항

(단위 : 주, %)

의안 번호	결의 유형	참석주식수				발행주식수 대비	
		찬성	비율	반대	비율	불행사	비율
1	특별	166,758,471	96.61	5,855,171	3.39	61,766,257	26.35

본 안건은 특별결의사항으로 참석주식수 중 찬성률은 96.6%이며, 총 발행 주식수 234,379,899주 중 71.1%가 찬성하여 가결되었습니다.

② 2015년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방법별 현황

(단위 : 주, %)

구분		해당 주식 수	찬성주식수	비율	반대주식수	비율
1안	주총장 직접투표	40,376,753	40,376,753	100.0	-	0.0
	대리행사	132,236,889	126,381,718	95.6	5,855,171	4.4
	계	172,613,642	166,758,471	96.6	5,855,171	3.4

2015년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방법은 주총장 직접투표 및 대리행사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대리행사를 통한 경우 일부 반대표가 있었던 반면, 주총장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한 주주의 경우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100% 찬성하였습니다.

당사는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 결과 경영유의사항 3건의 개선을 요청 받았으며 당사는 아래와 같이 모두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첫째, 사외이사제도 운영의 합리화로서 사외이사 선임 관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사외이사 평가의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조치요구사항에 따라 당사에서는 2015.11.6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원칙 및 후보군 관리방안을 수립하였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및 「사외이사운영규정」을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2015.11월부터 2016.2월에 걸쳐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후보군 Pool-In/Out 실시 및 후보군 관리와 예비후보군 선정 등 사외이사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사외이사의 활동실적에 상응하는 보수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지주사의 자회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조치요구사항에 따라 당사에서는 2015. 12월 이사회에서 자회사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회사의 중장기 경영계획 및 연도별 경영계획 확정을 심의 · 의결하였으며, 자회사 성과보상과 관련하여 「경영발전보상위원회규정」을 개정하여 자회사 성과보상에 대한 지주 보상위원회와 이사회의 심의 · 조정 및 승인을 받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경영진 성과평가제도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조치요구사항에 따라 당사에서는 성과지표 산정 원칙과 관련하여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기준」 및 「장기성과 현금보상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보상 관련 위험을 관리 · 통제하기 위하여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경영발전보상위원회규정을 개정하여 명문화 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산정 원칙과 관련하여 위험을 감안한 수익성 지표를 도입하고, 비정상 손익 제거의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상 · 매각을 반영한 건전성 지표를 도입하였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정 관

2011. 3.15 제정

2012. 3.27 개정

2013. 3.28 개정

2014. 3.28 개정

2015. 3.2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BNK금융지주라 한다. 영문으로는 BNK Financial Group Inc.라 표기한다.(2015.3.27 개정)

제2조(사업의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회사 등(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2. 자회사 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3.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4.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5.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
6.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7. 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8. 자회사 등과 공동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9.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자회사 등에 대한 브랜드, 라이선스 등의 대여 및 제공 업무
11.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12. 기타 전 각호의 업무에 부수 또는 관련된 업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이 회사는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
②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bnkfg.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내에서 발간되는 부산일보 및 국제신문에 게재한다.(2015.3.27 개정)

제2장 주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7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93,379,899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2013.3.28 개정)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 재산의 분배에 관한 우선권이 있는 종류주식,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한다),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한다)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2013.3.28 개정)

제9조(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이 회사가 발행할 배당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2 범위 내로 한다.

②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 기준 연 1% 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하고, 이 정관 제56조 및 제57조에서 허용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가액의 결정방법, 이익배당하는 조건을 정한다. 단,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는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2013.3.28 개정)

③이 회사가 발행할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2013.3.28 개정)

④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2013.3.28 개정).

⑤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2013.3.28 개정)

⑥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존속기간 여부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그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13.3.28 개정)

제10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1조(전환주식) ①이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전환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20%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해 발행할 수 있다.

(2013.3.28 개정)

②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주식과 동수로 한다.(2013.3.28 개정)

③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3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상환주식) ①이 회사는 발행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2013.3.28 개정)

②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 발행가액+가산금액 』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턴 발행일 후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회사가 상환기간 만료시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이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④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에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⑤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 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 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2013.3.28 개정)
- ⑥회사는 상환주식 발행시의 이사회 결의로써 그 상환주식을 제11조에서 정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2014.3.28 개정)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014.3.28 신설)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제휴회사, 투자회사, 사무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이 회사 또는 자회사와 거래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법인과 개인 등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014.3.28신설)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2014.3.28신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식(2014.3.28신설)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2014.3.28신설)
6.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2014.3.28신설)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2014.3.28개정)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2014.3.28신설)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014.3.28신설)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014.3.28신설)
4.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014.3.28신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2014.3.28개정)

④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2014.3.28개정)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방법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2014.3.28신설)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2014.3.28신설)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2014.3.28신설)

제14조(주식매수선택권) ①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여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3.3.28 개정)

②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유예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이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 회사 또는 상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⑤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⑧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2013.3.28 개정)

⑨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6조(명의개서대리인) ①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다.

③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주주와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6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8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 후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장 사채

제19조(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이사회가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2012.4.15 신설)

제19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2014.3.28개정)

1.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014.3.28개정)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014.3.28개정)

②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2014.3.28신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2013.3.28 개정)

⑤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 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①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

권'이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2015.3.27 신설)

②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5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2015.3.27 신설)

③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환과 이자 지급 의무가 감면(이하 '채무재조정'이라 한다)된다. 다만, 이사회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당시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2015.3.27 신설)

1. 이 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받는 경우
2. 이 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 개선명령 조치를 받는 경우

제20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2014.3.28개정)

1.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014.3.28개정)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014.3.28개정)

②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2014.3.28신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

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2013.3.28 개정)

⑤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가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및 제휴회사 등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거하여 발행된 사채의 이익배당참가에 관한 사항은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기준으로 하여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23조(소집시기)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4조(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제25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2013.3.28 개정)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부산광역시내에서 발간되는 「부산일보」와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서울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대표이사 유고시의 주주총회의 의장은 제24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대행한다.

제27조(의장의 질서 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9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2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서면결의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2013.3.28 개정)

②회사는 제1항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2013.3.28 개정)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 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및 이사회

제34조(이사의 수) ①이 회사의 이사는 15인 이내로 한다.

②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구분하고, 사외이 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35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사외이사는 제47조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 한다.

제36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②사외이사가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 으로 본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자회사 등의 사외이사(퇴임 후 2년 이내에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한다)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 될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2013.3.28 개정)

⑤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선임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7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 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금융지주회사법 및 관련 법규에서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 자
2. 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

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

②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자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 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 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 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38조(이사의 보선) ①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34조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4조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9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1인을 선임한다.

②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약간명의 부회장, 사장 및 부사장을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중 1인을 대표이사로 할 수 있다.

제40조(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제41조(이사의 의무) ①이사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이사회 의장이 부재중이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통지 및 소집을 대행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3조(이사회 의장) ①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이사회는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 하여야 한다.

제44조(이사회 결의방법) ①이사회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대표이사의 선임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2012.4.15 개정)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2012.4.15 개정)

③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5조(이사회 의사록) ①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6조(자회사 등에 대한 이사회 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회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 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한다. ②이사회 및 각 이사는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자회사 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자회사 등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3.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③이사회는 전체 자회사 등을 통할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7조(위원회) ①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이사회운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리스크관리위원회
5. 경영발전보상위원회
6.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

제4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49조(고문 등) 이 회사는 이사회 의 결의로 고문, 명예이사,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제6장 감사위원회

제50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의 위원후보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이어야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이어야 한다.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 원,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 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 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 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 ⑤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 야 한다.
- ⑥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3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 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감시 및 검사할 의무가 있으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이 회사의 업무 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 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위원장은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③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 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12.4.15 신설)

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의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2.4.15 신설)

- ⑤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⑥감사위원회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⑦위 제6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46조 제2항을 준용한다.
- ⑧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 ⑨감사위원회는 본조 제1항 내지 제8항 이외에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결의한다.
- ⑩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제52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장 계산

제53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4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 영업년도말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제1호 내지 3호의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12.4.15 개정)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2012.4.15 개정)
4. 연결재무제표(2012.4.15 신설)

②감사위원회는 전항의 서류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2012.4.15 개정)

④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고, 영업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2.4.15 개정)

⑤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와 외부감사인인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방법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제55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2012.4.15 개정)

제55조(외부감사인 선임) 이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하여 통지하거나 또는 감사대상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57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8조(중간배당) ①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2012.4.15 개정)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2012.4.15 신설)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 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다만, 종류주식의 발행시 이사회에서 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013.3.28 개정)

제59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60조(보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나 상법 또는 기타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년도) 정관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년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4조(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및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정관 제35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및 대표이사는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5조(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의 임기) 정관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6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의 선임) 정관 제3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7조(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정관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의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8조(설립 이후 최초 사업년도의 이사의 보수) 정관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년도의 이사의 보수는 15억원을 한도로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조(주식이전회사) 아래 주식이전회사들은 공동으로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11년 1월 18일 기명날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4.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3.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3.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3.27 부터 시행한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2015. 2. 27 제정

2015.11. 6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6조에 따라 BNK금융지주(경우에 따라 자회사등을 포함하며 이하 ‘회사’ 라 한다)가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건전경영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및 정책) ①회사는 이사회와 경영진간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위해, 회사의 의사 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위임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특정배경 및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 과반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와 경영진 모두가 견제의 기본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 주요 내규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공시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지배구조 원칙에 따라 매년 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후 경영환경 및 제도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정 및 변경 등) 이 규범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변경한다. 다만, 관계법령, 감독규정 및 정관 등 상위규정 변경에 따른 개정 및 단순한 자구수정은 대표이사 회장에게 위임한다.

제2장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의 구성현황

제4조(이사회 구성) ①이사회는 상임이사, 사외이사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이사의 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5조(이사회 의장) ①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이사회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제고에 필요한 업무

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6조(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①이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②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③사외이사는 그 재임기간 동안 다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단, 회사의 소속 자회사등간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①이사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신용질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사외이사 선임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③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관련 분야에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 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자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8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환경 및 체제를 갖추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保有한다.

③이사회는 내부통제 전반에 대하여 감독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④이사회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3.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⑤이사회는 자회사등을 통할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한다.

제9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이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이사회 결의사항 등)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이사회내 위원회 및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3. 자회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이사 등에 관한 사항
6. 중요 계약 및 소송에 관한 사항
7. 자본금 및 자본 조달에 관한 사항
8. 관계법령에서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
9.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2.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
3. 분기별 결산결과
4. 경영진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사무지원조직의 책임자 선임 및 해임
6.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7.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1조(이사의 선임 절차) ①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선임한다.

②상임이사(대표이사 제외) 및 비상임이사 후보는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 1 내외에 해당하는 수의 사외이사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직전년도 정기주주총회 후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경우는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거 5년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의 총수가 과거 5년간 사외이사 수(정기주주총회일 기준 사외이사 총수)의 연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⑤사외이사 총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외이사가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자회사 등의 사외이사(퇴임 후 2년 이내에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한다)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제1항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⑥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선임일부터 기산한다.

제13조(이사의 퇴임) ①이사가 임기 만료 전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의사를 표시한 사임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는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④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중대한 위배 등을 한 경우 해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⑤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차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며,

보결 선임은 한 경우 피선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서 보결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절 이사회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

제14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이사의 과반수, 감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 결의방법) ①이사회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는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절 이사회등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16조(이사회등 운영계획 수립) ①회사는 매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이사회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회사는 이사회등 운영실적을 종합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고, 이사회등 운영계획 수립시 활용한다.

제17조(이사에 대한 평가) ①회사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전 항의 평가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①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자기평가, 이사회 평가, 직원 평가 등 사외이사의 평가 방법
2. 제1호에 따른 평가별 평가 주기

③이사회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기준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할 수 있다.

④회사는 2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최소 2년에 1회 이상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외부 평가기관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선정하되, 회사와 최근 3년 이내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⑥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⑦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이사회 내 위원회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이사회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1. 이사회운영위원회
2. 회장후보추천위원회
3.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4. 감사위원회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6. 리스크관리위원회
7. 경영발전보상위원회
8.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②제1항의 위원회 이외에 특별사안의 심의 또는 결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각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동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위원장 및 위원 선임 기준)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각 위원회 규정에서 위원장 임기를 별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사외이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11.6 개정)

제21조(이사회운영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경영발전보상위원회 위원장 등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의 겸직으로 위원의 수가 4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수만큼 다른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이사회 등의 효율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등의 개최 및 사외이사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3.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회장후보추천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은 회장 및 사외이사·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회장 후보 추천
2. 회장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
3. 회장의 자격요건 설정
4. 회장 후보군 발굴 및 관리, 후보자 자격 요건 검증
5.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위원회는 제3항 제4호의 후보군 발굴 및 관리, 후보자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5.11.6 개정)

제23조(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은 회장,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지주회사 상임이사(회장 제외) 및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3. 은행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 (사외이사 및 상임감사위원 제외)
4. 자회사(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대표이사 후보자 발굴 및 관리, 후보 검증 (2015.11.6 개정)
5. 그룹임원의 자질 등 자격요건 설정
6.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그룹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는 제3항 제4호의 후보자 발굴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5.11.6 개정)

제24조(감사위원회) ①위원회는 3인 이상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한다.

②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④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등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사외이사 후보 추천
3.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4. 사외이사후보 인선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위원회는 제3항 제3호의 후보군 관리내역을 연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5.11.6 개정)

⑤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사외이사로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6조(리스크관리위원회) ①위원회는 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2.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3. 자회사별 리스크허용한도의 승인
4. 자회사별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5.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경영발전보상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③위원회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을 1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에 리스크 관리측면이 충분히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④회의는 매년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그룹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규정에 관한 사항(2015.11.6 개정)
2. 회사의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2015.11.6 개정)
3. 회사의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2015.11.6 개정)
4. 임원보수규정에 관한 사항(2015.11.6 신설)

5.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위원회는 자회사 보상위원회(이사회)에서 결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할 수 있다.(2015.11.6 신설)
 1.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2. 자회사 CEO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및 보상 결과

제28조(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의 소집은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감사위원회위원 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2. 기타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경영관리협의회) ①회사는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에 대한 전략적 경영의사 결정을 위하여 경영관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2015.11.6 신설)

②협의회의 위원은 회장 및 자회사 대표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③협의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임직원 중에서 위원 또는 참석자를 정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의 자문에 응한다.

- 1.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연간 경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해산·영업양도·분할·합병 및 자회사등의 편입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3.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4.전략적 공동투자, 핵심 전산시스템 변경 등 2개 이상의 자회사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영사항 중 의장이 자회사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요 경영현안에 관한 사항
- 6.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협의회는 협의사항 중 위험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제30조(리스크관리협의회) ①회사는 리스크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리스크 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2015.11.6 신설)

②협의회의 위원은 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 담당임원(CRO) 및 리스크관리부장, 신용공여 취급 및 금융투자업 영위 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담당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CRO)으로 한다.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2.리스크관리지침의 제·개정
- 3.그룹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 제7조 3항에 관한 사항
- 4.그룹 Total Exposure 관리한도의 설정 및 초과운용 승인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의 역할등

제31조(임원의 역할등) ① “임원”이라 함은 이사인 집행임원과 이사아닌 집행임원으로 구분한다.

②이사인 집행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임된 자이며, 이사아닌 집행임원은 이사아닌 자 중에서 회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집행임원의 직위는 회사의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따라 회장, 사장, 부사장 및 상무로 구분하고, 회장이 명하는 직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④임원의 자격요건은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의 자격요건을 준용한다.

제2절 회사에 대한 임원의 권한과 책임

제32조(임원의 권한과 책임) ①회장은 이사회 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②회장은 관계법령 및 내규 등에서 정하는 이사의 책임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그룹의 전략방향 수립, 전략의 정기적 점검 및 이사회 보고
2. 그룹의 수익·성장목표 달성을 위한 안정적 지원
3. 주요 현안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이사회의 지침 수행

③집행임원은 회장이 부여하는 직무에 따른 권한 및 전결권을 가지며, 회장의 제 명령을 준수하고 회장이 명하는 직위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절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33조(임원의 선임) ①회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되고, 그 임기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②상임이사는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집행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최초 선임시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룹사간 임면의 경우 2년 이내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4조(임원의 퇴임) ①회장은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중대한 위배 등을 한 경우 해임될 수 있다. 다만,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

②회장 유고 시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및 상임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아닌 집행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퇴직처리하며, 인사규정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집행임원으로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임될 수 있다.

1. 임기(고용계약기간)가 만료되었을 때
2.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3. 인사규정에서 정한 자연면직 사유에 해당될 때

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35조(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①회사는 신임 사외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사외이사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 ①회사는 회장 후보자에 대한 선정기준 및 요건, 임원에 대한 교육·연수·평가제도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임원 및 임원후보자는 경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 내부 또는 외부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37조(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①회사는 임원에 대한 성과 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전 항의 평가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회사는 임원에 대한 성과 평가결과를 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구성내역 및 지급액 결정방법)

①임원의 보수는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으로 구성하며, 업적연봉은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분된다.

②단기성과급은 1년 단위로 성과목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회장은 성과급의 40%, 그외 임원은 60%를 성과평가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성과급은 3년간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지급한다.

③장기성과급은 3년 단위로 평가결과에 따라 기본연봉에 지급률을 곱하여 직위별로 40~6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성과급은 3년간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지급한다.

④회사의 경영지표가 악화되었을 경우 등 단기성과급 및 장기성과급 지급시 환수율을 산정하여 차감후 지급한다.

⑤업적연봉의 최고지급한도와 임원별 업적연봉의 평가기준 및 지급률은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장 공시에 관한 사항

제39조(정기공시) ①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서 요구하는 공시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을 본문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 내부규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윤리강령 등) 및 지배구조 현황
2.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
3. 사외이사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6.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행지주회사와 은행에 적용한다)
7.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8. 보상에 관한 사항
9. 위험관리위원회 활동 내역

10.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1.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금융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

12.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사회등이 직전년도에 발생한 변동보상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변동보상은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한다.

③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수시공시) ①회사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제20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경우 회의일시, 안건내용(보고안건도 포함한다), 사외이사의 참석 및 찬성 여부 등을 익월 15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익월에 공시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 해당 기간 이내에 향후 공시 날짜, 지연사유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시계획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41조(주주총회) ①회사는 사외이사 관련 주주총회 안건 상정 시 사외이사후보추천 등 성격이 상이한 안건들을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이사회 의장,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장은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③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행사 주식수, 안건별 찬·반 주식수 비율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42조(공시방법) 이 규범에 따른 공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회사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6장 내부통제·리스크관리체제 및 완전자회사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

제43조(내부통제에 대한 특례) ①회사의 이사회는 그룹을 통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한다.

1.회사 및 자회사등의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회사 및 자회사등의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 3.회사 및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 4.회사 및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금융지주회사 관련법령 준수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 5.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6.회사 및 자회사등의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 7.회사 및 자회사등의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 8.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이 경우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친다)
- 9.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친다)

②회사의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회사 및 자회사등이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 하여 회사의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4조(리스크관리체제) 회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1.당해 회사 및 자회사등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
- 2.자회사등별, 부서별, 거래별 또는 담당자별 리스크부담한도·거래한도 등의 설정·운영
- 3.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의 종류별 측정 및 관리
- 4.자회사등과 연결한 주요 리스크 변동 상황의 종합적 인식 및 감시

제45조(완전자회사등의 특례) ①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완전 자회사등은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은행 또는 보험회사인 자회사등은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되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 542조의10을 준용한다.

③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의 경우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영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2. 경영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자회사등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5.2.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BNK로 지주 및 계열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일괄 변경하여 2015. 3.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이사회규정

2011. 3.15 제정

2011.12.16 개정

2012. 7.20 개정

2012.12.28 개정

2013. 8.22 개정

2014. 3.31 개정

2014.12.29 개정

2015. 2. 4 개정

2015.11. 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로 한다.

②사외이사는 사외이사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이사회의 역할)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환경 및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③이사회는 내부통제 전반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5조(이사의 권한과 의무) ①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에 참여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이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사외이사는 취임 시 회사경영진 및 지배주주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회사등에 대한 이사회 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회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한다.

②이사회 및 각 이사는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자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자회사등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3.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③이사회는 전체 자회사등을 통괄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회 의장) ①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이사회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제고에 필요한 업무

제8조(대표이사 회장) ①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1인을

선임한다.

②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③대표이사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및 상임이사가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1.12.16 신설)

제9조(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이사의 과반수, 감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10조(소집통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결의사항 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이사회내 위원회 및 회장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의 결정
- 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 다.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 가. 자회사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회사의 중장기 경영계획 및 연도별 경영계획 확정
- 나.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2015.2.4 신설)
- 다. 이사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

3. 자회사 관리

- 가. 자회사등의 편입·제외 및 기존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 다만, 손자회사등의 편입 및 제외의 경우, 금융감독기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건으로 편입 및 제외 시점의 출자규모가 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 보고로 갈음한다.(2015.11.6 개정)

4.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가.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2015.2.4 신설)
- 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관한 사항(2015.2.4 신설)
- 다. 이사회규정 및 이사회내 위원회규정에 관한 사항

- 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관한 사항
 - 마. 사외이사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바.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관한 사항(2015.2.4 신설)
 - 사.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관한 사항(2015.2.4 신설)
 - 아. 집행임원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자. 임원보수규정에 관한 사항
 - 차. 임원퇴직금규정에 관한 사항
 - 카. 내부통제규정에 관한 사항
 - 파.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
 - 타. 기타 외규에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내규에 관한 사항
 - 하. 상기 각 호의 규정의 개폐 시 관계법령, 감독규정 및 정관 등 상위규정의 변경에 따른 개폐 및 단순한 자구수정은 대표이사 회장에 위임한다.
5.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2015.2.4 신설)
 - 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최고경영자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2015.2.4 신설)
 - 다.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 라.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마.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감사위원 제외)
 - 바. 이사 후보의 확정(2015.2.4 개정)
 - 사.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이사의 보수의 결정
 - 아. 사외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 자. 이사, 집행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
 - 차.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2015.11.6 개정)
 - 카. 준법감시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타. 고문, 명예이사, 자문위원 등의 위촉에 관한 사항(다만, 특정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
6. 중요 계약 및 소송에 관한 사항
- 가. 건당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계약(용역계약인 경우는 건당 금액이 100억원 초과)
 - 나. 건당 소가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소의 제기·포기 및 취하
7. 자본금 및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 가. 신주의 발행 및 자본감소
 - 나. 제준비금의 자본전입
 - 다. 자금 차입

라. 사채의 발행

8. 기타 사항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나.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다.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라. 건당 10억원을 초과하는 기부금 지급

마. 관계법령에서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

바. 이사회내 위원회가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사. 기타 대표이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상기 각 호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당해 안건을 부의할 이사회 개최 전 회계연도말 또는 당해 회계연도 6월말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 중 최근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 등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2.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

3. 분기별 결산결과

4. 경영진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사무지원조직의 책임자 선임 및 해임

6.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7.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이사회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1. 이사회운영위원회

2. 회장후보추천위원회(2015.2.4 신설)

3.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2015.2.4 신설)

4. 감사위원회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6. 리스크관리위원회

7. 경영발전보상위원회

8.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②사외이사는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2.4,

2015.11.6 개정)

③제1항의 위원회 이외에 특별사안의 심의 또는 결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제11조 제1항의
사항 중 일부를 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 또는 결정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 받은 이사는 결의사
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제13조(결의방법) ①이사회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
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2012.7.20 개정)

③이사는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안설명) 이사회 안건에 관한 제안설명은 안건 관련 담당본부장이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서장은 배석하여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
의에 답변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의 청취) 의장은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진,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이사회 사무지원조직) ①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외이사에 대
한 업무지원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이사회 사무지원조직을 전략기획부가 담당한다.
(2013.8.22, 2014.12.29 개정)

②이사회 사무지원조직은 이사회를 보좌하고 경영정보제공 등 이사회의 활동 수행을 지
원하고,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
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한다.

③이사회 의전관련 사항은 임원부속실에서 담당한다.(2012.12.28, 2014.3.31 개정)

제17조(의사록) ①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전략기획부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2013.8.22, 2014.12.29 개정)

③이사회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사록을 작성하여 모든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감독기관 제출 등 기타 사정으로 긴급하게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록 승인 전에 의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12.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2.7.2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2.12.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3.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2011. 3.15 제정

2013. 8.22 개정

2014.12.2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고,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이사회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정책결정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경영발전보상위원회 위원장 등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의 겸직으로 위원의 수가 4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수만큼 다른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조(결의사항 등) ①이사회 등의 효율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이사회 등의 개최 및 사외이사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 ③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 ④기타 이사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은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결의내용은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 아닌 자의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지원부서 및 의사록작성) ①전략기획부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2013.8.22, 2014.12.29 개정)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2011. 3.15 제정

2015. 2. 4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리스크관리의 기본방향과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정책을 승인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감시 감독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매년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소집) ①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의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결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2.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3. 자회사별 리스크허용한도의 승인
4. 자회사별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5.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고·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받고 심의한다.

1. 자회사등의 각종 리스크의 관리현황 및 리스크 허용한도의 관리현황
2. 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한 결의사항
3. 자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사항
4. 경영관리협의회에 제출한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2015.2.4 신설)
5.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회의지원 및 의사록 작성) ①리스크관리부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안건, 회의경과 및 결의내용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위임사항) 위원회는 리스크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의사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또는 절차와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경영발전보상위원회규정

2011. 3.15 제정

2013. 8.22 개정

2014.12.29 개정

2015. 2. 4 개정

2015.11. 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지주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자회사의 경영성과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경영진의 성과목표 설정, 평가 및 보상체계를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015.11.6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①경영진은 집행임원 및 그룹장, 본부장 또는 그 명칭과 상관없이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②특정직원은 투자금융, 외환딜링, 유가증권 운용, 파생상품의 설계·판매·딜링 등의 업무를 통해 리스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원을 의미한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2015.2.4 신설)

③위원회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을 1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에 리스크 관리측면이 충분히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④위원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사항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한다.

1.그룹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규정에 관한 사항(2015.11.6 개정)

2.회사의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2015.11.6 개정)

3.회사의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2015.11.6 개정)

4.임원보수규정에 관한 사항(2015.11.6 신설)

5.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자회사 보상위원회(이사회)에서 결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한다.(2015.11.6 신설)

1.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2.자회사CEO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및 보상 결과

③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경우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보상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2015.11.6 신설)

제7조(성과평가 기준 및 방법) 회사의 경영진, 특정직원 및 자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및 보상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5.11.6 개정)

제8조(회의의 소집) ①회의는 매년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②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결의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관계인의 출석) ①위원회는 그룹 경영진 및 관계직원들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2015.11.6 개정)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2015.11.6 신설)

제12조(지원부서 및 의사록 작성) ①전략기획부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2013.8.22, 2014.12.29 개정)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과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제2(경과조치) 제6조 제2항은 2016년도 자회사 경영진 성과평가기준 및 그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와 보상분부터 적용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11. 3.15 제정

2013. 8.22 개정

2014.12.29 개정

2015. 2. 4 개정

2015.11. 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①위원회는 회사의 전략적 목표와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사외이사후보를 물색 및 심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다.

②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 인선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의 소집)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내용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고 위원들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과 통지 절차를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①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경영진 또는 사외이사 지원 부서에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가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2015.2.4 신설)

⑤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5.2.4 개정)

⑥위원회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0 (다만, 관련법령에서 더 낮은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상법 제542조의6 제8항에 따라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가 당사에 추천한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 결의사항)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2015.2.4 신설)
2.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3.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2015.2.4 신설)
4. 사외이사후보 인선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 제3호의 후보군 관리내역을 연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5.2.4 신설, 2015.11.6 개정)

제7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부서) ①전략기획부는 위원회의 관련업무 지원부서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2015.2.4 신설)

1. 위원회의 업무 지원
2.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검증 업무 지원
3. 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지원

②지원부서는 제1항 제1호의 업무 추진 현황을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사록 작성) ①전략기획부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2013.8.22, 2014.12.29 개정)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전,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11. 3.15 제정

2013. 8.22 개정

2014.12.2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 2에 의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감사위원회 위원후보를 추천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②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집)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의 소집은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내용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고 위원들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과 통지 절차를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결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감사위원회위원 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2. 기타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부서 및 의사록 작성) ①전략기획부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2013.8.22, 2014.12.29 개정)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감사위원회규정

2011. 3.15 제정

2012. 7.20 개정

2015. 2. 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함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감독(2015.2.4 신설)
2. 재무감사, 업무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3.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7.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4조(권한) ①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 증명서, 확인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자료와 물품의 요구
2. 금고, 장부, 기타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4.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6.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②위원회로부터 제1항 각호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2015.2.4 신설)

제5조(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직무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련법령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의 의결 및 집행기구등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구 성

제7조(구성)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종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소집)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결의사항 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1.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3.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4.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5.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6. 감사보조기구의 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
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
8. 감사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다만, 법령, 기타 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개정이나 자구수정은 제외
9. 관련법령, 정관,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
10.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11.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3.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4.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
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
8. 준법감시인으로부터의 보고사항 검토
9.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10. 관련법령, 정관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11.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12.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된다.

②위원회는 관련법령 및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위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2.7.20 개정)

③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들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를 제외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제4장 감사 및 보고

제13조(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15.2.4 개정)

제14조(권한위임) ①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2015.2.4 개정)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3.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위임한 위원장의 직무와 감사보조기구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업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15조(권한 대행) ①감사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위원장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②위원장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장에 위임된 사항은 위원장이 전결처리하고 당해 기간에 전결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차기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이사회보고)①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연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5.2.4 신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2015.2.4 개정)

제5장 보 칙

제17조(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①위원장은 제14조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 및 주요 업무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5.2.4 개정)

②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계획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5.2.4 신설)

제18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①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감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관련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감사보조기구)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기구를 둔다.
②감사보조기구에는 원활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원과 적정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21조(세칙 등 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2.7.2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11. 3.15 제정

2013. 8.22 개정

2014.12.29 개정

2015. 2. 4 개정

2015.11. 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장후보추천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회장 및 사외이사·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2015.2.4 개정)

②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2인 이내에서 외부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외부전문가인 위원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는 기업인, 금융전문가, 법률전문가, 학계인사 및 기타 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제3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사외이사 중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의 소집)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내용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고 위원들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과 통지 절차를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심의·결의사항)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2015.2.4 개정)

1. 회장 후보 추천
2. 회장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
3. 회장의 자격요건 설정
4. 회장 후보군 발굴 및 관리, 후보자 자격 요건 검증
5.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 제4호의 후보군 발굴 및 관리, 후보자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5.2.4 신설, 2015.11.6 개정)

제6조(결의방법)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5.2.4 신설)

제7조(지원부서) ①전략기획부는 위원회의 관련업무 지원부서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2015.2.4 신설)

1. 회장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회장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지원

②지원부서는 제1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록 작성) ①전략기획부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2013.8.22, 2014.12.29 개정)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15. 2. 4 제정

2015.11. 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회사의 최고경영자 및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이하 총칭하여 「그룹임원」이라 한다)을 추천하기 위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그룹임원으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유하고, 그룹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임원 후보를 물색 및 심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회장,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②사외이사과 비상임이사인 위원은 이사회 의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되 임기를 1년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그룹임원후보 인선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으로 한다.

②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단,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내용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고 위원들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과 통지 절차를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의·결의사항)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지주회사 상임이사(회장 제외) 및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사외이사 및 상임감사위원 제외)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3. 은행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사외이사 및 상임감사위원 제외)
 4. 자회사(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 대표이사 후보자 발굴 및 관리, 후보검증
(2015.11.6 개정)
 5. 그룹임원의 자질 등 자격요건 설정
 6.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그룹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 ②위원회는 제1항 제4호의 후보자 발굴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5.11.6 개정)

제7조(결의방법)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부서) ①전략기획부는 위원회의 관련업무 지원부서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자회사(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 대표이사 후보자 발굴 및 관리, 후보검증 등 관련업무 지원(2015.11.6 개정)
2. 그 밖에 위원회의 필요한 업무 지원

②지원부서는 제1항 제1호의 업무 추진 현황을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사록 작성) ①전략기획부장은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2015. 2. 4 제정

2015.11. 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주회사 및 자회사(이하 총칭하여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회사는 지주회사등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관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예측 가능한 기업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회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회사에 대해 적용한다.

1. 지주회사
2. 은행
3.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단,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 제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는 때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4.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이나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따른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제4조(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지주회사는 제3조의 적용대상인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지주회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이사회 결의로 경영승계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지주회사의 이사회는 제3조에 해당하는 회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연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2015.11.6 개정)

제5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①지주회사등의 최고경영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임원

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에서 정한 자격요건
2. 은행 : 「은행법」 제18조에서 정한 자격요건
3. 금융투자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
4. 여신전문금융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에서 정한 자격요건
5. 상호저축은행 :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

②지주회사등의 최고경영자 후보자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와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칭하여 “후보추천위원회” 라 한다)에서 각각 추천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2.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③후보추천위원회는 전항의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로 적극적 자격요건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①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또는 개시 시기는 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②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추천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추천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지주회사 및 해당 자회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회사 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법령 및 이 규정,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영승계 절차) ①지주회사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프로그램기준에 의거 지주회사등의 최고경영자 후보자 그룹을 구성하고,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이 추천한 자를 후보자 그룹에 포함할 수 있

다.(2015.11.6 개정)

②후보추천위원회는 제5조 및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 중에서 최종 후보자를 추천한다.

③최종 후보자는 지주회사등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고, 해당 회사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9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후보추천위원회가 지주회사등의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별표]의 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단,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정한 적용대상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0조(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①최고경영자의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지체없이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 후보자 선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최고경영자의 유고 시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자 그룹과 필요한 경우 추가로 추천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심사 및 검증 등을 통하여,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최종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부서) ①전략기획부는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②전략기획부는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 제1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별표]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내역

I.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

II. OO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회의일시 및 장소			
2. 위원회의 구성	총 00명		
3. 위원회 위원	약 력		참석 여부
000 (위원장)			
000			

III. 최고경영자 후보자 관련

1. 000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나. 후보자 경력	
다. 후보제안자 : 000	
1) 인적사항	
2) 후보자와의 관계	
3) 추천 이유	

라.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나)		
다)		
2) 적극적 요건		
가)		
나)		
다)		
마. OO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 작성요령 >

1. ‘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는 최고경영자 후보의 추천을 위한 내부절차를 상세히 기재
2. ‘Ⅲ. 최고경영자 후보자 관련’은 각 최고경영자 후보 별로 작성하며, ‘Ⅲ. 1. 다. 후보제안자’는 OO후보추천위원회에 예비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제안한 자를 기준으로 기재
3. ‘Ⅲ. 1. 나. 후보자 경력’은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그동안의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
4. ‘Ⅲ. 1. 다. 2) 후보자와의 관계’는 민법상 친족관계, 고등학교 이상의 교우관계, 동일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내 근무한 직장관계를 각 기재
5. ‘Ⅲ. 1. 라. 1) 소극적 요건’은 금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경영자의 소극적(결격) 요건과 후보자의 충족 여부를 기재
6. ‘Ⅲ. 1. 라. 2) 적극적 요건’은 최고경영자 후보자가 최고경영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
7. ‘Ⅲ. 1. 마. OO후보추천위원회 의결 결과’는 각 위원별 찬반내역을 기재

사외이사운영규정

2011. 3.15 제정

2013. 8.22 개정

2014.12.29 개정

2015. 2. 4 개정

2015.11. 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경영의 적법성,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외이사」라 함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자를 말한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말한다.
3. 「이사회등」이라 함은 상법 제390조에 따른 이사회 및 같은 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위원회」를 말한다.
4. 「은행지주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5. 「은행등」이라 함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6. 「자회사등」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7. 「모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8. 「금융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9. 「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제3조(이사회내 사외이사 비율) 이 회사는 사외이사의 수가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4조(사외이사 자격요건) ①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2015.2.4 개정)

②사외이사는 그 재임기간 동안 다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단,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소속 자회사등간 사외이사 겸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5.2.4 신설)

③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2015.2.4 신설)

1.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④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관련 분야에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 제7조 제6항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2.4 개정)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 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자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5조(사외이사 선임) 회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사외이

사를 선임한다.

제6조(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의 금융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가 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5.2.4 신설)

③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2015.2.4 개정)

④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7조(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①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경영진 또는 제19조에 따른 사외이사 지원부서에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가 관련 법규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2015.2.4 신설)

⑤위원회는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제17조에 따른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5.2.4 개정)

⑥위원회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0 (다만, 관련법령에서 더 낮은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상법 제542조의6제8항에 따라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가 회사에 추천한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의 공시)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통지에 갈음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에 <별표1>의 양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2015.2.4 개정)

1. 사외이사후보추천절차 개요
2.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2015.2.4 개정)
4. 사외이사 후보자와 해당 금융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2015.2.4 개정)
5. 관계법규 및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및 경력(2015.2.4 개정)
7.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2015.2.4 신설)

제9조(사외이사의 임기) ①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임기의 만료시점을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함에 따라 임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외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제17조에 의한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어야 한다.(2015.2.4 신설)

③사외이사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이 회사의 자회사등 재임기간을 포함하며,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을 때 편입된 자회사등의 사외이사는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회사의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 ①회사는 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 1 내외에 해당하는 수의 사외이사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직전년도 정기주주총회 후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경우는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거 5년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의 총수가 과거 5년간 사외이사 수(정기주주총회일 기준 사외이사 총수)의 연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은 사외이사 총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2015.2.4 신설)

제11조(사외이사의 역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2015.2.4 개정)

제12조(사외이사의 권한)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15.2.4 개정)

제13조(사외이사의 책임) ①사외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등이 회사 및 주주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2015.2.4 개정)

②사외이사는 제1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등의 참여에 할애하여야 한다.(2015.2.4 개정)

③사외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자회사등을 포함)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외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회사는 매년 임원책임배상보험을 갱신하여 사외이사 재직 시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회사가 제5항에 따라 가입, 갱신하는 임원책임배상보험은 사외이사 자기부담액을 배상 책임액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기부담액의 최대한도는 1억원 이내로 한다.(2015.11.6 신설)

⑦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등”이라 한다)이 금융회사(계열회사 및 해당 금융회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기부금(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금융회사가 회원·사원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 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출연금 등은 제외한다. 이 항에서 “기부금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소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2015.2.4 개정)

1. 사외이사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2015.2.4 개정)
2.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 등이 비영리법인 등의 수탁자·임직원이 되는 경우 수탁자·임직원이 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

제14조(이사회 의장) ①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④회사는 선임사외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회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사실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정기주주총회 개최 20일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2015.2.4 개정)

제15조(이사회내 위원 연임 제한) ①사외이사는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2.4, 2015.11.6 개정)

②회사는 제1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외이사 활동 내역 공시) 회사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경우 회의일시, 안건내용(보고안건 포함), 사외이사의 참석 및 찬성 여부 등을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익월 15일까지 공시한다. 단, 익월에 공시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 해당 기간 이내에 향후 공시 날짜, 지연사유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시계획을 공시하여야 한다.(2015.2.4개정)

제17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①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자기평가, 이사회 평가, 직원 평가 등 사외이사의 평가 방법
2. 제1호에 따른 평가별 평가 주기

③이사회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기준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할 수 있다.(2015.2.4 신설)

④회사는 2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최소 2년에 1회 이상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2015.2.4 신설)

⑤제4항에 따른 외부 평가기관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선정하되, 회사와 최근 3년 이내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2015.2.4 신설)

⑥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2015.2.4 개정)

⑦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5.2.4 신설)

제18조(사외이사의 보수) ①회사는 사외이사에게 그 책임과 활동의 정도에 따른 보수(수당 포함)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외이사의 보수를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회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2015.2.4 개정)

제19조(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설치) ①사외이사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전략기획부로 한다.(2013.8.22, 2014.12.29 개정)

②사외이사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2015.2.4 개정)

1.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 지원(2015.2.4 신설)
3. 선임사외이사의 업무 지원
4.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5.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③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2항 제2호의 업무지원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2015.2.4 신설)

제20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2015.11.6 개정)

②사외이사가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경영정보를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③자회사등은 회사가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2015.11.6 신설)

④회사는 이사회등의 회의자료를 회의일 7일 전까지 발송하여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2015.2.4 개정)

제21조(사외이사에 대한 자문용역의 제공) 회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회계·경영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①회사는 선임 사외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사외이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공시) ①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 및 해임(사임 포함)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2015.2.4 신설)

②이 규정에 따른 공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회사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2015.2.4 개정)

③회사는 관련법령상 특례적용, 주주총회의결 등 정당한 사유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를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실과 그 이유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2015.2.4 신설)

제24조(관계법령과 관계) ①이 규정이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및 상법 등 관계법규와 상충되는 경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법규를 우선 적용한다.

②사외이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5조(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내규의 개정 등에 따른 용어변경, 간단한 자구 수정 등의 경우에는 이사회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방법 및 교육 등)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별 평가 주기, 사외이사에 대한 연수프로그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그룹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

2015. 12. 17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주회사 및 자회사(이하 ‘그룹사’라 한다)의 경영진과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그룹의 성과평가와 보상체계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진은 집행임원, 그룹장, 본부장 또는 그 명칭과 상관없이 개별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2. 특정업무 종사자는 투자금융, 외환딜링, 유가증권 운용, 파생상품의 설계·판매·딜링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투자금융(IB), 트레이딩(주식·채권·파생상품거래 등) 담당 부서장 및 별도의 고용계약에 따라 담당업무 경상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받는 전문(계약)직원 등 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임직원을 의미한다.
3. 변동보상은 정기·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 및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외에 지급되는 성과급을 의미한다.
4. 성과연동형 주식보상(Performance share)은 주식(주가연계 현금보상을 포함한다) 등을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에 정해진 결정 방법 및 계산식에 따라 일정기간 후 회사가 정한 목표 달성 정도에 연동하여 행사 가격, 부여 수량, 효력 발생 기간 등이 결정되는 주식보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그룹사의 성과평가 및 보상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한다.

1. 이사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이하 ‘경발위’라 한다) 또는 보상위원회는 회사의 보상 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상체계가 위험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는 높은 보상을 위한 과도한 위험 감수(risk taking)를 제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회사는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총변동보상액(total variable compensation) 지급으로 인하여 회사에 필요한 자본적정성의 유지 및 확충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그룹의 핵심가치 제고를 위하여 회사는 보상정책을 건전하게 수립,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회사) ①이 규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회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2.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같은 법 제85조제5호에 따른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②제1항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적용 받지 않는 자회사는 업권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가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범위) ①평가대상자는 그룹사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그룹사별 경영진 성과평가기준에서 정한다.

②그룹사의 내규는 이 규정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6조(성과평가 및 보상절차) 그룹사 경영진 및 특정업무종사자의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된다.

1. 지주회사(이하 ‘지주’라 한다) 경발위는 그룹의 보상체계가 건전하게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그룹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2. 지주 경발위 및 자회사 보상위원회는 「그룹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에 맞추어 회사의 「경영진 성과평가기준」을 수립하고, 보상체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3. 지주 경발위 및 자회사 보상위원회는 「경영진 성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대상자별 성과평가 및 보상 결과를 심의·의결한다.
4. 지주 경발위는 자회사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자회사의 「경영진 성과평가기준」과 자회사의 CEO 성과평가 및 보상 결과에 대해 심의하여야 한다.
5. 지주 경발위는 제4호의 심의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자회사 보상위원회는 경발위의 의견 및 심의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회사 보상위원회가 없는 경우 이사회가 이를 대신한다.

제7조(보상과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①그룹사는 풍부한 경험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위험 관리 및 준법감시 담당자로 채용·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그룹사는 위험 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회사의 보상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그룹사는 위험 관리 및 준법감시 업무가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시 대상이 되는 분야의 성과와는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변동보상의 원칙, 설계 및 조정) ①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의 상당 부분은 변동보상이어야 하며, 개인·해당부서·회사전체 차원의 성과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②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변동보상제도는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1. 현재 및 미래의 잠재 위험을 감수하는 데 필요한 자본의 규모와 비용
2.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동성위험의 규모와 비용
3. 당기손익으로 계산된 잠재 수익의 실현가능성 및 시기의 일관성

③그룹사는 회사, 부서, 개인 업무의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여 성과급중 당기 현재보상액과 과거발생분에 대한 미래이연지급액의 축소 등을 통하여 경영진과 특정업무 종사자의 변동보상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9조(이연지급) ①그룹사의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변동보상의 상당부분(예: 40~60%)은 수년간 이연지급(deferral)되어야 하며, 변동보상의 비율은 직위, 근무연수, 책임의 정도 등과 연동하여 증가되어야 한다. 특히, 최고 경영진과 고액연봉 특정업무 종사자의 경우 이연지급되는 변동보상의 비율은 상당수준 이상(예: 60%이상) 이어야 한다.

②이연지급 기간은 영업의 성격 및 위험과 경영진·특정업무 종사자의 활동과 연계하여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연하여 지급되는 변동보상 부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pro rata basis)보다 커서는 안 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성과 이에 수반되는 위험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연지급 기간을 3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변동보상의 지급형태 및 방식) ①그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의 변동보상 중 상당부분(예 : 50% 이상)을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등 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회사는 지주의 주식연계상품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그룹사는 주식 또는 주식연계 상품에 대하여 최소 보유기간(이연지급기간을 포함한다)

을 설정하는 등 그 행사가 적절하게 유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그룹사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외에도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성과연동형 주식(Performance Share) 등의 주식연계 상품을 포함하여 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장기성과급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성과급은 회사별 경영실적 및 규모 등을 반영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현금보상 지급 등) ①이연지급된 보상 중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여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현금보상으로 지급될 수 있다.

②지급확정기간(vesting period) 중 회사 전체, 소속부서 및 개인의 업무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미확정 부분(unvested portions)은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환수되어야 한다.

제12조(보상체계 재조정) 그룹사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개입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보상체계를 건전한 위험관리 및 장기성장과 연계되도록 재조정하여야 한다.

제13조(보장형 상여 및 과도한 퇴직보상의 제한) ①그룹사의 보장형 상여금(guaranteed bonus)은 건전한 위험 관리 또는 보상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미래의 보상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규 임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최소의 보장형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한다.

②그룹사는 과도한 퇴직 보상으로 인하여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창출 및 위험관리의 건전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등 금지) 그룹사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보상체계의 위험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5조(성과평가 지표) ①그룹사는 단기적인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 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진 및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그룹사는 장기성과와 수익성 관련 지표를 중심지표로 설정하여 최종 평가와 연계하고,

위험 연계를 위해 건전성 관련 지표를 일정수준 이상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의 반영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별도 기준에 근거하여 보상하는 부서는 예외로 한다.

③그룹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기예측, 회사별 특성 등에 맞게 경영진의 성과평가 지표를 조정하여야 하며,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평가가 관대해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외형 및 자산 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성 및 수익성 관련 지표를 포함할 것
2. 고객만족도 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시키고 고객만족도 평가를 정기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반영할 것
3. 수익성 평가 시 단순한 절대 손익 및 결과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위험을 감안한 수익성 평가지표를 적용할 것
4. 수익성 지표를 사용할 경우 순이익은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손익을 제거한 영업이익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성과를 반영할 것
5. 재무적 지표 이외에 비재무적 지표로서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고객만족도의 증진, 위험 관리 등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지표, 우수 인적 자원의 확보 및 개발 등과 같은 인적 자원 지표를 반영할 것
6. 수익성 및 건전성 관련 성과를 장기간에 걸쳐 측정·평가하고 장기성과의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연지급 변동보상 제도를 활용할 것
7. 내부목표 달성 외에도 시장성과를 반영하는 등 금융회사간 비교 가능한 성과지표를 개발·적용할 것

제16조(보상관련 공시) ①그룹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54조에 의거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경발위 또는 보상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을 포함한 회사의 보상체계 의사결정 절차
2. 성과측정 및 위험 조정 기준,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이연, 지급확정 및 환수 기준, 현금과 주식, 그 밖에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포함한 보상체계의 주요 특성
3. 보상에 관한 총계 정보와 회사의 위험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및 특정업무종사자 보상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

②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이사회등이 직전년도에 발생한 변동보상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변동보상은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한다.

③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보상관련 공시방법은 회사 및 금융업권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2.17부터 시행한다.

제2(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및 기존에 체결한 계약은 해당 제도 종료일과 계약 만기일까지 유효하다.

제3(적용례) 그룹사 경영진 성과평가기준 및 그에 따른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은 2016년도부터 적용한다.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검토보고서

후보대상자	검토의견
김성호	적정함
김우석	적정함

본 위원회는 상기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2015 년 2 월 27 일

(주)BS 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 원 장 문 재 우 (서명 또는 날인)



I 김성호 사외이사

1. 사외이사 자격요건 준수 여부

가. 자격요건 결격여부 확인

구분	심사항목	결격여부
임원결격요건	금융지주회사법 제 3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 조	해당사항없음
사외이사 결격요건	금융지주회사법 제 4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 조	해당사항없음
	모범규준 제 16 조 1 항	충족
	모범규준 제 16 조 2 항	미충족 ^{주)}

주)CJ(주) 사외이사 재임 중임(임기 : 2016 년 3 월 주총)

나. 적극적 자격요건 (모범규준 제 16 조 1 항)

구분	충족여부	비고
전문성	충족	법률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보유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가능
윤리성 · 책임성	충족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2.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구분	관계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해당사항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없음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없음

3. 이사회 등 참여도 : 양호

구분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횟수	참석률	참석횟수	참석률
2011 년	8 회	89%	6 회	86%
2012 년	7 회	88%	10 회	100%
2013 년	14 회	93%	16 회	89%
2014 년	7 회	100%	15 회	100%

주)참석횟수는 당해년도 정기주주총회 후부터 익년도 정기주주총회까지 산정
2014 년은 2015 년 2 월 기준

4. 사외이사 평가 결과 : 탁월(S 등급)

- 역량 및 전문성, 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회사 발전 기여도 면에서 자기평가, 이사회평가, 직원평가, 참석률 등을 종합한 결과 탁월(S 등급) 획득

5. 후보자의 타회사 사외이사 재임(모범규준 제 16 조 2 항)에 관한 검토의견

- 모범규준상 자격요건의 제정목적이 여러 회사의 사외이사 활동으로 인해 금융 지주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역할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 후보자의 경우 현재 CJ(주) 사외이사 외에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회사가 없고, 당사와 여신거래 등 거래관계가 없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상황으로서 당사의 사외이사 활동에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19 조 4 항 2 호」에 “해당 금융지주회사 외 2 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로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어, 동 사항은 관련 법령과 모범규준이 상충 하는 바, 예외 공시를 통하여 제한적으로 운영코자 함.
- 특히,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률이 우수하고, 사외이사 평가등급도 탁월한 수준으로서, 타사 사외이사 재임으로 인한 당사 사외이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소홀함이 없었음.
- 또한, 이사회 등에서도 회의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사전에 준비하여 회의시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하는 등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음.
- 당사는 지역 내에서 한정된 인력풀로 인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후보군을 물색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원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당사의 사외이사로서 적극적인 활동 등을 한 점을 감안하여 재선임을 위한 후보로 추천하고자 함.

II 김우석 사외이사

1. 사외이사 자격요건 준수 여부

가. 자격요건 결격여부 확인

구분	심사항목	결격사유
임원결격요건	금융지주회사법 제 3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 조	해당사항없음
사외이사 결격요건	금융지주회사법 제 4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 조	해당사항없음
	모범규준 제 16 조 1 항	충족
	모범규준 제 16 조 2 항	미충족 ^{주)}

주) (주)GS 사외이사 재임 중임(임기 : 2015 년 3 월 주총, 임기만료시 퇴임 예정)

나. 적극적 자격요건 (모범규준 제 16 조 1 항)

구분	충족여부	비고
전문성	충족	회계(재무)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보유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가능
윤리성 · 책임성	충족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2.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구분	관계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없음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없음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없음

3. 이사회 등 참여도 : 양호

구분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횟수	참석률	참석횟수	참석률
2011 년	9 회	100%	14 회	100%
2012 년	8 회	100%	20 회	100%
2013 년	15 회	100%	20 회	100%
2014 년	7 회	100%	16 회	100%

주)참석횟수는 당해년도 정기주주총회 후부터 익년도 정기주주총회까지 산정
2014 년은 2015 년 2 월 기준

4. 사외이사 평가 결과 : 탁월(S 등급)

- 역량 및 전문성, 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회사 발전 기여도 면에서 자기평가, 이사회평가, 직원평가, 참석률 등을 종합한 결과 탁월(S 등급) 획득

5. 후보자의 타회사 사외이사 재임(모범규준 제 16 조 2 항)에 관한 검토의견

- 모범규준상 자격요건의 제정목적이 여러 회사의 사외이사 활동으로 인해 금융 지주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역할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 후보자의 경우 현재 (주)GS 사외이사 외에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회사가 없고, 당사와 여신거래 등 거래관계가 없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상황으로서 당사의 사외이사 활동에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주)GS 사외이사 임기가 2015 년 3 월 주총시까지로 만기 후 퇴임예정 감안시 당사의 사외이사 활동에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률이 100%이며, 사외이사 평가등급도 탁월한 수준으로서, 타사 사외이사 재임으로 인한 당사 사외이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소홀함이 없었음.
- 또한, 이사회 등에서도 회의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사전에 준비하여 회의시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하며,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당사의 감사위원장을 오랜기간 역임 하는 등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음.
- 당사는 지역 내에서 한정된 인력풀로 인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후보군을 모색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원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당사의 사외이사로서 적극적인 활동 등을 한 점을 감안하여 재선임을 위한 후보로 추천하고자 함.